

세미나 자료집

2008년 춘계 형사정책세미나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법

일 자 : 2008년 5월 23일(금) 13:00~17:30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진행일정

- 13:00 - 13:30 등록
- 13:30 - 13:40 개 회 사 : 박 상 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5
- 13:40 - 14:00 기조강연 :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9
 발표 : 오 영 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 회 : 연 성 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4:10 - 15:00 제1주제 :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29
 발표 : 김 성 언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토론 : 한 영 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과장)
- 15:00 - 15:20 휴 식
- 15:20 - 16:10 제2주제 :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89
 발표 : 한 숙 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토론 : 윤 용 규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6:10 - 17:00 제3주제 :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117
 발표 : 김 은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조 준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7:00 - 17:30 종합토론(질의 및 응답)

개 회 사

먼저, 우리 형사정책연구원이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법”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빈발하는 각종 학교폭력 사건들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범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공식 통계 및 조사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청소년 범죄는 예전보다 한층 더 폭력화, 저연령화, 성일탈 현상이 심화되었고, 소년법의 제법 율은 30%가 넘는 등 범죄 경력화 경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11월 23일 제4차 개정 소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소년법”은 적용대상연령의 인하,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검찰 단계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명문화, 화해권고 및 보호처분 유형의 다양화 등을 골자로,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소년법은 이전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인권보장과 처우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법의 현실 속에서 향후 예상되는 입법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괴리,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개정 소년법이 실효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개정 소년법이 제기하는 주요한 세 가지 실무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소년사법의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소년법에 따라 변화된 소년 보호처분 유형들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실효적 실천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인하로 인한 향후

소년사법 실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과제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으로부터 소년범죄를 혁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개정 소년법의 “화해권고”규정이 제도적·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논의들이, 개정 소년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소년사법의 원칙과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개정 소년법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초강연을 기꺼이 맡아주신 한양대학교 오영근 교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를 해주실 경남대학교 김성연 교수, 서울가정법원의 한숙희 판사, 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박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토론에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어 주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한영선 과장, 강원대학교 윤용규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조준현 교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박 상 기

[기조강연]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발 표]

오 영 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론

“소년법은 성인법과 달리 개선가능성이 높다”, “소년범죄는 에피소드적 성격을 지닌다”는 관념은 형사정책 그 중에서도 교정주의 형사정책을 지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명국가에서는 성인 형사사법과 다른 형태의 소년사법을 인정하고 그 대상이나 내용도 성인 형사사법과는 달리하고 있다. 소년법이 성인법보다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과학적·실증적 근거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년법을 성인법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있는 명제로 정착되었다.

소년법이 증가하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이러한 명제가 흔들리는 때도 있고, 이것이 소년사법과 이를 규율하고 있는 소년법에 반영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몇몇 엽기적인 소년범죄가 발생하자, 언론과 정치권이 합세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책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소년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¹⁾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소년법에 대해 강경대응정책을 주

1) 일본의 경우 1997년 14세의 중학생이 칼과 쇠파이프 등으로 초등학교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상해한 소위 '고베연속아동살상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인 소년은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하고 사체를 절단하여 피해소년의 잘린 머리를 성명문 형태의 메시지와 함께 시내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 놓아두고, 지역신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기괴한 행각을 벌였다. 당시의 일본 소년법에 의하면 14세의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만 할 수 있고, 형사처분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나아가 어린 소년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2000년 소년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을 통해 형사처분 연령이 16세에서 14세로 인하되었다. 최근 일본의 소년법개정에 대

장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엽기적인 소년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과 소년법이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충격적인 성인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이나 일부 시민단체 등은 강력한 처벌로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정치권은 이러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별 실효성 없는 법 개정을 하곤 한다. 이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충격적인 소년범죄가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은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²⁾

소년법의 개정과정에서 최근의 소년범죄에 동향에 대한 실태파악과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개정의 기본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소년사건의 수는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어 양적으로는 기존의 소년사법이 소년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고, 이에 따라 굳이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범율이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³⁾ 소년법 중 촉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⁴⁾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⁵⁾ 질적인 측면에서는 소년법 개정을 통한 소년사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소년범죄의 질적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학계나 실무계의 지배적인 의견은 소년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소년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비행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소년법개정 과정에서도 소년보호이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별 이견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년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념으로서의 국민주의로 인

해서는 이동희, “일본의 소년사법제도와의 그 운용상황”, 형사실무연구회 발표논문, 2007. 8.

2) 이러한 현상의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는 것도 우리 소년사법의 운용과 앞으로의 소년법의 개정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소년범죄 중 재범율은 30-36% 정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소년사건 중 촉범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1%에서 2005년에는 21.4%로 증가하였다.

5)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소년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행위 등의 비율은 약 60%에 가깝다.

해 소년들이 성인법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문제점이 있다면, 국친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⁶⁾ 최근 3-4년 사이에 소년의 효과적인 개선·교육을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학계나 실무계에서 등장하였다.⁷⁾ 개정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과 주장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다시 말해 2005년 12월에 시작된 소년법 개정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위와 같은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최대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II. 개정의 과정과 주요내용

1. 소년법의 개정과정

법무부는 1988년 소년법의 전면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소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대환경에 맞도록 소년법의 내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2월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년법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개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교수 3명,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의 검사 각 1명, 합계 2명, 소년부 판사 1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대표 1명이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6) 강영호, “소년심판절차상의 적법절차의 보장”, 청소년범죄연구, 제5집, 1987, 109-129면;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김용우,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 원혜옥, “적정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보장”, 형사정책, 제11호, 1999, 353-371면 등.

7) 이에 대해서는, George Mousourakis, “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사법협의체”,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5, 111-138면; 황지태, 회복적 소년사법 조정실무가 실행지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김은경,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이호준,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 297-338면, 이승호, “회복적 사법과 우리나라의 형사체계체계”,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 339-358면; 이진국,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 359-386면 등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이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선에서 소년사건을 다루는 경찰이나 소년보호직 공무원 또는 보호관찰직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개정작업의 일정과 관련하여 개정위원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에도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시간상의 제약, 예산 및 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희망사항이 충족되기는 어려웠다. 법무부 보호국(현재에는 범죄예방정책국)의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개정작업의 일정에 대한 방침이 바뀌고, 이에 따라 개정작업도 속도를 내게 되었다. 이후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개정법률안의 국회제출과 국회통과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2. 소년법 개정의 쟁점

개정위원회는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7가지의 중요 쟁점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기존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개정작업을 수행하였다. 개정위원회에서 개개의 쟁점에 대해 직접 연구를 하고, 이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연구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개정위원들의 구두회의 만에 의해서가 아니라,⁸⁾ 비록 일부 쟁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위원이 직접 연구한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및 기존의 연구논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개정위원회 초기에 소년법개정에서 주요하게 다룰 사항들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8) 대부분의 정부위원회에서는 쟁점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은 갖지 못하고, 자신의 활동분야에만 전문 지식과 관심이 있는 위원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위원들을 개정위원으로 참가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한지는 앞으로의 개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첫째, 소년사법에 균형적 혹은 회복적 사법의 도입 여부이다.
 둘째,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의 확대 방안이다.
 셋째,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 방안이다
 넷째, 검사선의(심)주의를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법원선의주의로의 전환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다섯째, 보호사건의 대상의 조정이다. 소년연령 상한의 인하나 촉범소년이 나 우범소년 연령 하한의 인하문제 등이다.
 여섯째, 소년법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다.
 일곱째, 소년법에 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의 신설 여부이다.
 위의 일곱 가지 쟁점 이외에 개정작업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발굴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개정작업이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개정위원들의 관심 및 능력 부족, 홍보의 미비로 인한 학계나 실무계의 참여 유도의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제시된 쟁점들은 없었다. 개정위원회의 회의도 보호사건의 대상 문제가 두 번째로 다루어진 것을 빼면, 위의 순서에 따른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의 순서는 중요성 정도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정해진 것이다.

3. 개정법의 주요내용

가. 회복적 사법의 도입

개정소년법 제25조의3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되었을 경우 보호처분의 결정에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였다.⁹⁾ 개정 소년법이 회복적 사법

9)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성행교정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에 대하여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을 도입한 것은 피해자보호라는 측면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 조정 등을 통해 가해소년의 교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중점이 놓여졌다고 할 수 있다. 제25조의3 제1항에서 ‘피해자보호 및 소년의 성행교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년의 성행교정 및 피해자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회복적 사법을 도입한 것은 회복적 사법이 소년사건에서 먼저 도입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의 예를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화해권고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의 담당자, 절차, 내용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자원이 별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를 규정한 것은 새로운 형태로 소년사법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소년사건 대상의 조정

개정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소년사건의 대상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소년연령 상한의 인하 문제, 우범소년 규정의 폐지문제, 촉범소년과 우범소년 연령 하한의 인하 문제가 논의되었다.

개정위원회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연령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라고 하고, 제4조 제2호와 제3호에서 각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소년의 상한 연령을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을 종전 12세에서 10세로 낮춘 것이다.

1) 소년연령 상한의 인하

소년연령 상한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었다.

반대론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I) 소년연령을 낮추는 것이 소년법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ii) 소년사건의 대상을 독일에서는 21세 미만,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굳이 우리나라에서 19세로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 등이었다.

찬성론에서는 i) 만19세는 이미 대학생이 되는 연령으로서 이미 사회적으로도 성인으로 취급받고 있고, ii) 오늘날의 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정신적·육체적 발육의 상태가 빨라졌고, iii) 서울가정법원 가사제도개혁위원회의 공식입장도 19세로 인하하는 것이고, iv) 영미에서는 18세 미만 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2) 우범소년 규정의 존치

우범소년 규정을 존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엇갈렸다.¹⁰⁾

폐지론은 i) 비행이나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형사제제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ii) 현실적으로도 우범소년으로 문제되는 예가 많지 않고, 우범소년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사실은 촉법소년이라고 할 수 있고, iii)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제제로서의 보호처분이 아닌 복지적 처분을 해야 하고, iv) 법원의 소년법 개정안은 우범소년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존치론은 i) 소년법은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이

10) 이에 대해서는, 원혜옥,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 :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2006, 375-398면; 송광섭, “우범소년의 우범사유와 우범성”,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이한교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화성사, 2000, 485-504면; 최종식,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8권, 1996, 457-474면.

를 위해서는 범죄나 비행의 위험성이 높은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ii) 우범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법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우범소년 규정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렸지만, 우범소년 규정을 존치한다면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결국 개정위원회에서는 우범소년 규정을 존치하되 우범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¹¹⁾

2) 촉법소년·우범소년 연령 하한의 인하

(1) 촉법소년 연령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하한연령을 10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소년연령 상한의 인하 문제보다 좀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i)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등에서 보듯이 소년비행의 저연령화되고 있으므로¹²⁾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ii) 비행연령이 낮을수록 성인범죄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행을 조기발견하고 비행소년을 조기에 처우해야 할 필요가 있고, iii)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육의 정도가 이전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i) 보호처분의 확대는 형사제제의 확대를 의미하고 ii) 보호처분도 형사제제의 일종이므로 공연히 낙인효과만 높일 수 있으므로, 복지적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iii) 현재의 소년사

11) 개정소년법 제4조 제3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물러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2)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1년 8.5%, 2002년 13.7%, 2003년 17.5%, 2006년 17.8%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원혜옥, “법무부 소년법개정안의 개요”, 법무부, 소년법개정 공청회 자료집, 2007.

법제도에서 소년을 조기처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였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다수의견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의 인하를 찬성하였지만,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대로 소년사법제도에서 비행소년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기처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처우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2) 우범소년 연령 하한의 인하

개정위원회에서 우범소년 규정을 존치할 경우 촉법소년과 같이 연령 하한을 10세로 인하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반대론은 I) 우범소년을 존치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우범소년의 연령 하한을 인하여 우범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ii) 현실적으로도 우범소년이 별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을 인하는 취지와 같이 우범소년의 연령 하한도 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개정위원회에서는 우범소년의 연령 하한은 인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법률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 우범소년의 연령 하한도 10세로 인하되었다.

3) 수사절차에서의 다이버전 확대

(1) 쟁 점

개정소년법 이전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훈방,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들 수 있다. 훈방과 단순기소유예는 단순 다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개입형 다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 다이버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아무런 감독이나 원호대책 없이 사회에 그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범죄환경으로의 귀환을 의미하

기 때문에 재범방지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인 훈방에 대해서는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단순훈방이 아닌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개정소년법은 경찰의 훈방이나 선도조건부 훈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근거규정만을 두었다.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일종의 형사제재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i) 이를 법관이 아닌 검사가 부과하여 위험 문제가 있고, ii) 법률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실질적으로 소년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도 인정되고, 소년의 동의를 요하고,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별로 없었다.¹³⁾ 따라서 개정위원회는 위원성여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기 보다는 존치시키고, 개정 소년법에 그 근거를 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개정법 제49조의3은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선도조건이 아닌 다른 형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목을 조건부 기소유예로 하였다.¹⁴⁾ 개정위원회에서는 소년

13) 박재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한독간의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9집, 1997, 37-66면;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임안식, “보호관찰제도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2호, 1992, 18-27면; 신동운, “다이버전운동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정책, 제2호, 1987, 5-14면.

14)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원생 수용자의 감소에 따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도 규정하기로 하였으나,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이 개정소년법 제49조의3 제2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긍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3) 경찰 훈방과 선도조건부 훈방의 근거규정 신설 문제

단순훈방과 선도조건부 훈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경찰에서는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특별법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¹⁵⁾ 개정위원회에서도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다이버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의 훈방과 선도조건부 훈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경찰의 훈방과 선도조건부 훈방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종결권을 검사에게 인정하는 것과 모순되고, 경찰의 주장이 수사권독립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부처간의 이견이 있는 문제를 다루다가 소년법개정 자체가 너무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염려로 인해 개정위원회에서는 훈방과 선도조건부 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가는 차후논의에 맡기기로 하였다.

4)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¹⁶⁾

개정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10종류로 하여 3종류를 추

15) 경찰청에서는 경찰다이버전의 도입을 위해 ‘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16)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식, “소년법상 보호처분제도의 개선방안”, 소년법연구, 제1호, 2002, 9-40면; 박형남,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現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법연구, 제1호, 2002, 41-68면; 염기창, “소년보호처분의 실질적 강화방안, 실무연구 X, 서울가정법원, 2005; 정희철,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제21호, 2005, 86-106면.

가하였다.¹⁷⁾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이 아니라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제32조 제3, 4항은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으로 하여 대상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제33조 제4항은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간을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에 관한 그동안의 문제점 지적을 개정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32조 제8호는 1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충격적 구금’ 혹은 ‘충격적 보호관찰’(shock probation)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소년원에 대한 집중적 감독이나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된 개정 소년법 제32조의2는 대안교육·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으로서 규정하였다.¹⁸⁾ 이는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적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함이다.

5) 검사선심(의)주의와 법원선심(의)주의¹⁹⁾

사법개혁과제의 하나로서 법원에서는 법원선심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17)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8)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9) 법원선심주의와 검사선심주의에 대한 논쟁으로,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심주의 모델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88호, 2005, 189-210면; 이욱, “검사선심주의와 법원선심주의”, 소년보호연구, 제8호, 2005, 89-132면.

있다. 검사선심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지만, 중요한 두가지 근거는 첫째, 검사는 직무성격상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미결구금상태에서 검사의 결정에 따라 형사부에 송치된 소년이 다시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절차의 변경으로 인해 악영향이나 성인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행 검사선심주의 하에서도 검사들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분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원선심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을 선호한다고 할 수 없고, 절차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개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논쟁 이외에 검사선심주의와 법원선심주의가 검찰과 법원간의 권한다툼의 성격이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이 문제에 집중하다보면 개정작업이 너무 지연되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고 하여 현행 검사선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대신에 검사선심주의의 단점을 다소나마 보완하기 검사의 개정법 제49조의2에서 결정전 조사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²⁰⁾

6) 인권보장 관련 규정 강화

개정위원회에서는 국친주의로 인해 소년이 사실상 성인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

20) 제49조의2 (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었다.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도 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선보조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정소년법 제17조의2는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에 대응하는 보호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제도를 신설하였다.²¹⁾

7) 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

개정위원회에서는 소년범죄와 비행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본규정을 신설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정위원회는 i) 소년사건의 사후적 처리절차만 규정하여서는 소년법의 이념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고, ii) 소년비행의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통제 및 예방에 관한 통일적 법률이 필요하고, iii) 현행 사법처분과 복지처분 사이의 괴리가 커 그 괴리를 메꾸 줄 필요가 있고,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간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등을 근거로, 소년법에 청소년비행의 예방에 관한 기본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²²⁾ 그리하여 소년법 제4장에 비행예방의 장을 신설하고, 비행예방정책, 지원 및 비용의 보조,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²³⁾

21) 제17조의2 (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2) 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의 신설에 대해, 법무부 보호국, 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 2006.

2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8조(비행예방정책)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비행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의 구축 및 운영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비행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비행예방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제69조(지원 및 비용의 보조)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선도·교화와 관련된 단계·시설 중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0조(지도·감독) 법무부장관은 제69조에 의해 선정된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그러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III. 개정소년법의 과제

1. 소년법개정의 의의

개정 소년법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소년법 적용범위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소년연령의 상한이 19세 미만으로 인하되면서, 소년법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이 10세 이상으로 인하되었고, 보호처분의 종류와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의 종류가 늘어났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대상연령이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19세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보호처분의 대상소년의 범위를 넓힌 것을 소년법에 대한 강경정책의 채택 및 국가의 통제망을 확대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앞으로의 소년사법이 이러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강경정책을 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결론은 적어도 개정위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개정 의도는 문제소년에 대해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사법에서 소년보호의 이념을 좀더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소년사법의 전문화·과학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 소년법은 이를 위한 하드웨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가 본래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지 않고,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종사자들이 적절한 소프트웨어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오늘의 세미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과 보호관찰에의 부수처분을 다양화하였는데, 그 구체적이고 실천방안을 소년사법 전문가들에게 위임해 놓고 있다. 이 세미나의 제1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존의 소년보호처분과 개정 소년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소년보호처분의 효율적 시행방안이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연령의 인하는 소년사법의 성격변화까지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순히 이들 소년들의 범죄나 비행에 대한 사후조치만이 아니라 이들의 범죄와 비행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조치까지 모색해야 한다. 개정소년법은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론이나 실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회복적 사법이라는 이름하에 채워가야 할 내용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들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회복적 사법의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오늘의 발표 주제 이외에 개정소년법에 따른 소년사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형사제재로서의 성격 탈피

현재 일치된 견해는 소년법상의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보호처분도 형사제재의 일종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형사제재의 일종이라고 할 경우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소년의 건전육성과 원만한 사회복귀에 장애를 발생시키게 된다. 보호처분을 형사제재가 아닌 복지적 처분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낙인효과로 인한 문제점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범죄와 비행을 범한 소년에 대해 강제가 수반되는 보호처분을 형사제재가 아닌 복지적 처분이라고만 이해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기 어렵다. 보호처분을 복지적 처분이라고 하고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없앨 경우, 소년

에 대한 인권침해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범소년이나 촉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형사제재의 일종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호처분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의 문제보다 조금 더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정소년법이 촉범소년이나 우범소년의 연령을 낮춘 것은 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형사제재를 과하려 하기 보다는 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적·복지적 처분을 함으로써 비행성의 고착화와 이로 인한 범죄소년 혹은 성인범죄인으로의 전락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을 형사제재가 아닌 복지적 처분·교육적 성격의 처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의 선고기관, 선고절차, 보호처분의 내용, 집행기관, 집행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3. 소년사법의 전문화

개정소년법이 훈방이나 선도조건부 훈방의 근거규정의 신설 및 법원선심 제도로의 전환여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결국 부처간의 권한다툼 또는 이견 때문이다. 전자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후자의 문제는 검찰과 법원 간의 이견이 노출되었다. 조직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개정위원이나 의견진술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 어떠한 자기 부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개정논의를 위해서는, 부처의견에서 자유로운 위원들로 구성되고,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부여된 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년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년사법제도에서

의 결정이 주로 소년사법에 대한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소년사법의 전문가들은 그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거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사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소년사법에 대한 결정을 소년사법의 전문가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년사법의 중요한 결정은 주로 판사와 검사 및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전의 보호국) 소속의 검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순환보직으로 소년사법에 종사하므로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검찰청에 소년 전담검사가 있지만, 성인사건도 처리하면서 부분적으로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년부 판사 역시 2년 정도 근무하고 다른 보직으로 이전하게 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검사들도 1-2년 정도 어떤 때에는 불과 몇 개월을 근무한다. 소년담당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평소 소년사법에 별 관심도 없고, 소년사법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년사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경우 소년사법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되는데, 순환보직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 동안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숙고없이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청소년선도위원과 갱생보호위원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한 것, 소년범죄나 소년원 수용자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소년분류심사원을 폐쇄하고, 소년보호직 공무원과 보호관찰직 공무원의 직렬을 통합한 것도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론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더 신중한 고려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었던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년사법에 평생을 종사하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보호직 공무원들이나 보호관찰관들은 소년사법에 관한 결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년사법의 전문가들이 소년사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순환보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년전담 법관이나 소년전담 검사, 소년전담 경찰관, 소년전담 정책관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제1주제]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발 표]

김 성 언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토 론]

한 영 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과장)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김 성 언

(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I. 문제제기

최근의 소년법 개정은 범죄 및 비행청소년 처우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온다. 과거에 비해 범죄와 비행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좀 더 넓어졌고 처우서비스의 조달에 있어서도 소년형사사법 중심에서 벗어나 사법과 복지를 아우르는 다기관 협조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 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를 진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대한 결과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논의할 수는 있겠다. 이에 이 글은 소년사법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소년 보호처분의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새로운 소년법이 소년의 책임을 강조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위험한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통제 및 조기개입의 요소를 담고 있음으로써 정의모델이나 범죄통제모델의 관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기초적인 토대는 처우를 강조하는 복지모델적 전망이 아닌가 한다. 효과적인 처우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년에게 필요한 욕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년의 욕구와 처우자원들이 적절하게 조우할 수 있도록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소년 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의 모색은 이 세 가지

구성요소들의 내실화 전략의 강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소년사법 전문가들은 비행 및 범죄청소년 문제에 조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처우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다.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대응에 우선해왔으며, 개입을 위한 처우 프로그램들도 소년사법기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보호처분 유형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범죄소년들의 처우는 보호능력이 부족한 보호자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쪽으로 편중되어 왔던 것이다.

새로운 소년법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보호처분의 유형을 다양화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새로 도입된 보호처분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 글은 소년법의 개정과 더불어 독립처분으로서 기능하게 될 수감명령과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새롭게 실시되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년법 처우의 전반적인 현황과 그간 실시되었던 각 제도들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외국의 경험들을 참조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소년사법과 소년보호의 현실

2007년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년법은 적용대상 연령의 조정, 검찰단계의 다이버전, 보호처분의 다양화, 화해권고제도의 도입 및 소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 강화, 비행예방정책 규정의 신설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기준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춤으로써 소년의 비행에 대한 조기개입의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비행 또는 범죄 발생 초기단계에서 소년의 인성과 환경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처분

결정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기소유예가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소년을 아무런 조치 없이 사회로 복귀시킴으로써 오히려 범죄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상담·교육·활동 등을 조건으로 하는 다이버전 형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하거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보호사건 심리에서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와 가해자·피해자 인권보호의 측면들도 보장되었다. 보호관찰에만 병합하도록 되어 있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충격요법을 응용한 1개월 이내의 단기구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처우의 다양화가 가능해졌다.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청소년단체의 상담·교육, 외출제한명령, 보호자 교육명령이 보호관찰에 병합되게 함으로써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대응에 주력했던 소년사법이 종합적인 비행예방 정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소년의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사가 피해변상 등의 화해권고를 내릴 수 있게 한 점은 최근 소년사법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원리들을 법적인 틀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소년사법 당국의 이해와 관심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간 소년사법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소년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대다수의 시민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문제제기가 일궈낸 산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가 많은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시스템은 바뀌었는지 모르나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현실과 환경이 그대로라면 미래가 그리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더욱이 변화된 시스템이 최선의 선택 결과였는지도 중요하다. 먼저 청소년 비행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간의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진단해보자.

1.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현실

사법당국의 공식통계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발생건수나 발생률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1년 102,537명이었던 소년 범죄자수는 2000년 143,643명으로 증가했으나 2005년에는 67,478명으로 크게 줄었다. 소년인구(12-19세) 10만 명당 범죄율을 보더라도 1991년 1,551.2명, 2000년 2514.7명, 2005년 1299.0명으로 그 추세는 동일하다. 2000년 이후 청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다(김은경 외, 2007a: 42).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문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청소년 범죄의 양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1991년의 경우 전체 청소년 범죄자 중 초범자의 비율은 76.8%였으나 1995년 75.8%, 2000년 64.5%, 2005년 62.3%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재범청소년에 의한 범죄의 구성비율은 1991년 23.2%에서 2005년 37.7%로 증가했다. 특히 4범 이상 소년전과자 비율은 1991년 2.5%에서 2005년 13.2%로 높아졌다(법무연수원, 2006; 김은경 외, 2007a: 43-44).

나이 어린 청소년에 의한 범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연령별 청소년 범죄의 현황을 보면, 12-13세의 비율은 1999년 1.1%에서 2005년 0.8%로 조금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16-17세의 비율은 35.7%에서 33.8%로 감소하였으며, 18-19세 역시 43.3%에서 37.6%로 그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14-15세의 구성 비율은 1991년 19.9%에서 2005년 27.8%로 오히려 증가하였다(김은경 외, 2007: 45).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한 비행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같은 지위비행과 경미한 비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2005)의 자료에 의하면, 형사사법기관이 검거한 학교폭력 사범은 2000년 33,833명에서 2004년 9,92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난다.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자체 징계받은 학생수를 보더라도 2000년 11,562명에서 2004년 7,488명으로 감소하였다(김은경 외, 2007: 43). 하지만 흡연, 음주와 같은 지위비행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을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¹⁾ 결과를 보면,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1993년 2.2%에서 2006년 5.3%로 높아졌고, 여자 중학생 흡연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3.3%로 증가하였다.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1993년 25.5%에서 2006년 20.7%로 감소되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13.6%에서 18.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2%에서 5.2%로 높아졌다. 청소년의 음주경험 역시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조사(2006)에 의하면 음주경험이 있는 일반청소년의 비율은 2002년 26.0%에서 2006년 47.6%로 높아졌다. 비행위험성이 높은 '위기청소년'의 그 비율은 같은 기간 55.3%에서 74.9%로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에 접근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때 음란사이트에 접촉해봤다는 비율이 2002년 13.4%에서 2005년 30.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음란사이트에 접촉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가출청소년 현황을 보면 1997년 19,320명에서 2005년 13,29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²⁾ 그렇지만 전체 가출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44.2%에서 2003년 22.1%로 줄어든 후 2004년 26.8%, 2005년 28.8%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숫자까지 감안한다면 청소년 가출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자청소년의 가출은 대부분 유흥업소나 소위 '티켓다방'의 불법고용 혹은 성매매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김지선, 2001).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가출은 음주나 흡연,

1)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한국금연운동연합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흡연 실태조사』, 1993-2006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www.kosis.kr>) 참조.

2) 경찰청(www.police.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www.kosis.kr>) 참조.

유흥업소로의 취업, 폭력행위와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범죄행동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지위비행이나 경미한 비행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 패널조사를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노성호, 2006: 368-369; 이순래, 2006: 714).

이렇듯 청소년 재범률이 30%에 육박하고 범죄행위와 비행을 개시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그간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와 지역사회가 비행청소년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해 행해왔던 노력들의 성과를 되돌아보게 한다. 현실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범죄와 비행에 대한 사전예방을 모색하고, 조기에 개입하며, 범죄청소년의 재범억제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비행과 범죄의 예방 및 대응 체계의 일반적 진단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은 사법적 관점과 복지적 관점으로 이원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은경, 2006). 비행 정책과 관련하여 사전예방 및 조기에개입은 주로 소년복지 관련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범죄청소년에 대한 사후대처는 주로 소년사법 관련정책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비행과 범죄의 사전예방, 조기에개입, 사후대처는 서로 맞물려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년복지와 소년사법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청소년 비행과 범죄문제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중복적인 대응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중요한 법률적 근간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이며, 그밖에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새 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복지적 차원에서 전개

되는 비행예방 및 조기개입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기술과학부, 노동부, 여성부, 법무부 등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예방정책의 핵심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을 뿐, 여러 부처에서 다뤄졌던 비행정책에 대한 제편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문제만을 전담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소년 비행예방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낮아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더욱이 흩어져 있는 비행예방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유관부처와의 업무조정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처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 비행 정책은 파편화되거나 그 업무중복성이 심화될 여지도 안고 있다.

소년법은 국권 철학 혹은 후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중시한다. 소년에 대한 처우는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되 소년의 요보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소년법은 천명한다. 따라서 소년사범은 복지모형을 지향한다. 하지만 현실의 소년사범은 복지보다는 처벌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년사건 처리여부의 일차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가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보다 범죄 사실에 치중함으로써 처벌에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당수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는 그 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행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에의 참가나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같은 사회적 제재 등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년의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역설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지선, 2006). 또한 소년법의 범죄성향을 낮추고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 처우 프로그램이 빈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소년사범의 중대한 숙제 중의 하나였다. 요컨대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 의미의 교육적·복지적 처우가 제도화되지는 못

하고 있었던 것이다(김은경 외, 2007: 8).

소년사범 및 소년비행 전문가들은 기존 처우체계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김은경 외, 2007a: 124-155). 첫째, 개입형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다이버전이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 전환 혹은 우회시킴으로써 비범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단지 그냥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회내 처우프로그램을 거치게 함으로써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와 탈사회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훈방처리,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몇 가지 형태의 다이버전이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 혹은 검찰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다이버전은 명목상의 전환처우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처우 없이 소년을 원래의 비행유발적 환경으로 되돌려 놓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범들의 높은 재범률(30%)은 이를 잘 반증한다.³⁾

둘째, 중간제재 수단이 부족하고 활용도가 낮다. 현재 소년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은 보호자등 감호위탁처분, 보호관찰처분, 민간시설·의료보호 시설 위탁처분, 소년원처분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 검사의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 비율은 전체 소년사건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2005년의 경우 소년범의 기소유예율은 49.9%인데 반해, 기소유예 청소년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16.4%에 불과하다(김은경 외, 2007a: 130).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기소유예 대상자의 높은 재범률도 귀결된다. 2005년의 경우 소년 재범자의 비행이력을 살펴보면, 전회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소년이 30.9%로 가장 많다. 재범자 중 전회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소년의 비율은 1998년 22.2%에서, 2004년 28.7%, 2005년 30.9%로 상승하고 있다(김은경 외, 2007a: 132). 이는 검찰의 기소유예제도가 다이버전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검사가 범죄예방위원에게 소년의 선도를 맡기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의 2005년도 재범률은 12.1%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를 위탁하고 기소유예 하는 소년선도위탁에 대한 재범률(1년간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는 1급의 재범률은 4.0%, 6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는 2급의 재범률은 3.7%)보다 높은 수치이다(김은경 외, 2007a: 133). 이것은 기존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다이버전이 소년범피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사회내처우 프로그램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위원의 모집과 충원, 교육, 관리, 지원, 범죄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민간시설·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이 사회내처우인 보호관찰과 시설내처우인 소년원 수용의 중간제재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보호처분 중 민간시설 및 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의 활용도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2006년의 경우 보호처분 처리결과 중 민간시설·의료보호시설 위탁비율은 2.3%(이중 병원 위탁은 10건)에 불과하다(대법원, 2007). 그것도 서울, 대전, 전주, 광주 지역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의 활용도는 더욱더 낮다. 중간제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가용한 민간위탁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민간위탁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지선, 2002). 민간위탁시설의 열악한 처우환경이 소년판사로부터 외면받는 주요한 원인인 셈이다.

셋째, 보호처분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다.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2006년 보호처분 처리유형 중 보호관찰의 비율은 66.4%였고, 보호자 감호위탁⁴⁾은 22.7%, 소년원 수용은 8.6%였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보호관찰 중심으로 보호처분이 편중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정 소년법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소년원의 활용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단지 기간에 따른 차별화뿐만 아니라 운영방식, 이를테면 보안과 통제의 수준에 따른 운영(폐쇄형, 반개방형, 개방형), 주말구금, 충격구금과 같은 구금방식의 탄력적 운영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은경 외, 2007: 140). 처우방식을 교육처우(Erziehungsmaßregel)⁵⁾, 징계처분(Zuchtmittel)⁶⁾ 등으로 세분화하여 소년의 특성에 따라 다각화된 처우를

4) 보호자 감호위탁과 관련하여 보호능력이 없거나 보호에 실패했던 보호자에게 비행소년을 되돌려 보냄으로써 비행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소년자원보호자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소년자원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비율은 전체 보호사건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김지선, 2006: 김은경 외, 2007a: 136). 소년자원보호자제도가 대안적인 처분유형으로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자질 있고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동진, 2002).

5) 독일 소년원법 제10조에 의거한 교육처우(Weisungen)로는 ① 거주를 지정해 주는 처우, ② 일정한 가족 혹은 시설에서 보호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 처우, ③ 직업훈련이나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 처우, ④ 사회봉사처우, ⑤ 원호자의 보호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 처우(보호처우), ⑥ 사회화 훈련 코스에 참여해야 하는 처우, ⑦ 가해자-피해자 화해 처우, ⑧ 특정인과의 교제 혹은 유흥업소의 출입을 금지하는 처우, ⑨ 교통교육에 참가해야 하는 처우 등이다(김은경 외, 2007b: 91).

시도하고 있는 독일(정희철, 2006; 김은경 외, 2007b: 91-93)이나 집중적 다이버전 프로그램(Intensive Delinquency Diversion Service), 병영캠프(Boots Camp), 집중보호관찰(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지역사회에 기초한 소규모 형태의 주거형 프로그램(Community-based Residential Program), 지역사회 구금(Community Confinement) 등 소년의 비행수준에 따라 전환처우, 사회내처우, 중간처우, 시설내처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미국(Bartollas and Miller, 2008) 등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리 풍부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넷째,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계가 부족하다. 소년원에 수용되는 소년들은 반사회적인 인성,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와 가족, 비행친구, 학교부적응 등 다양한 위협과 문제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6-8개월가량의 수용생활을 통해 반사회적 성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이훈규·김성연, 1996). 소년원 출원자 10명 중 4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는 소년원에 수생들의 교정교화가 결코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김지선, 2004).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수용기간 중 소년들의 욕구와 위험수준에 맞춰 적절한 처우가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체계적인 사후보호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정책은 공식적인 처벌과정에 초점을 맞춰 왔고, 사회로 재진입한 소년들의 사회적응은 소년이나 가족 책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김지선, 2004: 12). 상대적으로 소년원은 수용 중인 소년들에게 처우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뿐, 그곳에서 배운 교육과 기술로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소년원생의 대부분은 가퇴원 상태로 사회에 복귀한다. 가퇴원생들에게는 사회적응을 위해 일정기간의 보호관찰이 부과되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후보호는 거의

6) 구체적 유형으로는 징계(Verwarnung), 명령(Auflage), 소년구금(Jugendarrest)이 있다(김은경 외, 2007b: 93).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다섯째, 지역자원과 소년사법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년사법의 주요기관들은 각자의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자원들을 동원하는 방식은 크게 범죄예방위원회나 자원보호자 등 개인 자격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형태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혹은 위탁감호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복지시설들에게 집행의 일부를 위임하는 형태로 나뉜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소년사법과 지역자원의 연계는 느슨하고 비체계적이며 일방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마저도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김성인, 2004). 소년사법 영역에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는 형태를 보면 현실적인 지원 없이 협력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연계 가능한 적절한 지역자원은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며, 보호관찰소, 법원, 검찰 등 지역자원들을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하는 소년사법기관들의 자원발굴과 유지를 위한 체계적·과학적인 방법론은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의 각 기관들은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협력기관들을 활용하고자 할 뿐,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공유나 지역자원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일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대부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다각적인 처우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대부분의 보호소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노정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호관찰관이나 소년조사관은 기존의 고유 업무에 덧붙여 자원봉사자들의 관리와 지원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중단이나 서비스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더욱이 경찰, 검찰, 법원 등 관(官)주도로 자원봉사자들을 충원함에 따라 비행청소년 선도보호업무에 열정을 갖는 순수한 참여자보다는 명예나 권력기관과의 유대형성과 같은 사적

인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지역유지형’ 참여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선정, 교육, 관리·감독, 지원 업무는 민간단체에게 맡기고 국가기관은 재정지원과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사전지도와 사후감독을 전담하는 식으로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체계를 활용한 개인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접근도 필요하다. 후자의 접근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년법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에 대한 민간부문의 위탁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위탁기관의 자격, 선정방법과 절차, 국가적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법규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자원들을 소년보호의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친구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소년들의 처우를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방식에 의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분포하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정보연계와 행동연계가 필요하다. 법 집행이 일차적인 임무인 소년사법기관들이 이러한 자원발굴과 연계 및 처우서비스 조달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소년법에 내재된 복지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체계를 복지와 사법의 연속체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김은경, 2006). 이 입장은 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는 단계적·누진적 제재(graded sanctions)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즉 소년에게 성행교정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것들이 실패했을 때는 교정보다는 처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적·누진적 제재의 성공여부는 보호처분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그 집행에 내실을 기하는 데 달려 있다. 다양화된 보호처분 유형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년의 위험성과 욕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처우가 시행될 때 목적인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획과 쟁점

2007년 개정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몇 가지 기회구조를 마련하였다. 과거에 비해 보호처분 유형들이 좀더 다양화되었으며, 검사가 소년사건 처리 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소년에 대한 인성과 환경 등을 제도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도적 형식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보호관찰에 부가되었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독립적인 처분유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이나 집행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년법들의 처우조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 사회봉사명령의 운영 실태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은 유죄가 인정된 자를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시간 무보수로 지역사회를 위해 근로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의 형태로 보호관찰과 병과되어 처분되어 왔으나 2007년 12월 소년법의 개정으로 독립처분의 형태로 바뀌었다. 대법원 공무예규(송일 97-1)에 의하면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소년은 ①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해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② 생활궁핍의 경험이 없는 경우, ③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무위도식을 하는 경우, ④ 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경우, ⑤ 경미한 비행을 반복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된 경우, ⑥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우윤근, 2005: 21).⁷⁾

7) 대법원 예규에서 적시하는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 유형으로는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

2006년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소년범의 유형을 보면 절도가 3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폭력(25.6%), 교통(12.9%), 성폭력(7.4%), 강력범죄(5.1%), 사기·횡령 4.2%, 풍속범죄 0.9%, 기타 4.9%이다. 절도, 폭력, 교통사범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이 많이 부과되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비교적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학생이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직으로 38.3%, 직업이 있던 소년이 6.6%, 기타 15.9%였다(법무부, 2007: 556-557). 사회봉사명령 봉사기간 분포를 보면 총 4,165명 중 50시간 이하가 47.3%(1,973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1-100시간으로 그 비율은 28.6%(1,191명), 101-200시간이 2.4%(99명), 201-300시간 7명, 301-400시간 2명으로 201시간 이상은 0.0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법무부, 2007: 512).

1) 추세와 전망

개정 전 소년법에 의하면 사회봉사명령은 수강명령과 더불어 보호관찰에 병합되는 처분유형이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소년법에 대해 보호관찰이 부과된 것은 2호(단기)가 6,906명, 3호(장기)가 7,479명으로 총 14,385명이었다(법무부, 2006b: 236-237). 같은 해 사회봉사명령은 단기보호관찰에 병합된 사례가 1,800명, 장기보호관찰에 병합된 사례가 3,525명으로 모두 5,325명이다(<표 1>). 즉 법원소년부는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37%에게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이수하도록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이를 보호관찰 유형별로 보면, 단기보호관찰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병합율은 26.1%이고, 장기보호관찰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병합율은 47.1%였다(<표 2>).

적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를 범한 경우,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우윤근, 2005: 20).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시기별로 변화되어 왔다(<표 2>).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만 해도 법원소년부는 보호관찰에 사회봉사명령을 병합시키는 경향을 강화해왔다. 1998년의 경우 단기보호관찰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병합비율은 40.3%였고, 장기보호관찰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병합비율은 78.4%였다. 하지만 1999년 이후로 사회봉사명령이 보호관찰에 병합되는 비율은 점차 감소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보호관찰보다는 장기보호관찰에 사회봉사명령을 더 많이 병합시키는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사회봉사명령이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바뀔에 따라 전체 보호관찰 처분건수의 약 1/3은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 될지 모른다.

<표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처분 현황 (단위: 명)

연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명령		
	소계	2호	3호	소계	2호병합	3호병합	소계	2호병합	3호병합
1996	21,840	12,241	9,599	8,019	3,064	4,955	1,367	576	791
1997	26,612	12,535	14,017	11,134	3,874	7,260	943	352	591
1998	26,431	12,719	13,712	15,877	5,122	10,755	853	342	511
1999	21,911	10,677	11,234	12,116	4,137	7,979	1,097	428	669
2000	21,187	10,783	10,404	9,953	3,457	6,496	2,066	759	1,307
2001	17,739	8,818	8,981	8,041	2,775	5,266	1,706	662	1,044
2002	16,207	7,873	8,334	7,667	2,813	4,854	1,361	574	787
2003	15,040	7,388	7,652	7,379	2,712	4,667	1,682	749	933
2004	13,971	6,642	7,329	5,574	1,824	3,750	2,042	841	1,201
2005	14,385	6,906	7,479	5,325	1,800	3,525	3,265	1,508	1,787

자료: 법무부(2006b: 236-237).

<표 2> 보호관찰 대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비율 현황 (단위: %)

구분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계	2호병합률	3호병합률	소계	2호병합률	3호병합률
1996	36.7	25.0	51.6	6.3	4.7	8.2
1997	41.8	30.8	51.8	3.5	2.8	4.2
1998	60.1	40.3	78.4	3.2	2.7	3.7
1999	55.3	38.7	71.0	5.0	4.0	6.0
2000	47.0	32.1	62.4	9.8	7.0	12.6
2001	45.2	31.5	58.6	9.6	7.5	11.6
2002	47.3	35.7	58.2	8.4	7.3	9.4
2003	49.1	36.7	61.0	11.2	10.1	12.2
2004	39.9	27.5	51.2	14.6	12.7	16.4
2005	37.0	26.1	47.1	22.9	21.8	23.9

* 2호·3호 병합률은 각각 단기보호관찰(2호)과 장기보호관찰(3호)에 병합된 사회봉사명 및 수강명령의 비율을 의미함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법원소년부의 태도가 전적으로 우호적이지는 않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통계에 의하면, 1998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접수 사건 중 소년범의 비율은 39.7%(15,735건)였고, 소년범에 대한 실시사건 비율은 41.3%(19,263)이었으나, 2006년 소년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접수비율은 13.7%(4,165건), 실시비율은 15.4%(5,520건)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성인범에 대한 접수비율은 60.0%(23,879건)에서 86.3%(26,197건)로 증가했고, 실시비율은 58.7%(27,374건)에서 84.6%(30,366건)으로 증가했다(이성철, 2002: 89; 법무부, 2006: 33). 성인범의 경우 접수사건과 실시사건의 숫자 자체가 증가했으나⁸⁾ 소년범의 경우에는 그 절대수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요컨대 법원은 소년보다는 성인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8) 성인범에 대한 수강명령의 접수 및 실시건수도 2004년에 최대치(접수사건 수는 33,978건, 실시사건 수는 38,347건)에 이른 이후 2005년부터(각각 28,747건, 33,224건)는 그 절대적인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법무부, 2006: 33).

의 부과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원소년부의 태도는 소년법 개정 이후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예측을 어렵게 한다.

2) 사회봉사명령 완수 요인

성공적인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집행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 제도에 적합한 대상자부터 규명되어야 한다. 마이너와 낸시(Miner and Nancy, 1983)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성공적 완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범죄유형, 과거의 범죄경력, 사회봉사명령시간, 혼인상태 등이 나타났다. 사회봉사명령 완수률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교통범죄를 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폭행, 강도, 절도, 상해, 약물, 질서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비해 그 성공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과거의 범죄경력 여부도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전과가 없거나 1범인 대상자가 2-5범인 대상자와 6범 이상인 대상자보다 사회봉사명령 완수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봉사시간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30-79시간은 94.7%가 사회봉사명령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80-100시간은 90%, 101시간 이상은 79.2%의 완수율을 보여,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사회봉사시간이 길수록 탈락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혼인상태도 이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기혼자의 완수율이 미혼자의 그것보다 더 높았다. 한편, 사회봉사 활동 그 자체와 관련된 요인들은 명령 완수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즉 한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것과 여러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개인별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집단별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시민자원봉사자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정도, 감독의 정도 등은 사회봉사명령의 성공적 이수여부에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2006년도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사례(사회봉사명령 취소자 혹은 보호처분 변경자)는

206명으로 전체의 4.9%였다. 사회봉사명령 미완수자의 봉사시간 분포를 보면 50시간 이하가 35명으로 1.8%, 51-100시간이 77명으로 6.5%, 101-200시간이 90명으로 9.1%, 201-300시간이 3명으로 42.9%이다(법무부, 2007: 628). 이는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를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부과대상자의 실패율은 아주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이 쟁점은 적절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선정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집행상의 문제점

기존의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집행상의 문제점들을 노정해왔다. 첫째, 사회봉사 내용의 협소화이다. 소년법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은 범죄행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끼친 해를 소년 스스로 되갚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담고 있다. 더욱이 보호소년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과오를 반성하고 자신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그간 시행되어 왔던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이러한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가장 이상적 형태는 법원에서 대상자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을 지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적시한 사회봉사활동을 보호관찰소에서 그대로 집행하리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복지시설이나 병원봉사를 선호하지만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과 병원의 수요는 극히 적기 때문이다(우윤근, 2005: 43-44).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70% 이상을 지역사회 협력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봉사의 영역은 대단히 넓지만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의 구체적 내용은 협소하고 협력기관

의 유형도 천편일률적이다. 예를 들어 2005년도 인천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명령 협력기관 숫자는 45개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7-8개의 협력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경정비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우윤근, 2005: 47). 즉 대부분의 협력기관에서 대상자들에게 쓰레기 줍는 일이나 청소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춘천보호관찰소의 경우 협력기관의 절반 이상은 읍·면사무소이다(우윤근, 2005: 49). 그런데 해당 읍·면사무소들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위한 치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도로변 정리나 청사 주변 청소가 사회봉사의 주된 내용이다. 사회봉사의 집행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해당 보호관찰소에서 협력기관의 다양성이나 내실화, 사회봉사 시스템의 선진화·체계화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내처우로서 대상자의 처우 특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화되어야 한다.

둘째, 집행과정에 대한 감독의 문제이다.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에는 대리출석 혹은 협력기관의 금품수수, 봉사명령 불참과 장소이탈, 태만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⁹⁾ 이 중 대리출석이나 뇌물수수를 통한 허위집행은 큰 문제이다.¹⁰⁾ 이에 법무부에서는 2005년 2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 화상전화 감시제도를 도입하였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2.21). 화상감독은 감독관이 하루 3차례 화상전화기가 설치된 봉사현장에 화상전화를 걸어 대상자를 불러낸 후 사회봉사명령 신고 때 촬영한 사진과 화상전화기 상의 얼굴을 대비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화상전화기의 설치는 근본적으로 감독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감독의 부실문제

9) 동아일보. “돈 주고 사는 사회봉사.” 2003. 11. 14; YTN. “사회봉사명령 대리출석 40대 수감.” 2004. 3. 16.

10) 우윤근 국회의원의 법무부에 대한 질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총 29건의 부당집행 사례(대리출석 6건, 금품제공 23건)가 적발되었다고 한다(우윤근, 2005: 32-33). 이는 언론보도나 학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집행부정 사례보다는 현저히 작은 수치라고 우 의원 측은 평가하고 있다.

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사회봉사명령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봉사대상자 중 일부가 대리출석을 시키거나 협력기관에 돈을 주고 허위 봉사집행통지서를 써주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우윤근, 2005: 29). 물론 대리출석이나 금품제공에 의한 허위출석의 비리는 주로 성인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과 관련해서 발생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본래의 이념의 구현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형벌의 집행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감독관 1명이 100명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한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처우는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법원에서 부과한 사회봉사명령 ‘시간’을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한 과제로 전도되어 버리는 것이다.

셋째, 지역자원들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를 위해 근로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 현장이 대부분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협력기관에서 그 집행을 대행한다. 그런데 법무부의 보호관찰 통계에 의하면 사회봉사명령의 협력집행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건수는 7,741건이었는데, 이중 보호관찰소 자체집행률은 17.6%였고, 나머지 82.4%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보호소년에 대한 총 4,031건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사례 중 자체집행의 비율은 47.1%, 협력집행의 비율은 52.9%로 나타나 협력집행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협력집행률의 감소는 협력기관 숫자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기관수는 2000년 1,523개소에서 2006년에는 744개로 크게 줄었다(법무부, 2007: 634). 이는 보호관찰소에서 집행방식의 충실도, 집행에 따른 대상자 개선정도, 사회적 과금효과 등을 기준으로 협력기관의 내실화한 명목 하에 협력기관들을 점차 정리·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보호관찰조차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의 자체집행 비율을 늘이는 것이 과연 문제해결의 효과적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 현대 소년사법의 추세가 비행청소년의 처우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력기관의 정리와 관계 단절보다는 협력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무부 사회봉사명령집행준칙 제18조에 의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담당관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집행하거나 지역사회 협력기관의 도움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봉사는 현장성이 강하고 근로를 수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감독할 보호관찰 인력의 과부족으로 인해 직접적인 현장감독은 용이하지 않다.¹¹⁾ 더욱이 소년범의 특성에 맞춰 개별화된 사회봉사의 부과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지 집단적으로 부과되는 사회봉사의 엄정한 집행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됨으로써 대상자의 출·결석과 봉사시간, 안전성 등의 점검에 주력하게 된다. 대상 소년 절반 이상이 학생신분이라는 점은 방과 후 혹은 주말이나 방학 등을 활용하여 사회봉사할 수 있도록 집행시간을 탄력적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 수강명령의 실태 진단

수강명령(attendance center order)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강명령은 심성을 개발하고 가치관과 성행을 교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11) 2004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의 직원은 전국 33개 보호관찰소(지소)에 총 97명으로 직원 1인당 집행건수는 381.6건(37,013건/97명), 직원 1인당 현지감독수는 2,689회(260,840회/97명)로 집계되었다. 보호관찰소별 사회봉사명령 담당인력은 많게는 7명(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적게는 2명(청주, 제주, 강릉)으로 평균 2.9명이다(우윤근, 2005: 57-58). 그런데 보호관찰소별로 사회봉사명령만을 전담하거나 여타업무(보호관찰, 조사 등)와 병행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사회봉사 전담인력은 이보다 더 적다고 판단된다.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손동권·최영신, 1998: 27). 수강명령은 시설내처우의 폐단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소년범에 대해 수강명령제도가 시행된 것은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1989년 7월부터이다. 보호관찰처분에 병과되어 집행되어 오다가 2007년 12월 개정 소년법에서 독립적인 보호처분의 하나가 되었다.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주로 절도, 폭력, 교통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다(<표 3>). 2004년까지 소년범에 대한 수강명령 중 성폭력범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년부터는 줄어들고 있다.

1998년만 하더라도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의 대부분은 마약범죄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¹²⁾ 하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의 비중은 급속하게 줄어들어 2005년 이후로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약물중독의 문제는 교육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법원의 인식전환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절도, 폭력, 교통, 그리고 성폭력은 청소년 범죄의 대표적 유형들로서 수강명령이 이러한 범죄에 집중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강명령의 대부분은 50시간 범위 내에서 부과되고 있었다. 2006년의 경우 수강명령이 부과된 소년범은 모두 2,920명이었는데 이 중 학생이 57.3%, 직장이 있는 소년이 5.5%이었다(법무부, 2006: 720-721).

12) 법원은 1997년 1월 '형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총무예규 제511호, 1997. 1.10.)을 제정하였는데, 이 지침에서는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 유형으로 ① 본드·부탄가스를 흡인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행한 경우, ③ 심리·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 등)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법원공보 제1033호, p.232; 손동권·최영신, 1998: 76에서 재인용).

<표 3> 연도별 수강명령 대상 소년의 죄명별 분포 (단위: %)

연도	폭력	절도	성폭력	마약	교통	기타
1998	5.3	5.6	3.5	74.7	9.5	1.4
1999	22.8	26.0	3.6	24.9	16.1	6.6
2000	29.4	25.2	5.4	12.4	21.5	6.1
2001	15.9	20.4	7.4	11.0	36.7	8.6
2002	22.7	20.7	11.3	6.0	29.9	9.4
2003	19.2	23.3	5.4	2.8	35.9	13.4
2004	22.7	26.4	12.4	1.6	27.4	9.5
2005	22.5	28.8	8.2	0.6	31.5	8.4
2006	23.3	33.3	4.8	0.8	23.3	14.5

자료: 법무부, 보호관찰 통계(1998-2006년도),

1) 추세와 전망

보호관찰 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과 달리 소년법에 대한 수강명령은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1>). 1996년 보호관찰에 병합된 수강명령 처분건수는 1,367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3,295건수로 늘어나 10년 사이에 약 1.4배 증가하였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 처분건수는 34.1% 감소했고, 사회봉사명령은 33.6% 감소하였다. 보호관찰에 병합되는 수강명령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6년 그 비율은 6.3%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22.9%로 높아졌다. 보호관찰 처분 5건 중 1건에 수강명령이 병합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에 수강명령이 병과될 가능성은 단기보호관찰의 경우보다 장기보호관찰의 경우가 좀더 높으나 그 차이는 사회봉사명령의 경우보다 크지 않다. 2005년 단기보호관찰(2호처분)에 대한 수강명령 병과비율은 21.8%이고 장기보호관찰(3호처분)에 대한 병과비율은 23.9%이다.

수강명령에 대한 법원소년부의 우호적인 태도는 성인범죄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보호관찰제도가 성인법으로 확대되면서부터 소년법에 대한 수강명령의 비중은 한동안 낮아지다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의 보호관찰통계의 수강명령 대상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소년에 대한 접수 사건 비율은 1998년 19.8%(721건)에서 2002년 11.7%(1,206건)로 낮아지다가 2003년 14.4%(1,544건)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26.2%(2,920건)에 이르렀다.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실시사건 비율을 보더라도 그 경향은 동일하게 관찰된다. 1998년 소년법 수강명령 실시사건 비율은 23.1%(1,017건)였으나, 2002년에는 13.1%(1,560건)로 낮아졌고, 2003년 15.0%(1,832건)으로 조금 높아진 다음, 2006년에는 27.9%(3,842건)에 이르렀다. 즉 수강명령제도가 성인 범에게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법원은 소년보다는 성인에 대한 수강명령에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해왔으나 2003년부터는 법원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상의 분석에 기초할 때 수강명령의 수요는 그 처분의 독립성 효과로 인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사회봉사명령의 추세와 같이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의 법원소년부가 내렸던 보호관찰 처분건수의 절반정도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새로운 수요에 맞춰 기존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집행상의 문제점

수강명령 집행의 현실은 사회봉사명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프로그램에 소년의 욕구와 환경, 위험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낮고, 감독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어려우며, 지역자원의 활용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강명령과 같은 처우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이론적 기초에서 출발한다. 인

13) 2004년 이후 성인법에 대한 수강명령 접수사건과 실시사건은 그 수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접수 사건수는 2003년 9,204건, 2004년 11,939건, 2005년 10,637건, 2006년 8,238건임, 실시사건수는 2003년 10,400건, 2004년 13,193건, 2005년 12,430건, 2006년 9,941건이다(법무부, 2006: 40).

간의 이성이나 사고에 초점을 두는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 인간의 감정을 강조하는 정서적 접근(affective approach), 행동에 일차적 의의를 두는 행동적 접근(behavioral approach) 등 그 이론적 배경은 다양하다. 현실요법(reality), 사회복지적 개별처우(social casework), 행동주의·학습이론(behavior/learning theory)은 이러한 관점들에 각기 상응한 대표적 이론이다(Abadinsky, 1994; 손동권·최영신, 1998: 63-75). 각 관점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하지만 인간의 행동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수강명령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강대상자 개인의 행동수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욕구수준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년의 욕구에 적합한 복합적인 처우프로그램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 초창기부터 수강명령 집행환경의 열악성과 전문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과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곳은 보호관찰소이다. 보호관찰 인력의 절대부족 현상은 효과적인 수강명령의 집행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2년의 경우 수강명령 실시사건에 대한 직원 1인당 연간 사례수는 313.2명이었으며, 현재원 기준으로는 직원 1인당 사례수가 39.1명이었다(이성철, 2003: 75). 이는 수강명령 담당직원이 한번에 39명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지역사회 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강 대상 소년의 범죄유형, 연령, 성별, 범죄의 심각성 정도가 다양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과 담당직원의 업무부담이 높을 경우 집행이 지체되거나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지역사회는 보호관찰소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창고이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들을 활용하는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더욱이 사회사회의

관계는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과 대조적으로 수강명령은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집행하는 비율보다 보호관찰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1998년 수강명령의 보호관찰소 자체 집행비율은 21.5%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91.6%로 크게 증가했다(법무부, 2007: 44).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통한 협력집행은 주로 준법운전과 약물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 심리치료, 성폭력에 대한 협력집행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약물분야의 협력집행률은 전체 협력집행률의 14-15%를 유지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자체집행률이 높아지는 것은 수강명령 프로그램 운영 경험의 축적에 따른 역량강화의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집행에 집중하다보면 지역사회 풍부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어 우려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강명령이 독립처분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소년담당 판사가 보호처분으로서 수강명령을 선택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⁴⁾ 보호관찰소는 프로그램 시행자로서의 위상보다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자원 관리자 혹은 자원연계자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소년의 신분과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 집행의 부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수강명령의 집행이 대부분 주중에 낮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 소년 5명 중 적어도 3명은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내처우가 기존의 사회생활과 사회관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수강명령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주말이나 방과 후 혹은 퇴근시간 이후에 수강명령에 응할 수 있다

14) 2003년 6월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 서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형사담당 판사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보호관찰 선고시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 비율은 15.6%였고, 75.6%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를 보면 일괄적으로 병과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병과한다거나, 두 제도의 취지나 목적 다르다거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이중처벌, 보호관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이성철, 2002: 105-106에서 재인용). 특히 조사에 응한 판사들은 수강명령이 마약 등 약물사범, 성범죄, 교통, 음주로 인한 범죄, 소년범죄 등에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들로 미뤄볼 때 소년담당 판사들이 수강명령을 대안적인 보호처분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록 집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 소년원 처우

소년사법체계는 종종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곤 한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인식되거나 행동방식이 개선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소년들은 구금시설에 억류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될 것이다. 시설수용에 의한 처우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비행 및 범죄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행이나 범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소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년을 반사회적 생활이나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일정 기간 의도적으로 격리시킨 다음, 집중적이고 계통적인 교육과 처우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이 시설수용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용에서 비롯되는 집단생활은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소년범에 대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혹은 시설수용에 의한 재사회화의 기획은 여러 측면에 공격받고 있다. 그 비판은 크게 두 가지이다(이훈규·김성연, 1996: 18-19). 하나는 소년원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구금과 처벌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과 보호가 중심이 되어야 할 소년원이 사실은 일반적인 구금시설과 다르지 않게 감시와 처벌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원 직원들은 원생들의 보호(혹은 처우)보다는 감시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소년들의 성행교정에 적용할 적절한 처우프로그램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소년원이 범죄예방과 재범률의 감소에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구금 상황에 전개되는 시설처우 그 자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들은 구금되기 전 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범죄에 대한 삶을 학습한다는 것이다(Bartollas and Miller, 2008: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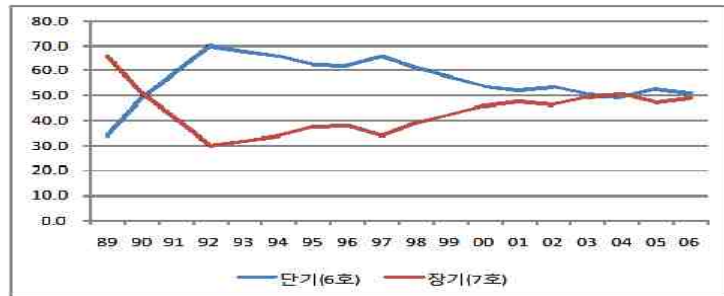
1) 추세와 전망

새로 도입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처우에 대해 법원 소년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그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단기소년원 처우나 장기소년원 처우에 대해 법원이 보여 왔던 입장과 경향성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원 수용이 소년부 판사들로부터 선호되는 보호처분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김지선, 2006). 보호처분 중 소년원 수용(구 소년법의 6-7호 처분) 비율은 1994년의 12%를 제외하면 대략 8-10%선에서 증감을 반복해왔다. 1989년(9.3%)에서 1998년(8.3%)까지 10년간은 소년원 처분비율이 감소하였고 1999년(8.7%)부터 2004년(10.5%)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9.5%)에 다시 감소하여 2006년에는 8.6%로 낮아졌다(대법원, 사법연감 1990-2007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개월 미만의 단기처우(구 소년법의 6호 처분)의 비율은 1992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고 6개월 이상의 중·장기처우(구 소년법의 7호 처분)의 비율은 1992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2003년부터 단기소년원 수용 비율과 중·장기소년원 수용 비율이 50대 50으로 거의 양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비록 소년원 처분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중·장기수용 처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소년사법부가 비행성이 심각하고 교정가능성이 낮은 범죄소년들에 초점을 맞춰 소년원 수용처분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소년원 수용은 복지모델적 차원보다는 범죄통제모델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¹⁵⁾ 최근 법원 소년부의 동향을 보면 소년이 행한 범죄

15) 범죄통제모델은 청소년의 비행행위에 대한 치유수단/교정으로서 처벌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형벌의 혹독성, 확실성, 신속성을 강조하고,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반복적인 범죄청소년에 대한 구금활용을 옹호한다. 형벌은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범죄통제모델은 범죄청소년의 보호보다는 무고한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더 우선가치를 부여한다. 때문에 경찰의 통제활동을 지지하고 사회를

사건의 심각성보다는 과거 범죄경력을 소년원 수용처분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고려하는 듯하다.¹⁶⁾ 그것은 소년원에 재수용되는 범죄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데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소년원에 수용된 범죄소년 중 재차 입원한 비율은 17.1%였으나 2001년에는 그 비율이 24.9%로 높아졌다(최영신, 2002: 51).



<그림 1> 단기소년원 송치와 장기소년원 송치 비율의 추세

이렇듯 소년원 수용처분을 비행성이 심각하고 교정가능성이 낮은 소년범에 대한 형벌로서 한정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면, 개정 소년법에 의해 도입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수용처분에 대해 소년부 판사들이 좀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사회내처우(보호관찰)와 시설내 처우(소년원)의 중간단계의 제재형태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소년부 판사라면, 새로운 제대는 변형된 형태의 중간적 제재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자의 고립화,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비행청소년의 고립화 정책을 옹호한다. 소년범의 범법억제를 위해 단기 구금형보다는 장기 구금형을 더 선호하며, 소년범의 성인법원으로서의 빈번한 이송, 강제적인 양형법 채택 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Bartollas and Miller, 2008: 25-26).

16) 보호소년에 대한 시설처우와 비 시설처우(사회내처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김지선(2000: 157-158)의 연구에서도 소년담당 판사의 소년원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과거의 범죄경력 유무였고, 그 다음이 보호자의 보호의지, 가족의 결함성, 이전의 처분결과, 제법까지의 시간, 범죄의 심각성(폭행, 성폭력, 강도), 소년의 직업유무의 순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 진 단

1개월 이내의 소년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려면, 기존의 소년원 운영 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있어야 한다. 소년사건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서 소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소년원이 재범억제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소년사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을 것이다.¹⁷⁾ 소년교정당국은 소년원이 범법청소년의 재범예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특성화 교육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였다(최영신, 2002). 소년원의 특성화 교육은 대안교육과 유사한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전자가 컴퓨터, 외국어, 체육활동 등 기능위주의 교과에 집중되어 있다면 후자는 특정한 기술이나 능력의 집중연마보다는 전인적 인성교육에 좀더 많은 무게가 실린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소년원 내부에서도 ‘소년원의 특성화 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최영신, 2002: 111, 118, 121). 이들은 소년원 처우에서 특성화 교과 내용이 기술이나 정보보다 인성교육 중심으로 채워져야 하고, 심리치료, 봉사활동, 극기심·인내심 고양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소년원을 일반학교와 같은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조건에서 한계가 있으며, 교정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년원의 규모도 축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최영신, 2002: 117, 120-121).

현재 소년원은 수용인원의 감소와 사회내처우의 중요성 증대, 1개월 미만의 단기구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으로 인해 수용위주의 소년원과 분류심사원 운영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간 소년원은 시설내 교육에 중점을 둔 기관운영과 사회적 선호가 낮은 교육과정으로 인해 보호소년의 사회적응력 배양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따라서 지역사회

17) 소년원 퇴원자나 가퇴원자의 재범률은 보호관찰에 회부된 소년들의 재범률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철, 2003: 154-156).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에 수용되었던 소년들이 보호관찰을 받았던 소년들보다 애초부터 비행성이 더 심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높은 재범위험성을 교정하는 데 요구되는 집중적·효과적인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와 연계된 개방적 교육과 선도 중심의 소년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사회적응력을 제고함으로써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김은경 외, 2007: 145). 특히 개정 소년법에 의해 마련된 1개월 미만의 단기소년원은 프로그램 운영방식이나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수행장소 등에 있어 기존의 소년원 운영체제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III. 새로운 보호처분의 효율적 운영조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원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제반 사항들은 대안 모색의 방향과 내용들을 설정한다. 새로운 보호처분 유형들은 비록 각기 지향하는 목표와 대상, 운영방식을 달리하지만 비행청소년들의 욕구 및 위험 수준에 기초하여 인성과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처우 프로그램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보호처분의 유형들은 단계적·누진적 제재의 원리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국한된 요인들(프로그램의 내용, 대상선정, 집행방식 등)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소년 보호정책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과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1. 토대의 구축과 정비

가. 소년사법체계와 복지체계의 유기적 연계

오늘날 선진국의 소년사법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조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는 범죄에 대한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의 이동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기관 중심에서 사법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로의 이동이다(김은경 외, 2007b: 156-57).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는 사법기관 중심의 사후처벌 체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기관 협력을 통한 비행의 예방-처우-사후보호의 연속적인 처우를 제공하는 종합적 시스템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

소년사법의 보호이념은 엄벌주의적 사후개입이 아닌 복지주의적 사전개입을 강조한다. 비행 혹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성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선을 통해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치료에서 교육과 취업까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처우가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144-164). 따라서 복지 및 사법 관련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사법과 소년복지 관련법규 간 연계위탁 규정을 설정하여 소년사법기관의 처분이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년법에 위탁규정을 두어 소년복지 관련법으로 이관·처리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행 및 범죄 예방과 처우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실무규칙을 만들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협력주체의 요건과 선정, 협력내용과 방법,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 협력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김은경 외, 2007b: 157).

나. 단계적·누진적 처우체계의 확립

경험적 연구들은 비행위험성이 높은 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부재 혹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Howell et al., 1995). 그렇다면 우리의 소년사법도 미국의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JJDP:

Office of Juvenil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의 연령과 비행 위험수준에 따라 개입방식이 분화되는 단계적·누진적 처우체계(graded sanction)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김은경 외, 2007b: 158).¹⁸⁾ 소년사법이 표방하는 후견주의 혹은 교육형주의 이념을 실현하려면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복지적 처우와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다이버전과 사회내처우로써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접근이 실패한 중한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처우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관대한 처분과 강력한 처벌 사이에 중간형태의 처우 혹은 제재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소년의 비행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재하고 그것이 효과적이지 못했을 때 다음 방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적·누진적 처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우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입과 처우 결과에 대한 일정한 사법적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보호소년의 순응도에 의존하는 보상과 제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다이버전과 중간제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역사회 처우기관들이 풍부하게 포진해 있어야 한다.

다. 조사와 진단체계의 과학화: 위험평가와 욕구평가의 통합적 접근

단계적·누진적 처우체계는 객관적 위험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체계적인 진단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비행성예측자료표), 소년분류심사원(분류심사표), 보호관찰소(분류심사, 판결전 조사), 소년원(재비행예측표) 등 주요 소년사법기관에서 분류 및 위험평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사법의 많은 결정들(경찰단계의 훈방조치, 검찰단계의 소년에 대한 관할 및 기

18) OJJDP의 단계적·누진적 처우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김은경 외, 2007b: 184). 첫째, 조범이며 비폭력적인 범죄정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전환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즉각적인 개입(immediate intervention)을 한다. 둘째, 즉각적인 개입이 부적절한 조범 폭력범죄자이거나 제법을 함으로써 즉각적인 개입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범죄정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중간제재(intermediate sanction)를 한다. 셋째, 매우 심각한 범죄정소년이나 계속되는 제법으로 인해 중간제재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범죄정소년에 대해서는 시설처우를 한다. 그리고 모든 시설처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후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유에 결정, 수사단계의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 결정, 소년부 판사의 처분결정 등)은 여전히 임의적·주관적·직관적 방식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다(김은경 외, 2007b: 189). 이러한 판단방식은 주로 범죄사실에 무게를 두게 되고, 소년의 비행성이나 비행환경, 성행의 개선가능성 등은 상대적으로 판단의 중요변인으로 고려되지 못한다. 더욱이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처우의 불평등을 낳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초래한다.

개정 소년법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정(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기소유예)에 앞서 필요한 경우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결정전조사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소년사법체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년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차후의 처우형태가 선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의 도입은 바람직스럽다. 그렇지만 소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검사의 결정전조사는 피의자의 주거지 혹은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서 실시하도록 소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기관별로 서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평가 도구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¹⁹⁾

그런데 현재 범죄의 심각성이나 과거 비행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 위험성 평가는 구금여부나 처분결정을 위해서는 도움 되지만, 처분결정 이후 소년에게 제공해야 할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

19) 현재와 같이 보호관찰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판결전조사와 소년원 수용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분류심사의 이원화된 체계는 통합되어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관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피의자에 대한 총괄적인 위험분석과 욕구진단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부산, 광주 3곳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모든 소년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진단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2008년 1월 현재 보호관찰소는 전국에 16개가 있고 28개의 지소까지 합하면 모두 44개의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지소) 두 기관 모두 소년범의 위험분석과 욕구진단을 실시하고 점차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더불어 가족의 구조와 기능, 정서적 상태, 학교출석 및 행동, 동료관계, 약물남용, 건강 및 위생상태, 지적능력과 성취도, 학습장애 등에 대한 욕구평가(need assessment)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개입형 다이버전'이 활성화될 경우, 욕구평가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이다.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이후에는 욕구평가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합한 처우프로그램의 유형을 결정하는 통합적인 평가·진단체계가 요구된다(김은경 외, 2007b: 191).

라. 지역사회 중심의 처우서비스 연결망 구축: 자원연계와 조달체계의 정비

21세기 소년사범은 지역의 능동적이고 보다 많은 관여를 요청한다. 지역사회는 비행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달체계를 통해서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성의 진단과 처우방식 및 처우내용의 결정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비행성의 사정과 심사 - 처우의 유형과 방식의 결정 - 처우서비스의 전달 및 집행'이라는 소년사범 전 과정에 관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김은경 외, 2007b: 194).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응하려면 지역사회의 처우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소년사범-지역사회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5년부터 추진해왔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소년사범과 소년복지를 지역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결합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이다.²⁰⁾ 사회안전망 자원체계는 공동체 사범(community justice)(Clear and

20) 이 사회안전망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청소년개발원, 2006: 52). 첫째, 청소년 중심의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이다. 지역사회 자원들의 연계협력체계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의식주, 학업지속, 정서적 지지, 보호서비스, 역할모델, 여가 및 문화체험, 진로 및 취업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서비스 등 위기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반 지원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표이다. 둘째, CYS-NET 서비스의 관문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전화 1388」 정비 사업이다. 청소년전화 1388은 인지도가 낮은 기존의 청소년 긴급전화 1388과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등을 통합(05.9.1)한 것으로서 일반전화나 이동전화에서 모두 '1388'을 누르면 CYS-NET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계되어

Karp, 1998; Williams, 2005)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사례의 발견·의뢰→선별→사정→상담·치료·지원→자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각 기관들은 분업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은 사례별로 지역직원들이 결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가능성과 기회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결합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년법의 처우에 내실을 기하는 것은 소년사범기관들의 몫이다. 현재의 사회안전망 사업은 비행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통합지원체계(CYS-NET)의 허브기능을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담당한다.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등 소년사범기관은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의뢰하는 '발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된다. 소년의 욕구들을 분석하고 필요한 처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을 선정하여 소년을 그곳과 연계하는 일은 센터의 고유 업무이다. 사범기관과 복지기관의 이러한 협력 시스템은 보호처분이 종료된(예를 들면,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만기가 되어 소년원으로부터 퇴원한)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현재 보호처분이 부과된 소년법의 처우를 위해서는 이와 다른 구조가 요구된다.

보호처분은 일차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 다만 그 처벌적 요소에 처우(복지)적 요소가 덧붙여졌을 뿐이다. 소년이 자신에게 부과된 보호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대신 보다 엄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년사범기관이 복지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보호소년을 의뢰한다고 모든 책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소년에게 부과된 처분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관리해야 한다. 더군다나 소년의 범죄행위와 비행의 심각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의 시작점이 되게 한 것이다. 셋째, CYS-NET 서비스의 연계를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달하려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YC)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함께 찾아주는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멘토(Mentor)나 자원봉사시스템이 결여되었던 전문성을 보강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성에 상응하는 보호처분 유형을 진단하는 일은 사법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전문적인 업무이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구축된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허브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금처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자원들을 연결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청소년 비행정책에 적합한 시스템으로서 복지영역에서 소년사법의 관심을 끌어들이어 통합한다. 다른 하나는 소년사법기관(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소년원, 법원 등)이 허브기관이 되어 보호소년들의 처우에 필요한 지역자원들과 연결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년사법기관들이 지역자원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년사법기관은 보호소년의 위험성과 욕구들을 분석·진단하여 성행개선에 필요한 처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자원과 연계시키고 그 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을 담당한다. 이러한 체계는 소년사법정책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년사법의 영역 속에 복지적 관심을 끌어들이는 형태가 된다. 이 두 개의 허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소년복지의 관심과 소년사법의 관심은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지원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풍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재정문제는 지역사회 자원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한 민간기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민간기관들은 스스로 마련한 재정과 후원금 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낮고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들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김은경 외, 2007b: 199). 따라 부족한 지역자원을 발굴·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자생적인 지역자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지역자원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요인들을 규명하고 현실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지원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지원(교부금 지급 등)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세금혜택, 전기·수도·가스 사용료의 할인 등)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김지선, 2002; 김지선·이동원, 2006: 287). 소년사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소년사법 관련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자원들을 소년사법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적절한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Northern Ireland Women's Aid Federation, 2004: 34-36). 효과적인 지역자원 연결망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실무자 회의나 소년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사업단'에서는 미리 해당 지역의 가용한 자원 풀을 확보한 다음, 연초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가능한 단체 및 기관들을 섭외하는 것이 좋다. 이 사업은 정례화되어야 하고 각 단체들은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처우서비스 영역별로 재정 및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약을 마련하여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발굴과 양성, 교육·훈련 및 배치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행 소년사법체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검찰 및 보호관찰소), 소년보호위원(소년원), 자원보호자(법원소년부)들은 소년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선도후견인 혹은 회복안내자²¹⁾와 그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봉사 인력들은 하나의 인력관리시스템 속으로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소년사법

21)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선도후견인'이라는 용어를 '회복안내자'라는 용어를 대체하였다. 개정안(18조)에 의하면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탁받은 단체는 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소년 개인별로 회복안내자를 지정할 수 있다. 회복안내자는 청소년기본법(3조 7호, 27조)의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소년원장 및 법원소년부로부터 추천받아 운영된다.

체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소년법과의 결연관계를 맺기 전에 반드시 상담과 처우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주기적인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 동일한 분야에서 유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력인정제와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해주는 보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은아, 2001).

2. 보호처분의 운영체계 혁신

가. 사회봉사명령

1) 회복적 사범이념에 기초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사회봉사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회복적 사범의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시행할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지금까지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대상소년의 욕구수준과 의사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기관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집행방식으로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신의 범죄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겪은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데 있어 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감독관이 대상 소년에 대한 환경 분석과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소년으로부터 성실한 참여의지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광의의 피해자로서의 지역사회의 피해회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직접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최근 개정된 소년법은 '화해권고' 조항(제25조3)을 통해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화해권고'의 이행여부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내용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사회봉사명령이 소년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불편과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며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의 화해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활동은 사회봉사명령 제도와의 접목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활동도 사회봉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²²⁾

두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원봉사자들(범죄예방위원)을 보조감독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우윤근, 2005: 35). 이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협력기관을 감시하는 감시자로 비춰져서는 안 되며, 협력기관이 사회봉사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인식되어야만 한다. 사회봉사 대상소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히 사회봉사의 집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결과통보 등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업내용의 지시 및 성과평가, 대상소년과의 유대강화 등의 능동적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2) 집행시기의 탄력적 운영

이상의 두 가지 당면과제의 해결과 더불어 사회봉사의 집행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봉사명령의 실태분석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대상소년 10명 6명이 학생이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집행시기에 대한 탄

²²⁾ 이는 영국소년사법에서 소년법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피해회복명령(reparation order)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김은경 외, 2007b: 74, 186).

력적인 운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보호소년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방과 후나 퇴근 후 혹은 주말과 휴일에도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방학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사회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반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실업상태에 있는 소년들의 경우 집중적인 사회봉사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소년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1주일 당 노동일수와 노동시간, 1일 당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²³⁾ 작업방식과 관련해서도 업무의 성격에 맞춰 개인별 작업과 집단별 작업, 시민자원봉사자와 합동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자원봉사자와의 접촉은 시민의식의 고취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3) 사회봉사와 교육훈련의 통합

대상 소년의 특성과 욕구수준에 따라서는 사회봉사와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17-18세의 중퇴생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불우한 소년범에게는 지역사회 봉사를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발상은 미국의 ‘자연보존 청소년봉사단’(Conservation and Youth Service Corps) 프로젝트에 기초한다(Jastrzab, 1996; Jastrzab, Blomquist, Masker, and Orr, 1997). ‘자연보존 청소년봉사단’은 18-25세의 불우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4-5개월간의 훈련프로그램이다. 훈련은 종일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비주거형(nonresidential)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훈련 참가자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봉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8-15개 팀에서 일을 한다. 훈련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 프로그램의 참여의 핵심 동기는 세 가지로서 훈련, 종합교육시험

²³⁾ 예를 들면 주당 노동시간은 8-9시간 이내, 주당 노동일수는 3일 이내, 1일 노동시간은 2-3시간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 합격, 구직이다. 청소년 봉사단 프로젝트는 참가자 1인당 약 1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고비용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문제의 개선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비용-수익에서도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에 의하면 참가자들은 비참가자들에 비해 고용된 비율이 더 많았으며 범죄로 인해 체포되는 비율도 훨씬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는 소년범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점이 우리 현실에서는 수용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봉사활동에 고용훈련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훈련을 통해 구직에 성공한다면 재범예방의 효과는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 수강명령

1) 처우목표의 설정

앞의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기존의 수강명령제도는 주로 초범이고 절도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소년사범에 대해 주로 부과된다. 수강명령제도의 모체는 영국의 출석명령(Attendance Center Order)과 보호관찰 조건으로서의 수강명령(Probation Day Centre Order)이다. 후자가 1주일에 5일 열리는 ‘집중형’ 수강명령제도라면, 전자는 주말마다 열리는 ‘주기형’ 수강명령제도가 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상이하지만 목표와 내용은 유사하다. 특히 수강명령 대상 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석명령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석명령은 소년범으로 하여금 주말수강센터(Attendance Center)에 출석하여 강의나 상담, 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년의 여가시간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이 시간 동안 규율화된 학습환경(disciplined learning

environment)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주말수강센터는 토요일마다 열리며 1회 수강시간은 약 2-3시간이다. 프로그램들은 집단활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양교육과 수량적 사고학습(literacy and numeracy), 요리하기, 응급처치, 돈 관리, 컴퓨터, 스포츠, 가정의 전기배선 수리, 자동차 운전 등과 같은 기본적 기술과 여가시간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피해인지 강좌(victim awareness session), 약물과 알코올 인지 강좌, 성폭력예방 강좌, 분노조절 강좌 등도 출석명령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한다. 출석명령은 소년범의 연령과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36시간까지 진행된다.²⁴⁾ 소년법원은 출석명령 시 총 출석 시간과 최초출석일자를 지정하고, 그 후의 시간은 센터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주말수강센터는 일과 후 학교나 청소년 시설 등에서 경찰에 의해 운영된다.

출석명령에 의한 교육과정은 핵심학습단위(core modules)와 부가학습단위(additional modules)로 나뉜다.²⁵⁾ 핵심학습단위는 비행을 유발하는 소년의 삶의 영역들을 다루는 3시간짜리 강좌들로 구성된다. 핵심학습단위는 서로 다른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몇 개의 강좌들로 세분화된다. 주요 프로그램들은 범죄행동에 대한 처우(약물과 알코올 범죄, 자동차범죄, 또래의 영향, 피해자 관련 쟁점 등, 구금생활의 충격에 대한 영상물 감상 등), 교육(교양 및 수량화된 사고훈련 등의 기본기술 교육, 기존의 기술능력 향상), 직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및 고용훈련(직업훈련의 기회제공, 면접훈련, 구직기회 제공 등), 시민의식 배양교육(영국적십자사에서 실시하며 다양성, 인권, 민주주의, 능동적 참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세계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표로 함), 응급처치법(영국적십자사에서 실시하며 심폐소생술, 가정에서의 응급조치, 사고현장에서의 응급조치 기술 습득이 주된 내용) 등이

24) <http://www.yjb.gov.uk/en-gb/yjs/SentencesOrdersandAgreements/AttendanceCentreOrder/>

25) <http://www.gov.im/lib/docs/dha/news/attendancecentreorders.pdf>

다. 부가학습단위는 핵심학습단위에 덧붙여 특별한 조치가 더 필요한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통 4주간의 강좌로 구성된다. 구체적 프로그램으로는 자기관리,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자긍심, 자의식, 문제해결능력 배양, 분노와 공격성 및 갈등조절, 대인관계술, 성교육 및 성건강과 같은 생활기술(life skills),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피해자 관련 쟁점들(갈등해결, 중재, 회합, 타인에 대한 존경, 책임감 배양 등), 경찰에서 실시하는 약물교육(약물남용의 의미, 약물과 법률, 약물과 건강 등에 관련된 주제) 등이다.

영국의 출석명령제도는 우리나라 수강명령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목표들을 제시해준다.²⁶⁾ 첫째, 제재(punishment)이다. 소년에게 부과된 수강명령 시간은 소년으로부터 여가시간을 박탈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소년의 재범은 억제된다. 둘째, 자기규율(self-discipline)로 개인적 책임감과 이해를 개발하게 한다. 셋째, 자각(realization)으로서 자신의 범죄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끼친 피해를 깨닫게 한다. 넷째, 지원(help)으로서 소년으로 하여금 향후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을 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영국의 출석명령은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원리도 보여준다. 출석명령은 다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과 책임공유의 원리에 기초해 있다.²⁷⁾ 프로그램의 운영과 집행에 여러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소년에게 다각적인 교육·처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사례는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영국의 출석명령 제도에서 소년의 부모나 보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첫 번째 출석시간에는 소년과 같이 출석센터에 참석하도록 권유된다. 또한 부모 또는 보호자는 대상소년으로 하여금 출석센터의 규칙을 지켜 정시정각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격려하고 소년

26) http://www.kirklees-yot.org.uk/publications/leaflets/001_youth_justice_centre.pdf

27) Home Office. 1999. Attendance Centre News. Spring, 1999(<http://www.nationalarchives.gov.uk/ERORecords/HO/415/1/yousys/acn.pdf>).

이 출석할 수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출석센터 담당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이상의 특징들은 우리나라 수강명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수강명령 대상자의 선별절차 마련

수강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강명령에 적합한 소년을 선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존의 수강명령은 법원 소년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하지만 개정 소년법에 의해 독립적인 보호처분의 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Day Centre의 경우처럼 수강프로그램 담당자들로 하여금 소년의 교육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가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이 좀더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결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수강명령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²⁸⁾

3) 집행시기의 탄력적 운영

개정 전 소년법에 의하면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에 병합하도록 되었는데, 단기보호관찰에는 최대 50시간, 장기보호관찰에는 최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 2006년 소년법에 대한 수강명령부과 실태를 보면, 전체 2,920명의 수강명령 접수건수 중 50시간 이하의 비율이 95.5%(2,788명), 51-100시간이 4.4%(128명), 101-200시간이 0.01%(4명)로 집계되었다(법무부, 2007: 674). 즉 수강명령의 대부분은 50시간 이내로 집행되고 있었고, 51시간 이상은 4.5%에 불과했던 것이다. 새로운 소년법은 수강명령을 단독처분으로 변경하고

28)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소년의 위험성 분석과 욕구진단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독립된 전문기관이 이를 담당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강시간을 최대 100시간으로 낮췄다. 또한 과거 16세 이상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는 연령제한도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따라서 50시간 이하에 집중되었던 수강명령 시간을 연령과 죄질, 소년의 비행성향, 주위환경, 수강교육으로 인한 변화가능성 등에 맞춰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생겼다. 교육의 필요성이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장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교육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프로그램에 참석토록 하는 것이다. 저연령 소년(12-13세), 죄질이 경미한 소년의 경우에는 최대 24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그 다음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25-50시간, 51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강시간뿐만 아니라 시기와 일정에 있어서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형태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두 가지 방식²⁹⁾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소년법의 비행성과 밀접히 관련되는 문제이다. 비행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교육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자의 경우처럼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집중적인 처우가 효과적일 것이다. 주기형과 집중형의 선택에는 소년의 사회적 지위도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소년의 신분이 학생이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학교나 직장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말이나 휴일 혹은 방과/일과 후나 방학 중에 수강명령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유연해야 할 것이다.

4) 위탁기관의 활성화

앞의 실태분석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수강명령의 집행에 지역사회 자원들

29)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영국의 출석명령(Attendance Centre Order)형이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주간교육명령(Day Centre Order)형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도 토요일은 주기적인 교육형태이고, 위탁 수강프로그램은 집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을 활용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민간에 위탁했을 때 수강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적·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협력집행률을 낮추는 중요한 이유이다. 때문에 보호관찰소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그 집행을 위탁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독의 효율성이 협력집행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형태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자율적인 분위기, 강제되지 않은 상황이 교육환경에 더 적합하다면 민간전문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수강명령 집행기관의 선정과 더불어 대상자의 특성과 수강시간을 고려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맡아야 한다. 국가는 시범사업의 운영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수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부문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일지라도 운영기관이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예기치 않은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는 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실무자들과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협력을 통해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적정 인력과 예산의 확보

수강명령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과 담당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년법에는 수강명령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확보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수강명령의 집행책임이 있는 보호관찰소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외부협력기관에 대해서도 현

실적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협력기관들은 자체적인 예산을 활용하거나 후원금 등을 통해 수강프로그램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 그 프로그램의 질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만다. 따라서 정부는 보호관찰소는 물론 지역사회 협력기관에 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의 지원,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장비 및 시설의 지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특히 재정확보 방법과 책임주체를 소년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강명령 집행기관을 위한 프로그램 표준의 설정, 수행척도의 개발, 담당인력의 선발과 훈련계획의 확정, 집행기관 운영과 재정지원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수용 처분

1). 효과적인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평가

새로 도입되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수용 처분은 짧은 수용기간상의 문제로 인해 인성교육과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에 초점을 맞춰 운용되는 것이 좋다. 현재 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성 개발 훈련, 분노조절 훈련, 행동주장 훈련 등의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은 모두 대인관계 훈련 혹은 행동프로그램의 일종이다.³⁰⁾ 그런데 특성화 학교체제로의 전환 이후 심리치료 대상 인원은 감소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최영신, 2002: 138). 하지만 전문

30) 심각한 범죄소년들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개입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 립시와 데이비드(Lipsey and David, 1998; 최영신, 2002: 148-50)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대인관계 훈련(interpersonal skills), 집단가정 훈련(teaching family homes), 행동프로그램(behavioral programs),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communitary residential programs), 복합서비스(multiple services)에 속하는 프로그램 등이 재범률을 낮추는 데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인관계 훈련이나 행동프로그램은 수용처우 대상자나 비 수용처우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고, 집단가정 훈련, 지역사회 거주프로그램은 특정한 거주형태를 전제로 하는 처우 프로그램들이다.

인력 부족의 문제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정서 순화나 심성순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소년원생의 범죄성 정도와 범죄유형 별로 특화되어야 한다(최영신, 2002: 150). 폭력범죄에는 분노조절 프로그램, 사회성 개발 훈련, 행동주장 훈련 등이 필요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청소년들에게는 성교육, 가치관 정립훈련, 자기성찰법 등이 필요하다. 약물남용 청소년에게는 약물교육, 심리극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소년원에서 개발·시행할 수 없다면 적합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대안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년원과 지역사회 관련 자원들 간의 연결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되어야만 한다.

2) 중간제재적 성격의 시설처우 운영

개정 소년법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새로운 보호처분 수단으로 도입하면서 이를 2년 동안의 장기보호관찰과 병합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미만의 소년원 시설처우는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단기 구금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병영캠프(boot camps)이다. 병영캠프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크게 주목받았는데, 30-120일간 시설 내에서 군대식 규율, 육체훈련, 통제된 활동을 통해 청소년 범죄자에게 단기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미래의 범죄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관찰과 같은 낮은 단계의 제재에 실패했지만 아직 비행이 경화되지는 않은 청소년들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성범죄자, 무장강도, 폭력범죄자는 제외된다(Cronin, 1994: 37; Waldron, 1990).

병영캠프의 충격요법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환경 그 자체의 구금성

(incarceration)이 포함된다(Salerno, 1994: 149). 프로그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교육 및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사회봉사, 약물남용 상담과 처우, 건강 및 정신건강 처우, 개별화되고 연속적인 사례관리, 집중적인 사후보호 서비스 등 여섯 가지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다(Peters et al., 1997: 3, 35).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작업유형들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하루의 절반 이상을 교육 및 상담활동, 몇몇 형태의 약물 및 알코올 상담이 실시되며, 프로그램 수료자들에게 일정기간의 집중적인 지역사회 감독을 받는다. 병영캠프의 질은 대개 참가자들의 성숙수준에 맞춰 어느 정도 프로그램들을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들을 시행·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Peters et al., 1997).

병영캠프 프로그램의 재범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맥킨지와 그의 동료들은 26개의 청소년 병영캠프(2,668명)와 22개의 전통적인 수용시설(1,848명)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병영캠프의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환경을 보다 긍정적 혹은 치료적이며, 덜 적대적이거나 덜 위험하며 보다 구조화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영캠프에 수용된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시설수용 청소년들에 비해 반사회적 경향과 좌절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MacKenzie et al., 2000: 279). 하지만 청소년 병영캠프에 대한 다른 후속연구들은 병영캠프 출신자들의 재범률이 전통적인 소년수용 시설 출신자들의 재범률보다 약간 높거나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였다.³¹⁾ 또한, 병영캠프 시설 내에서 직원들에 의해 행해지는 학대문제는 낮은 재범률과 더불어 이 프로그램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식되고 있다.³²⁾

31) Zaehring, Brent. Koch Crime Institute White Paper Report Juvenile Boot Camps: Cost and Effectiveness vs. Residential Facilities, <http://www.hrf.uni-koeln.de/sitenew/content/e/filejuvbootcamps.pdf>.

32) 대표적인 사례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여름 South Dakota에서는 14세 소년 14명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동안 탈수증으로 사망하였다(Marks, 1999: 1). 2001년 에리조나 출신 14세 소년 Anthony Haynes가 병영캠프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 캠프에서는 문체징 소년들은 직원들에 의해 발로 차이고 강제로 진흙을 먹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 단체훈련에서는 강

농장 및 야영캠프(Ranches and Wilderness Camps)도 미국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적인 시설처우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Sickmund, 2006: 10). 2002년의 경우 농장 및 야영 캠프 프로그램은 전체 범죄청소년 처우의 4%를 담당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수용자들은 전형적으로 주립 공원에서 풀을 자르거나 잡초를 제거하고, 청소하고, 일반적인 보수유지와 같은 관리보존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용소년들은 야외에서 전개되는 육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사업가 및 아동청소년 보호직원과의 개별접촉과 상담, 집단치료 등이 주종을 이룬다. 수용소년들에게는 정규적으로 혹은 일주일 단위로 물품구매와 지역사회 행사 참석을 위한 외출, 가정방문이 허용된다. 보안의 수준은 비교적 낮아 경구금(minimum security) 혹은 개방형 시설로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단기구금제도들을 중간제재 형태의 지역사회 구금형 처우 프로그램들이다. 우리의 경우 중간처우시설이 있기는 하나 처우환경의 열악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은 시설 처우와 사회내구금 처우의 혼합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미국의 운영방식을 참고로 할 때, 새로 도입되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처우는 기존의 단기소년원이나 중·장기소년원에 비해 수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학과/직업교육 위주의 프로그램들보다는 육체적인 활동, 규율과 책임의식, 자긍심, 타인과의 협동, 사회봉사 등에 초점을 맞춘 집단적 처우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비록 폐쇄적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형 프로그램이지만 개방적 요소들을 접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보호관찰과 병합되는 경우에는 주말과 휴일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같이 있게 하거나 주중 특정한 요일을 정

제적인 행군, 남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 규율/훈육, 사과 한 개, 당근 한 개, 콩 한 사발의 식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Associated Press, 2001). 그밖에 병영캠프에서의 학대와 관련된 고찰은 Lutze et al.(1999: 242-255)를 참조할 것.

해 보호자와 소내에서 일정시간을 같이 보내는 프로그램도 고려해볼만 하다.

3) 주말구금의 활용

소년원 수용방식을 주중과 주말로 이원화하여 집행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주기형 단기유치센터(Periodic Detention Centre)는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손동권·최영신, 1998: 30-31). 이 제도는 보호관찰과 구금의 중간처우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15세 이상 21세 미만의 범죄자들에게 적용된다. 법원은 범죄자가 처음 출석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며 구금기간도 결정해야 한다. 처분기간은 다양하지만 일주일에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센터의 참석시기와 시간은 범죄자의 학교출석이나 직업생활, 종교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로 운영된 오클랜드의 센터의 경우 20명을 수용하며, 정상적인 출석시간은 40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오전 11시까지와 수요일 저녁 2-4시간이다. 주된 활동은 잔디 깎기 등의 보수작업과 청소, 요리 등이며, 집단토론을 실시하거나 외부작업으로서 양로원, 정신박약센터에서 일하기도 한다. 이 센터는 교육과 함께 일시적인 구금이라는 처벌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소년범의 주말 자유시간을 박탈하는 것과 엄격한 훈련 및 힘든 작업을 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범죄를 행할 개연성이 많은 주말에 소년들을 억류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막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 프로그램을 응용해본다면, 주중에는 소년원에서 일정시간 교육과 훈련을 받고서 귀가하고(주중 비주거형 소년원 운영),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소년원에서 종일 생활하는(주말 주거형 소년원 운영)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구금의 충격을 경험하게 하면서도 구금으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는 절충적 제도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개월간의 구금'의 의미를 '1개월간의 집중적 구금생활'이 아니라 '총 구금일수가 1개월'로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이 높은 주말에만 소년원에 구금하여 1개월의 시간을 채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미국의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 사무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1995)은 심각한 혹은 만성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요건들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둘째,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담당직원들에 의해 운영하고, 셋째, 사례관리 접근과의 통합하며, 넷째, 범죄자 개인들의 특별한 요구 및 문제들과 연계시키고, 다섯째, 지역사회, 또래집단, 학교 혹은 직장과 관련되는 쟁점들의 다루며, 여섯째, 청소년이 집에서 생활하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던 관계없이 어느 때는 '가능한 최소한의 구속적인 환경 속에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들은 우리의 소년사법에서도 적용해야 할 기초적인 원리들이다.

이러한 성공요건들이 갖춰지려면 무엇보다 사법과 복지가 분리되어 작동하는 소년사법체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소년사법의 영역에 복지적 요소가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비행성과 처우가능성에 기초한 단계적·누진적 제재체계는 사법과 복지의 통합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처우(복지)와 처벌(사법)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국가 후견주의(Paternalism)는 소년이 국가의 보호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승낙과 실천을 전제로 한다(Feinberg, 1980: 110-129). 따라서 처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소년사법은 처벌의 관심으로 이행해야 한다.

사법과 복지의 통합은 효율적인 처우 체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는 풍부한 자원의 창고가 될 수 있다. 현대의 소년사법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시한다. 소년사법당국은 지역자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고 이를 소년보호체계와 적절히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지역사회가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은 청소년 비행과 범죄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년사법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 도입된 보호처분 유형들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헌신적 참여와 실천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미간행.
- 김성연. 2004. 『사회내 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 동원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2006. “소년비행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보호』, 통권 18호.
- 김은경·김지선·이승현·김성연·원혜욱·이호중·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7a.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1): 제 I 부 청소년 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김지선·이승현·김성연·원혜욱·이호중·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7b.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1): 제 II 부 대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아. 2001. “우리나라 공공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지선. 2000. 『소년보호처분의 실태 및 결정요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1.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2.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4.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6. “청소년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 『보호』, 통권 18호.
- 김지선·이동원. 200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 2006. “비행친구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미간행.
- 대법원. 2007. 『사법연감(통계)』 (<http://www.scourt.go.kr>).
- 법무부. 2006a. 보호관찰통계(2005년도).
- 법무부. 2006b. 범죄백서(2005년도).
- 법무부. 2007. 보호관찰통계(2006년도).
- 법무연수원. 2006. 『범죄백서』.
- 손동권·최영신. 1998.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용실태와 개발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경자 외. 200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 보고서』. 국가청소년위원회.
- 우윤근. 2005. “보호관찰 집행상의 제 문제와 개선대책.”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005-3). 미간행.
- 윤철경 외. 2005.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동진. 2002.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무웅. 1998. “사회봉사명령 효율적인 집행.” 법조.
- 이병기·김성언. 1995.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형

- 사정책연구원.
- 이성철. 2002.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철. 2003.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 2005. “소년비행의 현상과 대처방안.” 『소년사범 처리절차의 적정화 방안』. 공청회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간행.
- 이순래. 2006. “청소년비행에 있어서의 최근 동향.”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미간행.
- 이창호 외. 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훈규·김성언. 1996.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희철. 2006. “독일 소년법원법상의 교육이념: 비판과 반비판.” 중앙법학 제 8집 제2호.
- 최영신. 2002.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06-R09.
- Abadinsky, H. 1994. Probation and Parole: Theory and Practi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A Simon & Schuster Company.
- Bartollas, Clemens and Miller, Stuart J. 2008. Juvenile Justice in America(Fif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Clear, Todd R. and Karp, David R. 1998. “The Community Justice Movement,” pp.3-28 in Community Justice: An Emerging Field, edited by David R. Karp. Cumnor Hill, Oxford: Rowman &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Feinberg, Joel. 1980. Rights, Justice, and the Bounds of Liber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well, James C(ed.). 1995.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Jastrazab, Joann et al. 1996. Evaluation of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Programs. Impacts of Service: Final Report on the Evaluation of American Conservation and Youth Service Corps. 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 Washington, DC(<http://eric.ed.gov>).
- Miner, Maureen and Seth, Nancy. 1983. Community Service Order evaluations: A profile of community service order offenders. New South Wales(NSW) Department of Corrective Services(http://www.dcs.nsw.gov.au/information/research_and_statistics/research_publication/rp007.pdf).
- Northern Ireland Women's Aid Federation, 2004. ?
- Northern Ireland Women's Aid Federation. 2004. How are we working?: the story so far: An audit of interagency cooperation on domestic violence in Northern Ireland.<http://www.niwaf.org/Publications/pubs.htm>).
- OECD. 1995. Our children at risk.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 1995.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June.
- Williams, Brian. 2005. Victims of Crime and Community Justice. London and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제2주제]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발 표]

한 숙 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토 론]

윤 용 규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한 숙 회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I. 처음에

- 조디포스터 주연의 ‘리틀 걸(The Little Girl Who Lives Down The Lane)’의 포스터 카피
“She was only a little girl. She lived in great big house …all alone.
Where is her mother? Where is her father? Where are all the people who went to visit her? What is her unspeakable secret?
Everyone who knows is dead.”
-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소년을 성인범죄자와 구별하여 범죄 사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배후에 있는 반사회적인 성격과 환경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교육적·보호적 대책을 세워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데 있음. 특히 저연령대의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획일적, 형식적인 처우를 지양하고 개개 소년에 따라 그 가능성을 찾아 처우를 개별화하여야 할 것임.
-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장¹⁾은 비행소년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분류한 후 각 소년에 적합한 최선의 처분을 내려야 함. 사과상자에 씌어가는 사과가 1개라도 들어가면 그 사과는 물론 옆에 있는 사과까지 오

1) 필자는 1999. 3. 1.부터 1999. 10. 24.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6. 8. 21.부터 2008. 2. 20.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각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였다.

- 염되어 씌기 시작하고 조만간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가 씌게 됨. 소년재판장의 역할은 씌어가는 사과를 잘 추려내는 일임. 즉 씌어가는 사과와 온전한 사과를 분리하고, 씌어가는 사과를 특별관리를 통하여 씌은 부위를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며, 나머지 사과들도 깨끗이 닦아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이 글에서는 개정 소년법의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라 가정법원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고자 함.²⁾

II. 촉법소년 연령인하의 찬반 논거

1. 촉법소년 연령 인하에 대한 공식적인 개정이유

- 청소년의 성숙 정도,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만 19세는 대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소년법의 적용 상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고, 소년법 연령이 낮아질 뿐 아니라 범행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춤.
- 만 1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현재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아니하는 만 10세와 만 11세의 소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화·선도 등이 가능하게 됨.

2) 이 글은 2008. 5. 23.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법’이라는 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춘계 형사정책세미나에서, 소년보호사건재판을 담당하였던 실무가의 입장에서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실무 및 개정 소년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에 관하여 그동안 가정법원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들을 취합 정리한 후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인 것으로서 필자 개인의 논문이 아님을 밝혀둔다.

2. 연령인하 찬성론자의 논거

- 일반적으로 초발비행의 시기가 빠른 소년일수록 비행이 상습화될 위험성이 높은 점.
-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육의 정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졌고, 12세 미만자의 요보호성을 인정할 만한 소년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점.
-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치우가 중요하다는 점 등

3. 연령인하 반대론자의 논거

-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가 촉발비행자에 대한 조기대응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확대는 정당화될 수 없음.
-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낙인효과를 가중시키는 사법기관에 의한 개입보다는 복지행정형 개입이 적절하다는 점 등

4. 개정 소년법의 문제점

- 개정 소년법은 촉법소년 등의 하한 연령만 인하하였을 뿐 촉법소년 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앞으로 소년보호제판을 하면서 고민이 많아지게 됨.
- 일본은 촉법소년 등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조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도도부현지사,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양호시설

- 송치를 인정하고 있음. 위 각 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과 가정환경 기타 환경상의 이유로 인해 생활지도 등을 요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입소시키지 않고 보호자의 슬하에 둔 채 시설에 다니게 하여 개개의 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도를 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라고 함. 위 각 시설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처우를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적인 분위기 하에서의 개방치우라는 특색이 있음.³⁾
- 현재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32조 1항 4호 처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4호 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이 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그 수도 적고 나이 어린 촉법소년 등을 맡아 보호할 만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부족한 저연령대 아동과 관련하여 그들의 신병을 어떻게 할 지, 시설 내 처우를 하게 된다면 어느 곳이 적합할 지, 어떤 처분이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인지 등 문제가 많음.

Ⅲ. 현 실무상 촉법소년 처우의 종별 및 내용

1. 심리불개시결정(소년법 19조)

-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형식적 심리불개시)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실질적 심리불개시)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함.⁴⁾

3) 김행순, “일본의 소년보호재판제도에 관한 고찰”, 재판자료 111집(하) 89쪽 이하 참조.

- 심리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로는 심리조건⁵⁾의 부존재, 비행사실의 부존재, 소년이 심리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소개불명인 경우로서 심리가 사실상 불능인 경우를 들 수 있음.
-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모두 상당하지 않고, 소년부 판사에 의한 직접심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건에 의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거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 등을 말함.

2. 불처분(소년법 29조)

-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 불처분결정을 함.
- 구체적으로는 심리의 결과 ①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비행 사실은 인정되나 보호력이 강하고 비행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비행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으며 재비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미 다른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등으로 별도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하고 있음.

3. 1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1호)

-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인바, 자연령의 초범이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결정임.

4) 심리불개시 결정은 심리개시 전에 하는 것이지만 이미 심리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심리기일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그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소년심판규칙 22조),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기도 한다.

5) ① 소년의 생존, ②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칠 것, ③ 관할권, ④ 송치통고 등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없을 것, ⑤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관력 내지 일사부재리효과 미치지 않을 것, ⑥ 소년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일 것 등.

- 보호자 위탁과 함께 자원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비행의 내용 및 요보호성은 1호 처분과 비슷하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취약한 경우(가정의 결손, 보호자와의 갈등 등) 또는 가정은 원만하나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이웃의 조연자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선택하고 있음.

4. 2호, 3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2호, 3호)

-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2호 처분은 6개월의 단기 보호관찰을, 3호 처분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는 것인데, 보호자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1호 처분과 병과하고 있음.
- 보호관찰처분은 보통 1호 처분의 전력이 있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데 사안에 따라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5. 4호 수탁기관 처분(소년법 32조 1항 4호)

- 4호 수탁기관 처분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임.
- 4호 처분은 일종의 시설 내 처우이므로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력이 취약한 경우에 선택하고 있음. ① 보호자의 보호력이 취약하거나 비행성이 상당 정도 심화되어 있어 재비행의 위험성이 큰 경우, ② 이미 2, 3호 처분을 받았으나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재비행을 하여 보호관찰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년원송치 처분이 가능하나 소년원 내의 수용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연령 소

년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온정적인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함.

6. 5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5호)

- 소년을 병원 또는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처분임.
- 비행의 내용보다는 보호자의 보호력과 소년의 정신건강상태에 따라 5호 처분이 선택되는데 5호 처분의 선택을 위해 소년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

7. 6, 7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6호, 7호)

- 소년원송치 처분으로 6호 처분은 6월 이내의 단기소년원, 7호 처분은 장기소년원 송치를 말함. 소년원송치 처분은 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므로, 보호력이 취약하고, 비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사회내의 처우로는 개선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선택하게 됨.
- 통상의 경우 이미 보호관찰을 수회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보호관찰을 통한 성행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하게 되며 촉법소년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고 있음(비행의 내용이 중하고 보호력이 취약한 경우).

8. 특별준수사항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32조 3항에 따라 법원은 소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데, 특별 준수사항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년의 환경의 개선과 성행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현재 일반적으로 야간, 가출 중의 비행의 경우에는 야간외출 제한을 명하고 있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준수사항의 형식으로 보호관찰소에 실시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 참여를 명하거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있으나 소년의 거부로 정신과적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치료기관을 지정하여 치료받을 것을 특별 준수사항의 형식으로 명하기도 함.

III. 촉법소년 연령인하와 가정법원의 역할강화

1. 법원과 지방경찰청과의 협력체제 구축

가. 서울가정법원 현황

-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관리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 관련 유관기관은 별지 1.과 같음.
- 서울가정법원은 1년에 2번(전반기, 하반기) 서울시내 각 보호관찰소장들과는 보호관찰협의회를, 서울가정법원 4호수탁기관장들과는 수탁기관협의회를 각각 개최하여 서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비행소년처우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유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시설 및 기관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한편, 개정 소년법 시행과 관련하여 소년보호기관과 법원 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부 소년보호과에서 협의체 운영 공식화 방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의 중에 있음.
- 현재까지는 촉법소년 등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과의 공식적인 협의자리나 의사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경찰의 역할강화

-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있으므로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일선 경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경찰청 소년업무처리 규칙 38조, 4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사 후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의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전후의 상황, 기타 비행사실 및 비행의 정황을 입증하는 제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2., 3.과 같이 소년범환경조사서 및 소년의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첨부하여 송치하도록 하고 있음. 위 환경조사서와 비행성예측자료표는 경찰관이 촉법소년들과 그 보호자들을 일선에서 직접 면접하고 조사하면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작성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들의 비행성향 및 환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 따라서 경찰관들은 소년범환경조사서 및 비행성예측자료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임
- 촉법소년의 송치 외에도 소재불명의 비행소년들에 대한 소재탐지나 동행영장 집행 등 소년보호사건에서 경찰관이 담당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앞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년업무 담당자들과 의사소통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경찰관과의 의견교류 및 업무협조를 위한 자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교류의 필요성도 있음.
- 현행 소년법은 물론 개정 소년법에서도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구체적인 조사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경찰청은 소년을 과학적으로 선도·보호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며,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함으로써 소년을 건전

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소년업무 처리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소년업무처리규칙을 두고 있음. 위 규칙 7조에 의하면 소년경찰활동을 함에 있어 ① 건전육성의 정신, ② 소년의 특성이해, ③ 처우의 개별화, 과학화, ④ 비밀의 보장, ⑤ 관계자의 존경과 신뢰의 획득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과 지방경찰청과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조사 및 신병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사전·사후통제도 가능할 것임.

2. 가사조사관의 조사활동 확대

- 가사조사관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사실의 진상을 파악하여 가사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고 소년비행에 대한 사회적 조사를 담당하는 독립된 공무원임
- 2008년 3월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전문직 조사관 15명, 일반직 조사관 11명으로 그 중 소년보호조사관은 3명인데 모두 인간관계 제과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유자격자임
-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년조사관은 예후가 불량한 모든 촉법소년을 조사하여 상담, 교육 기능,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case worker적 기능, 복지적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 필요한 경우 사건 접수 또는 직후 절차 선별, 출장조사, 심리검사 활성화, 조사면접과정에서의 상담, 조언, 부모교육, 지역사회 외부기관과의 연락·협력, 소년에 대한 시험관찰제 등 선진제국이 조사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조사관은 위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처해 있는 심리적, 가정환경적, 학교 등의 환경을 파악하고, 보호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에서 자원을 파악하여 보호소년이 최선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시험관찰의 시행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호소년에 대한 상담 및 조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비행소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전 예방적 초기 개입전략을 마련하고 탈비행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절실함.
- 상담 및 조사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비행소년이 비행초기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비행 방지. 특히 수용기관에 대한 부담감으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방치, 초기 대응이 소홀했던 촉법소년 등 중간처우대상 소년에 대한 보호력을 강화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누범화 차단.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정에 지역사회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 지역사회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지역사회교정을 실현하고, 비행소년의 완전한 사회복귀도모. 장기간에 걸친 집중 상담조사 결과를 법원의 최종 심리에 반영함으로써 충실한 소년보호재판 구현.

가. 광주가정지원 장기상담조사제도 운영

- 2006년 7월경부터 광주소년분류심사원과 협의 하에 소년법 18조 1항 1호 및 4항에 근거한 임시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장기상담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소년보호사건 재판부와 소년분류심사원 및 유관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최종처분 전에 일정기간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는 조사·교육·상담을 거쳐 그 결과를 최종처분에 반영하는 제도임
- 2006년 한 해 상담조사 대상자 165명 중 148명의 재비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담·교육 이수자 131명 중 27명(20.6%)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미 수료한 17명중 12명(70.6%)이 재비행. 상담·교육 수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소년 6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실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42명(64.6%)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을 중단한 7명(10.8%)도 취업, 학원수강 등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됨. 한편, 이들은 상담교육이 자기이해 및 반성계기, 책임감, 준법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적응, 교육·가족관계 개선 등에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1) 법 원

- 법원은 장기상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여, 임시조치로서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면서, 보호자에게 1 내지 3개월간 보호소년으로 하여금 소년분류심사원이 주관하여 소년감호의 필요상 시행하는 조사 및 상담에 응하게 하도록 지시.
- 장기상담조사 기간 종료 후 소년분류심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상담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처분 결정

(2) 광주소년분류심사원

- 분류심사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1~3일 동안 분류심사원에 출석토록 하여 신상관계, 생활환경 등 기초조사 및 준법교육 실시. 기초조사 시간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 및 협조사항, 준수사항(가출·외박금지 등) 등 필요한 내용을 설명,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분류심사원은 비행유형, 생활환경,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교육프로그램 및 의뢰기관, 단체, 개인 등을 선정, 연계하고 대상소년 및 보호자 등에게는 주 1회 이상 상담·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대상소년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전화 등을 활용, 교우관계, 야간 외출, 외박 등 생활태도를 월 2회 이상 집중 관찰하고 위험요인과의 접촉을 차단(개입), 안정된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재비행 방지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등 상담조사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통보함.
- 분류심사원은 시험관찰 종료 후 의뢰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평가서 등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 및 관찰·조정 결과를 종합,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 기일 전 법원에 송부.

(3) 프로그램 의뢰기관

- 의뢰받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면서 대상자의 참여 태도, 행동변화 등 특이사항을 누가기록하고 프로그램 종료시 전반적인 평가사항과 교육·상담일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통지

나. 성공적인 시험관찰 운영방안

-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성 강화 필요. 성폭력상담 외 폭력, 절도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력기관이 부족하고 내용 또한 대동소이하여, 전문성과 능력이 입증된 협력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참여 태만, 불출석 등 상담조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추가 비행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상담·교육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원거리 거주자나 경제적인 어려움, 보호자의 통제 불능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자의 경우, 1주일 미만의 단기 위탁이나 인근지

역 쉼터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애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장기상담조사제도는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대상소년의 가족관계 회복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상담조사 명령 시 보호자에게도 교육 수강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필요가 있음
- 상담조사기간 중 발생한 대상자의 주요 신상변동(가출, 학업중단, 거주지 변동, 임신 등)이나 교육 불참 등의 경우 즉시 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조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협력기관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4. 소년조사사건 외부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가. 가정법원의 외부기관 활용 가능성

- 시험관찰을 통하여 보호소년의 성행과 상황을 파악하고 보호소년이 사회에 내보내졌을 때의 상황을 살펴 보호처분 결정에 활용함.
- 보호소년의 개인 상황에 맞도록 보호처분 전에 보호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연결하여 보호처분 시 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함.
- 1호 처분 시 전문적인 상담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결활동을 통하여 보호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나. 서울가정법원의 외부기관 활용상황

-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조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들에게 개인적으로 관련기관에 부탁하여 연계활동을 하여 왔음.

- 서울시 소재 청소년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기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청소년 상담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인 교육청 산하 청소년상담실,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서울시 청소년상담실 등으로 분리되어 있음.
- 현재 법원과 청소년 관련 기관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소년을 의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관들도 법원과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요청하고 있으며,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지속적인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법원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 10세의 촉법소년·우범소년 때부터 개입을 시작하여 그들의 비행과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다. 연계기관 구축 방안

(1) 가정법원이 직접 외부기관연계를 구축하는 방법

- 가정법원이 직접 상담실, 사회복지관을 선정하여 현재 4호 수탁기관과 같은 복지기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임.
- 가정법원이 외부기관을 직접 선정하면, ①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관들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② 보호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보호소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줄 수 있음. ③ 법원이 단순한 사법적 분쟁결정기관이 아니라 사법복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④ 미국과 같이 법원 선의주의에 기초가 될 수 있고, 현재 경찰, 검찰에서 산발적이고, 단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에 비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한편, 가정법원이 외부기관을 직접 선정하면, ① 법원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함. ② 보호소년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부실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등 냉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직원 등의 인력배치가 있어야 함. ③ 기관관리를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2) 가정법원과 서울시가 함께 외부기관연계를 구축하는 방법

- 가정법원이 서울시와 공식적으로 협력체계를 이루어 일하는 방법으로 법원은 서울시에서 추천해주는 기관을 활용하되 서울시가 재원과 관리, 감독을 맡는 방법임.
- 서울시와 협력체계의 장점은, ① 법원이 서울시를 통하여 기관에 대한 상태파악, 보호소년을 받을 수 있는 명 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우수기관을 추천받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예상됨, ② 보호소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물론이고, 예산안까지 받아볼 수 있음, ③ 서울시의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별다른 재원마련이 필요 없음, ④ 기관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각 구에서 맡기 때문에 법원의 기관관리가 쉬워짐.
- 단점으로 ① 가정법원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가정법원과 서울시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음, ② 사법부 소속의 가정법원과 행정부 소속의 서울시가 일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음, ③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으로 가정법원에 부담으로 될 수 있음.

(3) 가정법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외부기관 연계를 구축하는 방법

6)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발족하여, 이듬해 국무총리

- 가정법원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공식적으로 협력체계를 이루어 일하는 방법으로 가정법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연관된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임.
- 장점으로는, ① 비행소년 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생각됨. ②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합하여 보호소년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 단점으로는,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상담실이 많지 않고 상담실과의 연계에만 국한되어 복지관과의 연계가 어려움. ② 서울시는 서울시, 각 구에서 복지관 담당자, 청소년상담실담당자, 서울시 교육청 상담실 담당자가 각각 있기 때문에 관리·파악이 쉽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큰 부처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할 인적자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못함. ③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라. 소 결

- 가정법원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서 보호소년에게도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가정법원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동시에 활용하면 자원의 활용도 높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관연계망을 구축할 것인지, 서울시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인지 등의 문제점 등이 있음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하였으며,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바뀌었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사무처장 겸임), 비상임위원 11인으로 총위원 13명이 있다. 사무처에는 정책홍보관리관·청소년정책단·활동복지단·청소년보호단 등이 있다.

5. 집행상황보고의 적극적 활용

-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법 32조 1항 1호, 4호, 5호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소년법 36조 1항).

가. 1호 자원보호자 처분

- 자원보호자 제도는 1985년경 소년부 판사들이 비행습벽이 고착되지 않아 교정 가능성이 큰 소년들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능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가려내어 성실한 자원시민에게 맡김으로써 1호 처분의 실효성을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임.
- 1호 자원보호자 처분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는 보호소년이나 자원보호자 양측 모두를 위한 처분의 적절성이나 감호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함.
- 특히 1호 자원보호자 처분은 주로 촉법소년 등 대상으로 처분하고 있으므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처럼 멘터(자원보호자)와 멘티(보호소년)로 구성된 일대일 결연관계를 형성시키도록 하고, 자원보호자를 도와서 개별 프로그램의 계획 및 내용 구성 과정에 참여하고, 수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생각임.

나. 4호 처분

- 4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임.
- 4호 처분에 따라 소년을 위탁받아 감호하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

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을 통상 4호 처분 수탁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법원장은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을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소년심판 규칙 34조 1항, 4항), 언제든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수탁기관이 소년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동 규칙 34조 5항).

- 과거에는 기관 측의 보호처분 변경과 같은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보호소년의 감호생활에 대한 법원 차원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만기로 퇴소하는 소년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돌아가면 재범의 가능성이 큰 환경에 노출된 채 생활하여야 하는 소년에 대한 조사 및 관리도 이루어지지 못했음. 그러나 집행상황 보고를 통하여 소년의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법원 차원의 관리와 집행 후 사회복지에 어려움이 관찰되는 경우 기관에서의 생활을 연장한다든지 타 기관으로의 연계를 하는 등의 사후조치는 소년의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앞으로 가정환경이 열악한 촉법소년의 경우 4호 수탁기관에 대한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법원 차원의 관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사관에 의한 집행상황조사보고가 유용할 것임.

6. 국선보조인 제도의 적극적 활용

- 현행 소년보호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국선보조인제도와 같은 제도가 없어 소년의 인권보장에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음.
- 소년보호사건에도 국선보조인 제도가 도입되어(개정 소년법 17조의2)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임해야 하고,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법원행정처는 개정 소년법에서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착안하여 법률전문가 외에 소년 사건 전문가 그룹도 보조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즉 국선보조인에 관하여 소년심판규칙 개정안에 ‘19조의2 1항 1호는 법률전문가, 2호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전문가’와 같은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음. 그리고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에 준하여 ‘국선보조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선보조인예정자명부’를 1호 그룹, 2호 그룹으로 별도로 작성하고, 2호 그룹은 ‘나이가 어리거나(예를 들어 14세 미만),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선정하고, 1호 그룹은 그 밖의 경우에 선정하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명부가 작성된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함 - 형사소송규칙 준용).

IV. 마치면서

1. 가족문제의 상호관련성

- 가족의 인간관계는 밀접하고 계속적이기 때문에 가족 내의 문제도 상호 밀접하게 관련됨. 범죄, 비행, 이혼, 실업, 노이로제 등의 문제가 가족의 인간관계의 위기와 파탄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소년의 비행이 부부의 불화에 관련하고, 부부 일방의 행동이 상대방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개별 문제를 미시적으로 포착하는 것보다 가족전체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⁷⁾

2. 가정법원의 발전방안

가. 가정법원의 개혁과 관련한 세계적인 경향

큰 규모의 법원은, 구체적인 법원 운용에 주목하여 절차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작은 규모의 법원은, 지역사회와 활발히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가정과 청소년문제를 치유하고 선도해나가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나. 우리 가정법원의 개혁방향

- 가정법원은 전통적인 사법해결의 틀을 벗어나 문제의 근본에 대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가정법원 개혁 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가정법원 이용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정과 소년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중심적인 법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서울가정법원은 이미 2004. 7. 5. 법관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연구활동을 한 전력이 있음. 당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5회에 걸친 전체위원회, 23회에 걸친 분과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가사, 소년, 가정폭력 관련

7) 2003. 10. 1.부터 2004. 9. 30.까지 서울송파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에 입건된 청소년 174명(남 154명, 여 20명)에 대하여 범죄심리사가 참여하여 비행촉발요인조사 및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소년의 비행성 및 재범위험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그 결과, 조사대상 소년 중 61명(35.1%)이 결혼이혼(부모이혼, 별거, 가출)을 경험하고 16명(9.2%)은 보호자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소년 중 54명(31.1%)이 가정불화의 경험을 겪었으며 39명(22.4%)은 보호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소년법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분석집 24쪽 이하.

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005. 6. 30.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전 4권)을 발간하였음.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을 담은 민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민법 및 같은 날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소년법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

-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전문법관과 조사관을 중심으로 가사, 소년에 대한 각종 제도연구, 차별화된 사건관리모델의 개발과 함께 법관과 직원에 대한 교육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전문화된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 가정법원은 'one judge, one family 이념⁸⁾'의 실현,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연계를 통하여 문제해결 법원으로서의 이념과 정신을 구현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하여 봉사하는 법원, 이라는 서울가정법원의 표어에 걸맞게 보호소년의 미래에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신속한 재판과 보호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분으로 재비행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처분 후 집행과정에 대한 감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도입하여 비행소년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가정법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원으로 이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

8) 문제해결법원 중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Red Hook Community Justice Center(2000년 뉴욕의 저소득 빈민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폐교된 가톨릭계 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만들)의 Alex Calbrese 판사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한 엄마가 마약 소지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이라고 할 때 이러한 마약 사용 결과로 그녀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에 가정위탁사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엄마가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과 사이에 퇴거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각각의 3개의 법원에 각각 다른 판사들에 의하여 다루어지지만 그 중심에는 약물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진 1명의 엄마가 있는 것이다. 레드 혹은 복합 관할법원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사건으로서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고 사후 지속적인 약물검사를 통하여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피고인이 약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 제검토를 하게 되고, 또한 법원은 그녀에게 법원 내 중재를 통하여 집주인과 사이에 임차료 지급을 중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The judge's journal winter 2002).

의 미래의 건강성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임.

참고문헌

법원실무제요 제2판(소년·비송편), 법원행정처(2000)
 소년법, 한국소년법학회편 세창출판사(2006)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Ⅰ,Ⅱ,Ⅲ,Ⅳ), 서울가정법원·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보호국(2006)
 소년법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분석집, 경찰청(2004)
 김상규, 가정법원의 장기적 발전방안 -인적, 물적 구성을 중심으로-, 실무연구 X, 서울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김행순, 일본의 소년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재판자료 111집(하), 법원도서관
 최종한, 소년재판의 강화 및 소년법의 인권보장
 원혜옥, 법무부 소년법개정안의 개요
 민혜영, 광주가정지원 장기상담조사제도
 김재연, 소년조사사건 외부기관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서
 김은영, 제1호 자원보호자 처분의 집행상황조사 실시 현황 및 개선방안
 심은지, 제4호 소년보호처분 집행상황조사 실시 현황 및 개선방안
 이옥형, 소년보호재판에서 처우의 선택, 가사재판연구 Ⅰ,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사법부 코트넷 종합법률정보 법령편

1. 소년보호사건 보호기관 총괄표

2008. 4. 30.

보 호 기 관		전화번호 / FAX	소 계 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031) 451 - 2683-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70
4 호 기 관	효광교회직업보도원(김정환)	(042) 271 - 7053	대전시 동구 낭월동 153 - 6
	나사로 청소년의집 (최영재) (여자전담)	(031) 867 - 6464	양주시 남면 매곡리 410
	청소년복지원 "아들의집"(김광호)	(031) 941 - 8906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205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조희준)	(02) 832 - 5026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29 - 1
	로템청소년학교(김대복)	(043) 651 - 7732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230-1
	해뜨는 마을(박수일)	(031) 534 - 7566	포천시 관인면 종리 615번지
	마자렌로센타(이정숙)(여자전담)	(02) 832 - 5796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253-242
5 호 기 관	백상장 신경정신과의원	(02) 2696 - 1583, (02) 2601 - 1583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 - 572
	동 산 의 원	(02) 744 - 4568	서울 종로구 이화동 197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병원	(02) 2030 - 5400, (02) 2030 - 7121-5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의료원	(031) 828 - 5162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국립서울병원	(02) 2204 - 0122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대덕소년원부속의원	(042) 283 - 0948	대전시 동구 비전길 41
6 · 7 호 기 관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서울 소년원)	(031) 455 - 6111-3	의왕시 고천동 430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	(031) 473 - 3781	안양시 만안구 삼성산길 100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207명)		(02) 530 - 2524	서울가정법원 468호

2. 소년법 환경조사서						
인 적 사 항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동 1192-19.				
	주 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0. ○○아파트 000-000호				
	성 명	김 ○○	성 별	남		
	연 령	만 13세	주민등록번호	940000-0000000		
	직 업	월계중학교 2학년생	연 락 처	010-0000-0000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직업 및 수입	자 산	비고
	부	김○○	68년생			
	모	조○○	70년생			
	동 생	김○○	97년생			
성 장 과 정	성장과정	학력·경력		성격·소행 변화		
	유아기(0~5)					
	아동기(6~13)					
	소년기(14~19)	월계중 2학년 재학				
교 우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주 소		기 타
	박○○	만 14세	학생	시월 양천구 신원동		
세 평						
개전의정유무						
기 타						
2008. 4. 21.						
조사자 : 서울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사법경찰관 경장 ○ ○ ○ (인)						

3. 비행성예측자료표							
인 적 사 항	본 적	서울 양천구 신정동 000-00.					
	주 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780. 00아파트 000-000호					
	직 업	학생	성명	박○○	성별	남	
	생년월일	94. 00. 00.		주민등록번호	940000-0000000		
보호자주소		상 동			성명	이○○	
사 회 향 목 예 측 조 사	조사대상	조 사 내 용			평점	해당표시	
	생계담당자	부 또는 모			0	✓	
		기 타			6		
	가정결손	유			6		
		무			0	✓	
	의무교육	필			0	✓	
		미필(불취학,중퇴)			9		
	장기결석 1주 이상	유			9		
		무			0	✓	
	교우관계	친한 친구들 중에		유	0개	0	✓
		① 직업없이 무위도식 하는 친구 유, 무			1개	5	
		② 경찰에 단속되었던 친구 유, 무			2개	8	
	가출경험	무			0	✓	
		유	2회 이하		3		
3회 이상			8				
조발비행 (14세 미만)	무			0	✓		
	유	우범행위		13			
		촉법행위		16			
종합판정법	항목점수	0-11	비행위험성	낮다	항목점수		
	항목점수	12-20	비행위험성	약간 높다	0		
	항목점수	21-29	비행위험성	높다	평가		
	항목점수	30 이상	비행위험성	아주 높다	낮다		
판정에 따른 처분 의견	구공판				소년부송치		
	구약식				기소유예		
작성 자	직 위	경장		성 명	천00		
검사 확인	성 명			타 당	부 당		

[제3주제]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범의
실제와 그 효과

[발 표]

김 은 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조 준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문제제기

“회복적 사법”은 지난 세기까지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낯선 주제였지만, 2000년대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주제와 맞물리면서 학계와 실무계 모두에서 매우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 이념이 담고 있는 규범적 우위성 때문인지, 그간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법리적 수준에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문제로서 다루어져 온 반면,¹⁾ 견고하고 유효한 실천방법(practice)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

1)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 주제와 관련하여 그간 출간된 논문들을 보면,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를 소개하거나 그 법제화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돈, 2005,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성균관법학 제17권 제1호:405~436,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김성돈, 2008,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페러다임의 실천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5-36, 한국피해자학회; 김용세, 2004,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김용세, 2005, “형사제재시스템과 회복적 사법-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형사제재체계의 개편(이호중)에 관한 의견을 곁하여-”, 형사법연구 제23권: 224~253, 한국형사법학회; 김은경,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제18권제3호, 1159-118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2006,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노성호, 2004, “호주와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사회과학논총,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민영성, 2003,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그 수용가능성”,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영성, 2006,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저스투스 通卷93號, . 8, pp. 164~179, 한국법학원; 박상식, 2004,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모델과 실천 모델”,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상식, 2005,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의 모델”,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박상식, 2006, “회복적 사법-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박상식, 2007,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가능성”, 교정복지연구 제10호:12:109~131, 한국교정복지학회; 배인호, 2007, “선진교정복지와 회복적 사법정의”,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33회 한국교정학회 국제학술발표회, 12: 7~33, 한국교정학회; 양문승, 2003, “매맞는 여성신드롬(BWS)의 피해자화이론과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연구, 한

다. 그 결과, 최근 법원의 “화해권고”나 검찰의 “형사조정제도”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DR)들이 회복적 사법의 추구라는 목표와 연결지워 논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가치에 근거한 유효하고 견고한 실천으로서 작동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최근, 이진국(2008) 교수가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현행 우리의 형사조정제도는 운영목표, 조정대상 및 처리절차 등의 면에서 볼 때, 각국의 형사실무에 정착되어 있는 회복적 사법실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²⁾ 현 시점에서, 과연 “무엇이 회복적 사법이며, 회복적 사법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 소년법은 제25조의 2 “화해권고”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하고, 가해자를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 규정을 통하여 당사자간 자율적 갈등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본 규정이 곧바로 회복적 사법 실천으로 이어지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조정주체가 누구이며, 개시요건 및 진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

국피해자학회; 원혜옥, 2006,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의 방향”,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윤영철, 2007, “형사절차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윤희중, 2004, “소년사법정책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과 지역공동체”,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이진국, 2006,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이진국, 2007,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19卷 第3號(上)9, pp. 359~384, 한국형사법학회; 이진국, 2008,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19권제1호, 5-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창한, 2004, “보호관찰에 있어 회복적 사법 적용가능성 검토”,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이호중, 2004, “회복적 사법 이념과 형사제재체계의 재편-트로이목마의 투입? 값싼 형벌신상품의 개발?”, 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12, pp. 495~516, 한국형사법학회; 이호중, 2007,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9卷 第3號(上)9, pp. 297~338; 이훈동, 2007, “태국에서의 회복적사법”, 외법논집 제28집, 11, pp. 39~64,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차운진, 2005, “경찰의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허경미, 2007,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교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6호 9, pp. 95~118, 한국교정학회; 홍봉선·남상철, 2006, “한국 교정복지 구현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가능성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2) 이진국, 2008,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5-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적 의미의 회복적 사법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만일, 화해를 위한 전문화된 조정인프라가 없이 시행될 경우, “화해권고”는 자칫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가 갖는 함정에 빠지거나, “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개정 소년법의 “화해권고”를 비롯한 다이버전 방안들이 소년보호의 이념과 가치를 보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실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회복적 소년사법 이념이 제시하는 실천모델로부터 “화해권고”에 내재한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처우방안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지난 2년동안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부터 청소년 범죄를 혁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의 실천모델을 개발하고, 그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본 실험연구의 결과를 소개하고, 제시된 쟁점들과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과연 무엇이 회복적 사법이며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성찰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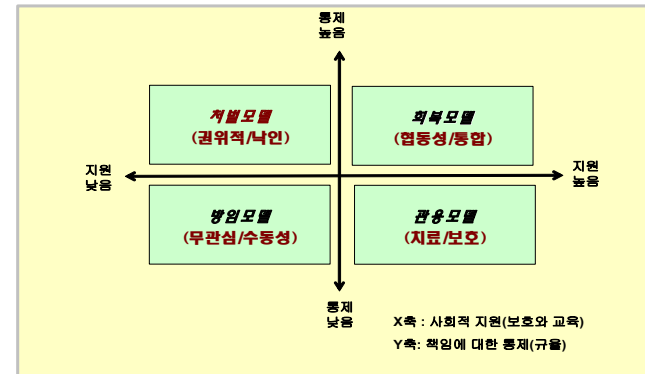
II.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유용성

1. 법 준수의 메카니즘

새로운 대안모색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핵심테마는 “법 준수”를 이끌어내는 데 처벌(punishment)과 통제(control)의 유용성에 관한

것이다. Wachtel and McCold(2001)은 어느 사회에서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행위규제시스템을 그림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³⁾

사회통제시스템의 비교(Wachtel and McCold, 2001)



16

‘처벌모델’은 위반자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보호와 지원의 수준은 낮으며,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수반한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처벌이나 처우는 이러한 규율 방식에 속한다. ‘관용모델’은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두지만 위반자 책임에 대한 규율 정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방식은 위반자에게 부정적 낙인을 주는 정계나 형사처벌과 같은 규제 대신에 선도나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위반자의 책임을 자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한편, ‘방임모델’은 말 그대로 책임에 대한 규율이나 보호와 지원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김은경·이호중, 2006:265).⁴⁾ 한편, ‘회복모델’은 위반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하도록 유도하면서 보호와 지원의 측면에서도 높은 관심을 내포하는 접근법이다.

3) Wachtel, T. and T. McCold, 2001, "Restorative Justice in Every Life: Beyond the Formal Ritual", in H. Strang and J. Braithwaite(eds.), Restorative Justice and Civil Society, Cambridge Univ. Press.

4) 김은경·이호중, 2006, 학교폭력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 실험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실상, 지난 20여 년 간의 소년사법실무를 보면, “교육형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이버전 정책이 검사선의권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와 기묘하게 결합하면서, 소년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관용을 베풀거나 아니면, 형사사법체계로 기소하거나 수용처우로 다루려는 양극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범죄소년의 성행을 교정하고 특별한 필요에 대응한 “환경의 조성” 및 “위기개입과 관리”라는 “보호”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단순히 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다루거나, 아니면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양극단의 이중적 처리시스템이 구조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처리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도록 강제하고 유도하는 모티브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범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책임” 문제를 회피하도록 만들며,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오히려 “체제의 긴장과 두려움”을 해제시켜버림으로써 법 준수의 가치를 부식시켜 버릴 수 있다. 사실상 주요 연구들은 최초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legal sanctions)가 어떠한가는 향후 범죄경력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⁵⁾

2. 사건당사자들의 사법욕구를 통해 본 회복적 사법의 유용성

“회복적 사법”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보면, 이미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사법서비스 욕구조사(김은경·이호중, 2006)⁶⁾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현행 법제도 및 처리관행은 당사자들의 이해와 관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현행 학교 및 사법기관 사건처리경험에 만족했던 수준은 매우 미약했고, 피해자는 신변안전감의 회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결국, 보복위험 및 사건의 종결감을 주지 못하는 현행 사건해결 과정은 피해자를 더욱 위축하게 하고 신고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만을 강화시킬 개연성이 높다. 정작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기존 사법제도에서처럼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도식”에 따른 처벌로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도, 그렇다고 교육기관(학교) 중심으로 소위 “자치”라는 허울(미명)하에 학교장 재량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즉 기존 사법절차나 학교중심절차가 아니라, 학교공동체를 주축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제3의 전문적 개입(조정센터)에 대한 욕구가 보다 강하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건해결 방식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이나 “금전 피해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으로 꼽고 있다. 이것은 바로 “회복적 사법 실천”이 “재통합적 수치심”이라고 이야기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법이자 관계회복적 요소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학교폭력의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와 직접참여의 욕구가 강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사법욕구가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사건의 이해당사자들은 기존의 법제도 절차보다는 보다 역동적이고 관계중심적이며, 사법서비스에 대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원한다는 점이다. 회복적 사법은 처벌적·응보적 소송체계의 비효율성과 적대성 및 피해자 필요에 대한 배려부족 등을 문제삼고, 대립적 소송과정을 통한 강제적 해결책의 ‘부과(imposing)’보다는 당사자들 상호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solving)’과 ‘치유(healing)’를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목표는 ① 범죄로 인한 정신적(감정적)·물질

5) 미국 OJJDP의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를 참조하기 바람.

6) 김은경·이호중, 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적 피해(해악)를 배상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및 그 가족(씨포터)들을 능동적으로 참여시킨 “회복적 갈등해결과정”을 제시하는 것, ②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위반(범죄)사안을 논의하고, 자신들의 의문점에 해답을 얻게 하며, 자신의 감정(느낌)을 표출하고, 나아가 사건의 종결감(sense of closure)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③ 범죄로 인해 야기된 피해(해악)를 다루기 위한 상호수용 가능한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실천의 목표는 학교폭력 등 경미소년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과 교사들이 지닌 사법서비스 욕구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새로운 다이버전 방안으로서 “회합”모델 실험연구 결과

1. 연구 개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부터 청소년 범죄를 혁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은 “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 실천모델을 개발하고, 그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2006년도에는 모의역할극(role play)을 통하여, 한국형 “회합” 절차매뉴얼 및 사례관리지침을 개발함과 동시에 조정자 역량확보에 집중하였고,⁷⁾ 2007년에는 경찰청과의 워크숍(2007. 5. 11)을 실시, 개발된 회합모형을 경미 소년사건에 적용, 다

7)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황지태·노성호, 2006, 회복적 소년사법 조정실무가 실행지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이호중, 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실험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을 참조할 것.

이버전 방안으로서 활용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범운영체계를 구축, 시행하였다. 기간은 2007년 5월 11일~7월 10일(1차 시범운영)과 2007년 7월 14일~10월 13일(2차 시범운영)에 걸쳐 두 차례 실시되었다.⁸⁾ 본 실험연구의 중심적 의제는 회합 실행을 위한 제도적 및 실무적 문제점,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절차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정서적 반응, 대화과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요소들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실험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은 참여적 및 비참여적 관찰방식으로 수행되었고, 설문조사가 병행되었다.⁹⁾

2. 본 실험연구의 회합(Family Conferencing) 모델 개관

가. 회합모델의 적합성

Braithwaite(1989, 2002)는 “재통합적 수치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을 통하여 범죄나 잘못된 행동을 다룸에 있어서 가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얻어지는 재통합 효과에 주목한다.¹⁰⁾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야기된 결과(또는 가해자의 가족에게 야기된 결과)

8) 실험연구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사건초기단계에 접근하는 것이 “회합”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사회에서 ‘합의’를 중시하는 현행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검찰단계까지 진행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심각하거나 또는 감정적인 골이 커서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 측이 회복적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사 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어려운 사례들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험연구이지만 실제사건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역량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요구되었다. 사실상 회합의 성공여부는 일차적으로 조정자의 전문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정적 대립이 심각하게 발전하지 않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조정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9) 본 실험연구의 결과는 김은경 외,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제Ⅱ부 새로운 대응 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10)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Braithwaite, J., 2002, Restorative Justice and Responsive Regulation,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를 놓고 대화하는 것은 수치심을 대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는 구조이다. 가해자와 강한 애착 내지 존경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과정에서 후원하게 되면 수치심을 재통합의 과정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성공적인 것은 경찰이나 판사 혹은 언론이 자극하는 수치심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존경하는 사람의 눈에 비치는 수치심이다(Braithwaite, 2002:74).”

<표 1> 회합모델의 장점

목표대상	장점
가해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과 피해결과를 직접 들음으로써, 잘못을 깨닫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 등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 공식적인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처벌의 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가해소년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유대를 새롭게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가짐. ❖ 자녀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건해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를 만나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보복이나 피해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자신이 겪은 고통과 피해영향을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피해감정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짐. ❖ 장기간·고비용의 민사소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피해자가 관심을 가지는 사항을 직접 이야기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지역사회 (학교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의한 효율적인 조기 개입으로 범죄발생 감소 ❖ 형사사법체계에 과도한 의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감소 ❖ 국가적 개입없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문제해결력 증가

다양한 회복적 사법모델들은 기본적으로는 “회복”이라는 공통의 원리에 기초하면서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맥락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 그러한 차이는 어떠한 사건에 적용할 것인가,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소년인가 성인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회합모델과 서클모델은 공동체주의적 경향을 강한 반면에 조정모델은 보다 더 자유주의적 경향에 근접하다. 기본적으로 회합모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및 가해자 가족성원을 포함하여 조정(mediation) 방법을 이용하는 접근법이므로 가족회합 또는 회합조정으로 불릴 수 있다. 회합모델은 ‘수치심 승인’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 유대관계의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성인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그리고 친밀한 유대관계에 의하여 형성된 학교나 가정,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에 보다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대화중심의 인본주의적 조정(humanistic mediation)

본 회합모델은 기본적으로 “대화중심(dialogue-driven)” 조정을 핵심요소로 한다.¹¹⁾ 회복적 사법의 특성상, 조정과정은 “해결중심(settlement-driven)” 이라기보다는 관계회복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적 갈등해결 형태를 대표한다. “대화중심적 조정(dialogue-driven mediation)” 접근법은 조정자가 의사소통(Communication)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을 통해 발전된 담화의 힘과 대화기술을 이용, 비-지시적 조정과 불간섭의 원칙 하에 문제해결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합의결과에 초점을 둔 중재(Arbitration)¹²⁾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DR)으로서의 조정(mediation)¹³⁾과는 차이가 있다.

11) Umbreit, M. (1996), " A Humanistic Mediation Model: Moving to a higher Plane", VOMA Quarterly 7(3). 참조.

12) “중재”는 양 당사자가 제3자(중재위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후 제3자의 분쟁심판이 진행되며 제3자의 중재판정은 당사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효력을 갖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는 일종의 변형된 사법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중재위원은 보통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가 맡는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대표적인 중재제도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재위원은 언론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게 된다.

13) 일반적 의미에서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제3자의 주선 하에 자율적인 타협의 과정을 통해 화해에 이르는 제도를 지칭한다.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성사되지 않는다. 조정에서 조정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정자 자신이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조정자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구속력을 지니지 않으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김은경·이호중, 2006, 앞의 책: 94-95).

<표 2> 최소 및 최대의 회복적 영향력을 이끌어 내는 조정과정의 핵심적 특징

피해자-가해자 조정 연속체 : 최소로부터 최대의 회복적 영향력에 미치는 요소들	
최소한의 회복 영향력 문제해결적 합의중심 (가해자 중심)	최대의 회복 영향력 인본주의적 대화중심(피해자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 초점은 범죄가 피해자, 지역사회, 그리고 가해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할 아무런 기회없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만 집중된 경우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모이기에 앞서, 서로 분리된 예비조정(만남)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스스로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와 누구를 만날 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전 준비과정 없이, 미리 세팅된 시간의 조정 세션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만이 제시될 경우 ❖ 조정자나 진행자가 위반행위를 설명한 후, 피해자가 단순히 몇 마디 질문하거나 조정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에 대해 가해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 고도로 지시적인 진행스타일로서, 대부분 조정자가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질문하며, 참여한 당사자들 간에 아무런 직접적인 대화가 거의 없는 경우 ❖ 침묵의 순간이나 감정표현을 거의 허용하지 않은 진행과정 ❖ 조정이 피해자에게는 자발적 참여이지만, 가해자는 책임수용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조정이 해결중심적으로 매우 간략하게 (10-15분) 진행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선적 관심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직접 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가 자신의 삶에 미친 전체적인 영향을 표현하고,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동이 실제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 피해배상보다는 범죄의 영향에 대한 대화과정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 피해자가 과정 전반에 걸쳐(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등) 지속적으로 선택권을 갖는 것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모이기에 앞서 각자 분리된 예비조정(준비모임)을 가지는 것; 예비조정에서는 범죄가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듣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본 회합(조정)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비-지시적 진행스타일로서, 대부분 참여당사자들이 이야기하도록 이끌어지며, 조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고, 인본주의적 또는 전환적인 조정모델과 결합되어 있다. ❖ 범죄의 총체적 영향 및 감정을 표현하는데 허용적인 진행과정 ❖ 조정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자발적 참여에 의지할 때 ❖ 훈련된 지역사회 조정자가 사법기관 스태프들과 협력할 때 ❖ 조정이 대화중심적으로 약 한 시간이상 진행될 때

● 출처: Umbreit, M, and J. Greenwood (2000), Guidelines for victim sensitive victim-offender mediation : Restorative Justice through dialogue, Center for Restorative justice & Peacemaking, School of Social Work, Univ. of Minnesota, http://www.ojp.usdoj.gov/ovc/publications/infores/restorative_justice/96517-gdlines_victims-sens/welcome.html.

회복적 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미네소타 대학의 Umreit 교수팀 등이 제언하는 인본주의 회합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Umbreit et al., 2000).

① 사람들은 올바른 환경 하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쟁점을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② 적절한 구조-즉 중립적인 제3자의 진행, 절차화된 가이드라인, 기본규칙 및 의도적인 배석 방안 등-는 권력을 중립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에서조차도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조정자에 의한 특정 담화기술과 전략의 활용은 조정을 위한 대화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창조하는 데 기여한다.

④ “개인적”인 것은 매우 강력하다. 사람들의 개별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공감(empathy), 통찰력 및 교훈 등을 환기시킬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하고, 듣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힘을 북돋고, 치유하며 변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⑤ 조정자의 존재는 비언어적 및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대화과정에서 진술한 대화를 끌어내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⑥ 언제,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 가능하든지 간에, 당사자들에게 선택권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기회가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강화될 수 있다고 느끼도록 한다.

⑦ 조정된 대화가 전환적인(transformative) 경험이 되도록 하는 힘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쟁점과 관심들에 관하여 서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서로 존중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조정자가 물러나 있는 것은 중요하다. 조정자는 자주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⑧ 차이와 갈등은 가능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조정과정은 부분적으로 당사자들이 좀더 안전감을 느끼고 진술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충분히 편안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요구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절될 수 있다.

⑨ 정보, 욕구, 이해관심을 밝히는 것은 협력을 고양시키고,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⑩ 문서화된 합의문은 행동의 변화를 초점화 함으로써 결과를 이끌어낸다. 하지만 합의문 그 자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범죄영향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조정 대화 과정에서는 굳이 문서화된 합의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회합 시범운영 절차 및 핵심 구성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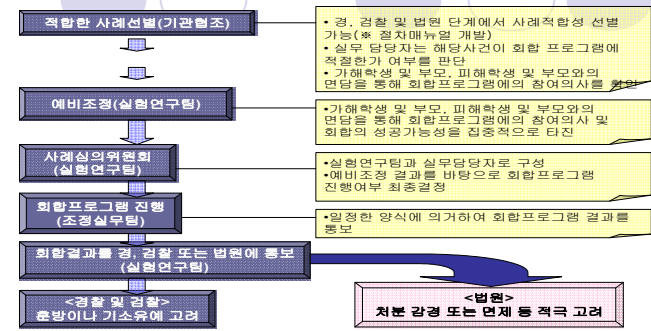
본 회합 시범운영 적용대상사건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폭행 및 상해사건
 - 폭행죄(260㉠), 특수폭행죄(261), 폭행치상죄(262), 상해죄(257)
 - 위 범죄사건으로 폭처법 제2조② 또는 제3조①에 해당하는 사건
- 절도사건
 - 절도죄(329), 특수절도죄(331㉡), 자동차등불법사용죄(331조의2) 및 각 미수범
 -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 및 특수절도죄 중 331㉠은 제외
- 공갈사건
 - 공갈죄(350)
- 재물손괴사건
 - 재물손괴죄(366), 중손괴죄(368, 단, 제366조에 의한 중손괴에 한정), 특수손괴죄(369㉢)

이러한 해당범죄 중 특가법 적용사건은 제외하였으며, 법정형이 금고이하 사건들 중에서 (1) 사건의 사실관계(피해-가해관계)가 명확하고, (2)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며, (3)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회합참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회합 적격사건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가족회합” 시범운영의 진행과정 및 절차를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합(FC)시범운영 진행과정



본 회합 시범운영은 경찰단계에서 회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다이버전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합 프로그램의 성공은 경찰이 독자적인 다이버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건이 상대적으로 중하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범죄소년) 혹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촉법·우범소년)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회합프로그램의 결과를 그대로 기록으로 첨부하여 검사와 법원의 처분에 회합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이를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단계(회부·접수단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우범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가 해명되면, 담당경찰관, 시범운영 경찰서가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해당사건이 회합프로그램에 적절한가 여부를 판단하며, 가해학생 및 부모, 피해학생 및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회합프로그램에의

참여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표 3> 가족회합 시범운영 경찰단계 Check List

통상적인 수사절차 개시		
↓		
회합 적격사건의 선별	Yes	No
1) 가해자(들) 연령이 10~20세 미만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피해자(들) 연령이 10~20세 미만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가해자(들)가 5명이하인 사건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피해자(들)가 5명이하인 사건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폭행, 상해, 절도, 공갈, 재물손괴 사건(특가법 제외) 중 하나에 해당되는가?(※ 적용대상사건 매뉴얼 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범죄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모두 yes인 경우		
피해자측 개별면담 및 회합 안내문 제공	Yes	No
1) 피해자(측)은 수사에서 확인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피해자(측)에게 회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피해자(측)은 회합참여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모두 yes인 경우		
가해자측 개별면담 및 회합 안내문 제공	Yes	No
1) 가해자(측)은 수사에서 확인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가해자(측)에게 회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가해자(측)은 회합참여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모두 yes인 경우		
조정센터에 회합의뢰		
1) 회합 의뢰서 작성 및 당사자 동의서 첨부		
2) 조정센터 사건의뢰 연락처)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929-4846 / 010-*****		
↓		
사건의뢰 후의 조정센터조치		
1) 조정자와 부조정자 선정, 사건배당		
2) 담당조정자는 담당경찰관 방문, 사건설명 청취 후 사건기초조사자료표 작성		
3) 예비조정실시 및 사례심의		
4) 회합일시확정 후 담당경찰관에게 개최장소 협조요청		
5) 회합개최		
6) 회합종결보고서(합의여부 불문) 및 회합합의서(합의에 이른 경우) 경찰 송부		
↓		
회합종결 후의 경찰조치		
1)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통상적 처리지침에 따라 사건처리		
2) 합의사건 송치시, 회합합의서, 회합종결보고서를 송치의견과 함께 첨부자료 송부		

하나라도 NO면
 하나라도 NO면
 하나라도 NO면
 하나라도 NO면

선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은 이에 관한 조사내용과 담당 경찰관으로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선도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선도심의위원회에서 회합프로그램의 적용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범죄행위에 관한 수사기록과 비행예측에 관한 판단자료, 가정환경, 당사자의사 등을 기초로 선도심의위원회(혹은 담당경찰관)는 사건을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하기에 부적합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하도록 한다. 회부여부에 대한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가해소년 및 보호자를 상대로 회합프로그램에의 참여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회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해당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사절차에서 다이버전으로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하는 것은 그 조건이 강제적 성격을 띠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에게도 회합프로그램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아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회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가족과 지역사회(혹은 공동체) 참가자를 중심으로 회합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지 검토하여야 한다. 시범실시과정에서는 현 제도적·문화적 한계를 인정하여 경찰관이 가·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회합을 소개하고, 조정팀을 만나서 더 설명을 듣고자 하면 사건을 의뢰하기로 한다.

② 제2단계 (회합을 위한 준비단계)

회합프로그램은 외부의 전문기관인 갈등해결센터(조정실무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담당 경찰관은 회합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회합의 조정자의 역할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해결센터(조정실무팀)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으면, 우선 예비조정을 통해 가·피해자와 그 보호자에

회합 참여 동의서를 받는다. 그 후 예비조정을 비롯한 회합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 제3단계(본 회합의 실시)



회합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공통의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조정자는 회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지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회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소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행프로그램을 합의하게 될 것이다. 합의는 통상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의 약속,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전문가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지도와 상담을 받는 것, 적절한 수강프로그램에의 참여, 일정

시간동안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합에서 합의에 실패한 경우, 경찰에서는 선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을 검찰(범죄소년) 혹은 법원 소년부(촉법·우범소년)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 제4단계(합의사항의 이행점검 및 사건종료)

회합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그 합의사항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합의사항의 이행은 통상 수 주 내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담당 경찰관은 합의사항을 선도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나 합의사항에 대하여 선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선도심의위원회에서는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합결과를 기초로 훈방 처분할 수 있다. 사건이 중하여 검찰 송치나 법원 소년부 송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합의 진행경과 및 합의내용을 첨부하여 검찰 혹은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한다. 이 때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경찰청 선도심의위원회 혹은 담당 경찰관이 담당한다.

경찰단계	접수단계	준비단계	본 회합	회합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합 안내 참여의사확인 동의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센터로 사건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 및 피해자 최초 전화접촉 개별적 예비 조정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개 및 규정정하기 사건개요 확인 입장나누기 핵심쟁점 및 책임범위 찾기 해결책 찾기 합의안 만들기 회합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서에 결과 보고 경찰은 회합결과에 따라 훈방 또는 송치의견 반영 등 사건 처리

3. 사례별 분석 및 회합결과

13개 경찰서와의 시범실시 기간에 의뢰받은 사건은 총 10건으로, 6건은

회합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었고, 1건은 사안의 부적절성(단순 절도사건으로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간 피해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탄원서까지 작성한 상태)으로 사례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회합불가 결정으로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건은 담당경찰관이 조정팀에게 의뢰했으나 피해자가 동의의사가 없어 연락단계에서 중단되었다. 시범운영기간동안 이루어진 회합의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 회합실시 사건개요

사건의뢰처	기간	예비조정 회수와 시간	피해자 가해자 수	사건 유형	참여 조정자	본 회합시간	합의여부
성동경찰서	8.6~8.23	피해1회: 1시간30분 가해1회: 1시간10분	피해자1, 가해자2	폭력	4명	1시간 30분	○
동작경찰서	7.26~8.21	피해3회: 3, 1, 2시간 가해1회: 2시간	피해자8, 가해자3	폭력, 갈취	3명	4시간	○
영등포경찰서	8.16~9.4	피해1회: 1시간30분 가해1회: 1시간30분	피해자1, 가해자1	절도	3명	2시간 30분	○
방배경찰서	9.19~10.4	피해1회: 2시간 가해1회: 2시간	피해자1, 가해자5	갈취	3명	5시간	○
서부경찰서	10.5~10.15	피해1회: 1시간30분 가해2회: 각1시간30분	피해자1, 가해자2	폭력, 갈취	3명	3시간 30분	○
은평경찰서	10.2~10.26	피해2회: 1.1시간30분 가해1회: 1시간30분	피해자1, 가해자1	폭력	3명	2시간	○ (후견인참여)

가. 성동서 사건

본 사건은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 2명이 2007. 7. 10 15 시경 ○○소계 근린공원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1명)에게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사건이다. 당초 사안이 심각했다기보다는 사건 초기에 학교차원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적 처리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가해자-피해자간 감정적 대립이 악화된 사건으로서, 우리사회에서 학교폭력을 둘러싼 가장 전형적 문제 사례였다. 본 건의 가해자들은 학교 펜싱부 활동을 하고 무에타이를 배우는 등 운동을 잘하고 체격이 좋지만, 평소 맘에 안 드는 친구들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혼내주는 것이 정의롭다는 식으로 폭력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이미 다른 폭력사건으로 불입건 경력이 있고, 학교에서도 징계처분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본 피해자가 자기들을 학생부에 이른 아이를 아는데, 그 예를 알려주지 않고 자꾸 피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끼친 고통과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행동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시정해주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폭력원인을 피해자에게 두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사건과 그로 인한 고통이나 감정적 어려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지닌 상태였다.

한편, 피해학생 부모는 아들이 애들에게서 제물취급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을 생각 때문에 학교 측에 적극적인 문제해결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학교는 이미 할 만큼 했지만, 별 변화없이 강도가 세진 애들이니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경찰신고 암시)”이라고 적극적인 개입을 회피하였다고 한다. 피해소년 부모는 가해자의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얻고자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지만, 정작 가해자와 그 부모들은 “맞을만 하니 맞은 것”, “애들끼리 싸운 것 갖고 뭐 그러냐”, “이런 식(경찰고소)으로 가면 애들이 가만있겠느냐”며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고소 취하만을 요구, 피해자-가해자간에 사건에 대한 인식차이와 감정적 대립이 이미 상당히 컸다.

본 사건은 시범기간 중 첫 번째로 진행된 회합이었다. 경찰과 조정 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부족 등 진행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¹⁴⁾

14) 이번 사건이 사건발생 후 상당 시간이 흘렀고, 법적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의지가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회합이 의뢰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합의 본래 취지인 자발적 참여의지가 충분치 않았다. 회합이 당사자들에게 모두에게 의례적인 절차의 하나로 인식된 경향이

전반적으로 회합의 의미와 장점이 발휘되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은 회합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한 감정들을 상당 부분 표현, 교환할 수 있었고, 나아가 서로의 입장과 원하는 바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합의 과정이 충분한 고민과 구체적 실천내용을 담아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예전의 친구관계로 돌아가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양측의 공감대를 담은 합의까지는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합의내용>

1. 다시는 폭력사태가 없도록 한다.
2.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와 아이들 간의 유대관계를 갖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 구체적으로 차후에 상의해 본다.
3. 서로간의 관계회복을 위해 학생당사자와 보호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전화번호를 서로 교환).
4.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여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폭행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사나 학부모의 도움을 구한다.
5.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만한 조치는 필요하나 과도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

예비조정에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 분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본 회합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사건을 겪으면서 경험한 울분과 괴로움을 가해자 측에서 진심으로 알아주고 사과하길 바라고 있으며, “사과”가 어떤 처벌보다도 강력하게 원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토로하였다. 반면, 가해자 측은 폭력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 강했고 더욱이 법적 절차까지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이 있었지만, 피해자 입장의 이야기를 감정적 가시를 뺀 언어들(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 기

있고,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양측의 요구에 따라 예비조정과 본 회합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 점은 조정자로서 본 회합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구체적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장애가 되었고, 결국 회합에서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 졌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외래적인 합의에 그치게 되었고 회합 후 합의 실천여부가 명확치 못한 회합이 되었다

법)로 다시 들으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감정적 상처를 조금씩 이해, 공감하게 되었고, 특히 가해자들은 “폭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이유여하를 통하여 용인될 수 없다는 점,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었다. 만일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일반적인 사법절차로 처리되었다면,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진심어린 사과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아 내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가해소년들이 스스로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수용하지 못했을 것이며, 가해소년 부모들 역시 점차 폭력성이 강화되는 자녀의 행동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동작성 사건

본 사건은 서울 봉천동 소재 ○○중학교 3학년인 가해학생 3명이 2007년 3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및 인근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8명에게 현금 등을 갈취하고, 2007. 5월말 경에는 피해자 가운데 2명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해자 8명이 학교교사와 상담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사건이었다. 피해자들은 행위자들과 평소에 친구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온 서너 명의 직접 피해자들과 이들 직접피해자들과 친구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온 나머지 간접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관련자들이 많았다. 또 이들 모두가 비슷한 일탈적 행동패턴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경찰신고를 계기로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게 되었다는 소위 우리나라 “학교폭력 현상의 피해-가해 중첩성”이라는 전형성을 보인다.¹⁵⁾ 실제, 본 사건 조정 중에 본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되는 정황이 발생하였다.

15)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가해와 피해자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관련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Singer, 1981; McDermott, 1983; Lauritsen, Sampson & Laub, 1991; 김준호 등, 1997; 노성호 등 1999; 김준호 황지태, 2002; 박순진, 2005).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유사한 생활양식이나 근접성 등의 이유로 인해서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집단이기도하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06년 학교폭력관련자 사법연구조사(김은경·이호중, 2006)에서도, 가해학생들 중 44.3%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 상해, 괴롭힘 및 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본 사건에 대한 회합은 사전에 별도로 진행된 가해자 예비조정(1회)과 피해자 예비조정(3회)을 거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정의 과정을 통해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은 각기 상대의 드러난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스스로 회합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고, 특히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록 잘 몰랐다 하더라도 친구들에게 큰 위해를 가하는 것임을 깨닫고 회합에 임하게 되었다. 본 회합을 통해 가해자는 예비조정 때보다도 현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뉘우치게 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보호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가해자들 자신의 보호자들에게도 미안함을 표현하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과를 수용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내용>

1. 보복이나 돈을 뺏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
 - 김○○1이나 김○○2는 이 자리에서 직접 임○○, 신○○, 모○○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를 한다.
2. 앞으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싶은가에 대해
 -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도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도록 여러 사람 앞에서 김○○1과 김○○2는 약속하고 직접 당사자들에게 다짐해 준다.
 - 헐박, 보복 등의 이유로 김○○1과 김○○2는 임○○, 신○○, 모○○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 재발방지를 위해 김○○1 보호자(유○○)와 김○○2 보호자(황○○), 임○○ 보호자(박○○)는 연락처를 공유하고, 모○○, 신○○는 경찰이나 조정자에게 연락하여 상호문제를 연락하도록 한다.

특히, 본 사건 가해자들의 태도변화가 두드러졌다. 예비조정을 시작할 당시 가해자, 특히 주가해자의 감정 상태는 대단히 고조되어 있었다. 가해자는 행위 당시의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뚜렷한 인식 없이, 친구들과 장난하듯 재미삼아 돈을 빼앗았다고 말하였으며, 서로 장난치며 놀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 금품의 액수까지 부풀려가면서 자신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억울한 감정과 강한 분노를 나타내었다. 특히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과 피해자들이 “너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로 “내등 같이 놀다가 경찰에 꼬발르고”, “내가 만나면 뼈를 갈아 버린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정과정에서 왜 피해자들이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보호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은 “그냥 별 생각없이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한 것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며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장래를 진지하게 짚어보는 과정에서 회합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회합과정에서 합의에 이르고 화해의 행동을 하기까지 되었다. 한편 본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가족 내에서의 관계문제도 부분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었다. 가해소년이 아버지로부터 심한 훈계와 구타는 가해자의 행동이 눈에 띄게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회합 전과정의 기간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간접적으로 등장하면서, 가족간에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등으로 대화의 기회를 가지면서 가해자의 감정도 누그러지고, 문제해결의 의지도 높아지게 된 점이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다. 영등포서 사건

중학교 3학년 학생이자 국가대표 체육선수인 가해자는 친구들과 **병원 주변에 싸움 구경을 갔다가 피해자 외 3명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헐박하여 오토바이를 빼앗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건발생지로 오토바이를 가져오자, 이미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다.

예비조정 및 본 회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행위자는 본 사건에서 단순

히 오토바이를 빼앗고 빼앗긴, 험박하고 험박받은 행위 이상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음을 드러내고 그 문제에 주목하여 해결방법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회합과정에서 가해소년은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영향을 설명하는 가운데, 선배(피해자가 알고 보니 선배였음)를 무시하였다는 사실로 소문이 나서, 주변의 선배들이 그에 대한 응징의 의미로 “선배에게 영기는 놔으로 찍혀서 이형 저 형한테서 문자나 전화가 오고, 싸이에 댓글로 나쁜 놈 나와서 싸우자”, “싸우기 싫고 그런 일에 끼기 싫은데 점점 그런 일이 많아져서 겁나고 걱정된다”는 표현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소년이 치한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분명하게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라는 조언을 하면서, “너하고 문제를 잘 풀었다고 말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네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영향을 설명하는 가운데, 후배에게 당했다는 게 소문이 나서 창피하고, 당시에 겁이 나서 사촌을 부른 것도 “쭈 팔린다”고 하면서, “그때도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소문 때문에 더 자존심이 상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이에 가해소년은 “형하고 잘 지내는 걸 다른 선배들한테 내가 보여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하면서 피해소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비록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인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행위였음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내었다.

<합의내용>

1. 오토바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이 학교에서 합숙하는 조건이므로 오토바이를 멀리할 수 있는 조건이며, 함께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와 멀리하도록 스스로 노력한다.
2. 박○○은 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윤○○은 박○○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고 이후 좋은 선후배 관계를 만들기로 한다.
3. 윤○○이 윤●●에게 박○○와 잘 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박○○을 잘

돌봐준다. 박○○은 윤○○과 잘 따르면서 윤○○에 대한 친구들의 오해가 풀어지도록 도와준다.

4. 피해를 위로하기 위하여 두 소년(윤○○, 박○○)과 부모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풀기로 한다.

본 사건은 어찌 보면 회합이 아니었다면, 각 소년들이 사건으로 겪는 어려움을 상호간에 이해하지 못한 채 적절한 선에서 배상합의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를 보면, 사법적 해결은 또다른 갈등과 문제를 더욱 강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회합과정은 각각의 가족들에게 소년들의 욕망과 그러한 욕망을 잘 다루어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정적 환경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소년시기의 다양한 일탈적 시도가 소년의 성장과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가족간의 대화의 계기로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방배서 사건

본 사건은 서초구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들 5명이 피해자(1명)를 상대로 “형들이 돈을 모아오라고 했다”며 협박하여,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14회에 걸쳐 약 10만원 상당을 갈취한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숨겨오다가, 보호자의 지갑에 손을 대게 되면서 집안에서 문제가 되어 피해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피해자 보호자는 신체도 크고 리더쉽(1학년때 학년대표를 함)도 있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피해를 입을 정도라면 분명히 학교 내에 많은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금품갈취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정자의 판단아래 학교에서 동일 사건을 초기에 상담하고 조사하였던 학생부장 교사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결과적으로 회합과정

에 학생부장의 참여는 학교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나 회합에서 생산된 합의를 지켜 가는데 있어 필요한 모니터링의 한 축으로써의 학교의 역할 찾기 등 매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예비조정을 통하여 행위자 5명 중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3명과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2명을 따로 분리하여 회합을 갖기로 했다.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2명은 회합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결국 회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비록 회합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앞으로의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본인들과 보호자 그리고 학교, 경찰 등 다양한 그룹의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선도의 의미가 있었다. 회합에 참여한 가해 학생 3명은 자신이 과거 행동에 대해 단순히 생각했던 것 보다 일이 더 확대되고 보호자를, 포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자신의 행위와 앞으로의 개선 의지에 대해 진술하고 약속하는 경험이 단순히 경찰에서 조사받고 변명하는 일반적 조사과정보다는 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경찰 조사과정을 겪으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야단을 맞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라는 의식이 생겨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막연한 분노나 억울함이 있었지만, 회합의 자리를 통해 피해자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보호자들도 자신의 자녀를 경찰에 고발한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좋지 않았던 감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사항에 대해 듣고 더욱 더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같은 학교를 보내는 보호자들로서 비슷한 기대와 마음으로 아이들의 학업환경에 대해 함께 염려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나눈 것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교육적 관점에서 범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의 토대를 가졌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행위자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를 약속받는 것이다. 피해자의 경우 개인적 힘으로

는 절대 뒤지지 않지만 선배들과의 연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었고 그 피해가 가정 구성원간의 관계의 어려움으로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행위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은 피해자의 자아회복과 기본적 요구에 대해 인정해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피해자는 회합을 통해서도 여전히 행위자들이 근본적인 개선이 생겨날 거라고는 보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한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은 요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된다. 피해자의 보호자가 본래 의도하였던 행위자들의 진심어린 반성이나 변화를 위한 노력은 회합이라는 한 번의 만남으로 만족할 만큼 한 번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회합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합의내용>

1. 사과

- 김○○, 이○○, 정○○은 10월 1일 월요일에 학교에서 김○○을 각자 따로 만나 사과하도록 한다. 김○○ 어머니이신 이○○께 회합 후 바로 사과를 한다.

2. 변상

- 회합 후 정○○은 김○○에게 빌린 돈 2만원을 바로 배상한다. 9월 중순에 이○○은 김○○에게 빌린 돈 3만5천원을 변상했다. 김○○은 7월 23일(여름 방학식)에 김○○에게 빌린 돈 일 만원을 변상하였다.

3. 관계회복

-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나고 잘 지내도록 노력한다.

4. 재발방지

- 학생들 스스로 서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현황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달에 1회 이상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한다.

- 김○○, 김○○, 이○○, 정○○과 보호자 학부모님들은 10월 17일(수요일) 저녁 5시에 학교 학생부 사무실에서 장○ 선생님과 만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한 학교의 학생부장 교사가 참여한 것을 통해 합의서에 나타나 있듯이, 피해자와 행위자를 비롯하여 그 보호자들이 학교에서 추후 다시 만나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같이 듣고 합의이행 정도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은 서로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데에도 유익했다. 또한 당사자들만 참여했던 다른 회합에 비해 학교차원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들과 학교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회합이 기존의 사법절차보다 좀더 유연한 과정이라고 전제할 때, 어떠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연관된 개인과 기관이 좀더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회합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된 사례로 평가된다.

마. 서부서 사건

본 사건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자 2인이 2007. 10. 2. 15:30분경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피해자(1명)에게 돈 있으면서 주머니와 가방을 뒤지고, 돈이 나오지 않자,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하라며 근처 골목으로 데려가 거의 4시간가량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하자, 근처 PC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던전&파이터 게임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이버 캐쉬 2만원을 자신의 게임에 옮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6학년에 있었던 게임기 압수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서 당시 가해자 게임기를 피해

자에게 빌려주었는데, 이것을 수업시간에 사용하다가 압수당하였으니 피해자가 책임이 있다며 변상을 요구, 게임기 값 변상을 둘러싼 갈등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합에서 피해자 측이 기대한 바는 가해소년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명확하게 알게 할 것,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두 가지였던 반면, 가해소년 부모의 경우 자녀행동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당사자끼리 직접 해결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회합과정에서 가해자1은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자의 진술을 들음으로써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회합을 종료하면서 가해자1은 피해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가해자2와 그 보호자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 주 가해자였던 자신의 행동으로 가해자2와 그 가족에게 미친 영향까지를 이해하여 자신의 행위가 미친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경우, 예비조정 과정에서 행위자에 대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던 것에서 회합을 거치면서 앞으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지내자”라고 관계에 대한 의지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합 후 설문에서도 향후 행위자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회합을 가지는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이후 관계의 두려움 -보복-은 해소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손상을 회복하는데 회합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사건에서 주 가해자1은 한 부모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예비조정을 따로 하지 못했고, 회합 당일 조금 일찍 만나 회합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으나 병환과 아들에 대한 분노 감정(이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그날 아들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이유)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회합에도 참여했지만 병환 등으

로 인한 소극적 태도(결국 중간에 병환을 이유로 양해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가해자2의 보호자가 대신 그 역할까지 수행하여, 어렵지만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주가해자가 처한 열악한 가정환경-몸이 아프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편부 가정-를 이해, “회합이 잘 이루어져 아이가 학교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해자의 미래를 염려하기도 하였다.

<합의내용>

1. 우리는 위 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 나○○는 게임 아이디와 비번의 상태를 확인하고 10월 12일까지 정상상태로 원상복구하고 게임머니 2만원도 현금으로 돌려준다.
 - 엑스레이 비용은 10월 8일 오늘 김○○ 학생의 어머니 이○○씨가 지급하도록 한다.
 - 김○○에게 나○○와 김○○은 따로 만나 오늘 회합이 끝나기 전에 사과하도록 한다.
 - 김○○, 나○○, 김○○의 보호자가 10월 12일 금요일에 따로 만나 재발방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 연락을 통해서 정한다.
2. 우리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 2.1. 이 합의문의 약정내용은 2007년 10월 12일까지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 2.2. 이 합의문의 약정내용의 이행여부와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위 행위자와 피해자 등 당사자는 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10월 19일(금) 이내에 연락을 취한다.
 - 2.3. 이 합의문에 따른 약정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기 사건의 위반(범죄)행위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바. 은평서 사건

본 사건은 가해자(고등학교 1년 중퇴, 현재 2종격투기 훈련 중)가 2007. 9. 17 20:30경 은평구 소재 ○○놀이터에서 피해자(15세)가 지난 5월경에 자기

에게 욕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가슴, 배, 옆구리 등을 수 십 차례 때려 오른팔과 배부위에 상처가 생기로 누굴에 고통을 호소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와는 전혀 안면이 없고, 사건배경은 지난 5월경 피해자가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를 발견하고 친구를 붙렸는데, 그것에 대해 가해자는 자신을 놀리기 위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다. 본 회합을 통해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측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과를 수용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당시 자신을 폭행한 행위자에 대한 두려움과 당황함에 대해 표현하였고 폭행의 배경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가해자를 비난한 것으로 오해하고 폭행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회합 이후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시는 겁도 나고, 다시 만나는 것도 걱정스러웠는데, 예비조정 과정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조금 덜었고, 회합을 하고 나니,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을 갖지 않게 되었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회합과정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폭행에 대해 진심으로 거듭 사과함에 따라 피해자가 행위자를 보기를 꺼려하던 태도에 변화가 생겨 서로 만나서 편안히 볼 수 있는 관계를 원하였다.

한편, 피해소년 보호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대한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였으나 회복되고 있어 다행임을 밝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건강한 청소년으로 다시 거듭나서 학습에 매진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해소년의 열악하고 어려운 가정환경(부모의 이혼과 방임, 부모와의 대화단절 상태)과 격투기를 일종의 분노표출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재 상황(학교중퇴)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표현하면서, 중요한 청소년기에 자신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변화된 삶을 살아주

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고 더욱 따뜻한 이해심으로 가해자를 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기에 회합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보호자가 매우 적극적이어서 부모가 모두 참석한 데 반해, 가해소년 아버지는 생업을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고 의사표현을 하여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원이 가해소년의 후견인으로 참여하였다. 회합 전 후견인과 만남을 통해 가해자는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면서도 감정과 자신에 대해서는 지지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회합에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사람이 후견인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측 보호자의 회합 참여의지나 동기가 물질적 배상보다는 회합 자체의 의미, 즉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손상을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오히려 회합이 자신의 자녀에게도 범죄의 영향을 명확히 알게 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미리 피해자 보호자로부터 가족으로서 보호자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그래도 괜찮겠는지 양해를 구해 이전 특별한 관련이 없는 성인이 가해자의 후견인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후견인은 회합에서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행위자가 사과 등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이후 합의사항 “11월 15일까지 편○○ 후견인, 편○○, 박○○ 3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상호 관계 개선을 논의한다.”에 따라 후견인과 행위자, 피해자가 10월 24일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행위자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지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후견인과 좀더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합의내용>

1. 우리는 위 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 1.1 회합 후 당사자가 대화의 시간을 갖고, 편○○은 사과를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1.2 치료비는 편○○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1.3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 대화 시간에 책임 있는 행동을 약속한다.
- 1.4 11월 15일까지 편○○ 후견인, 편○○, 박○○ 3자가 식사를 하고 상호 관계개선을 논의한다.
2. 우리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 2.1 이 합의문의 약정내용은 2007년 11월 15일까지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 2.2 이 합의문의 약정내용의 이행여부와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위 행위자와 피해자 등 당사자는 조정자(혹은 위탁기관)와(과) 주 이내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 2.3 이 합의문에 따른 약정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기 사건의 위반(범죄)행위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4. 회합의 효과성 평가

가.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려는 프로그램의 가치와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범죄학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아니라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¹⁶⁾ 물론 ‘성과’의 측정 방법은 최근 새로운 범죄학적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¹⁷⁾ 실제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아무런 합의는 없다.¹⁸⁾ 하지만, 전통적 범죄정책의 주요한 평가요소였던 “재범율(recidivism)”

16)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평가연구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도적 도입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칙에 근거한 견고한 실천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17)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입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평가연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제된 실험실 상황이 가장 적합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프로그램(정책)은 연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세계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18)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김지선(2006),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은 정확한 기준도 유일한 측정방법도 아니라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오히려, 많은 연구자들은 회복적 사법이념(즉, 손상된 관계의 회복)에 비추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족도’, ‘피해배상 및 회복활동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의 질’ 등과 같은 질적 평가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McCold, 2003; Umbreit, Coates and Vos, 2002; Elliott and Gordon, 2005).

여기에서는 2006년도에 조사된 학교폭력관련 당사자들(피해소년과 부모, 가해소년과 부모)에 대한 사법욕구조사 결과¹⁹⁾중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한 동일한 설문문항들을 추출하여, 두 집단(①공식적 사법절차집단, ②회합참여집단)의 경험과 느낌, 처리결과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회합의 효과성을 잠정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2006년 설문조사와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한 설문조사는 제한된 독립적인 표본이지만,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 및 공정성 인식, 감정적 해소 및 관계회복 등에 대한 공통적인 설문문항을 담고 있다.

분석대상은 다음의 <표 5>과 같다. 2006년 조사대상은 지난 몇 년동안 학교폭력사건을 경험한 피해자-가해자들로서, 피해자조사는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및 학교폭력치유대안학교로서 새롭게 창립된 [성장학교별] 관계자의 도움을 통하여, 회원들 및 학생들에게 조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소년과 그 부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가해자조사는 수도권 8개 보호관찰소의 조사협조를 얻어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 중에서 학교폭력가해경험이 있는 학생 및 그 부모에 대해서 보호관찰 개시교육을 이용하여 설문참여에 동의를 구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006년 조사대상은 당초 피해소년과 부모 각 50명, 가해소년 138명과 그 부모 128명으로 총 366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학교폭력사건”으로 사법 처우되지 않은 소년들 및 불성실 응답자들을 제외하면, 사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5-38을 참조하기 바람.

19) 김은경·이호중(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 실험연구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람.

법절차경험집단은 총 184명만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2007년 6차례의 회합에 참여한 사람들 중 설문지에 성실하게 응해준 총 36명이 회합참여집단의 분석대상자로 설정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이 된 피-가해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조사대상 접근경로에 따른 차이 때문에 집단특성은 다소 큰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회합참여집단은 사법처우집단보다 피해자(소년과 부모)의 구성비가 더 높다. 여기에서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성별 구성면에 있어서 회합참여집단 소년들은 남자로만 구성된 반면, 사법처우집단에는 소녀들이 약 25%내외로 구성되었다. 연령 면에서도 회합참여집단 소년들에 비해 사법처우집단소년들의 연령이 더 높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면서, 결과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5> 사법절차참여집단과 회합참여집단간 응답자 유형

응답범주	사법절차집단(2006년도조사)	회합참여집단(2007년도조사)	전 체
피해소년	12(6.5)	8(22.2)	20(9.1)
피해부모	14(7.6)	8(22.2)	22(10.0)
가해소년	84(45.7)	10(27.8)	94(42.7)
가해부모	74(40.2)	10(27.8)	84(38.2)
소 계	184(100.0)	36(100.0)	220(100.0)

나. 사건처리과정 경험에 대한 평가

1) 처리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 및 만족도 평가

먼저, 각 집단별로 사건이 다루어지는 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경험과 느낌을 하였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가지고 “회합”의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6년 사법욕구조사에 사용된 설문문항들 중 2007년 회합 평가 설문문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들을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

의 <표 6>과 같다.

사건처리과정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를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법절차를 접촉했던 경험이 있는 집단은 부정적인 응답율(“전혀 아니다”와 “별로 아니다”를 더한 응답율은 전체의 42.2%)이 긍정적 응답율(“대체로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를 더한 응답율 22.8%)보다 높은 데 반해, 회합참여집단은 부정적 응답율은 2.8%에 불과하고, 긍정적인 응답율이 88.8%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각 집단별 평균을 보면, 경험차이는 보다 뚜렷하다.²⁰⁾ 사법절차집단의 응답평균은 2.72로 다소 부정적 응답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회합참여집단의 경우에는 4.30으로서 참여자들 대부분은 “처리과정의 모든 면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를 가졌다”고 느꼈다. “사건담당자(사법절차집단의 경우엔 경찰, 회합참여집단의 경우엔 조정자)가 나와 상대방을 공정하게 대우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사법절차집단의 경우 21.6%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전체평균은 2.58로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회합참여집단의 경우 전체의 91.7%가 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응답(평균 4.53)하여, 대부분 절차과정에서 공정함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집단의 사건처리담당자에 대한 느낌은 다른 질문을 통해서도 동일한 패턴을 나타낸다. 우선 사법절차집단에게 “사건처리 과정동안 경찰을 신뢰할 수 있었는가”, “경찰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애썼는가”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사법절차를 경험한 집단의 약 25~30%만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었고, 경찰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애썼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질문에 대한 응답평균은 각기 2.70, 2.84로 다소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회합참여집단의 경우에는 “조정자가 자신의 요구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피해자-가해자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방식에 만족하는가”라는 두 질문에 대해서, 회합참여자들의 약 90%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

20) 응답분포는 1-5점사이로 중간값 3점을 중심으로 이보다 적으면 부정적 응답율이 3보다 크면 긍정적 응답율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며, 응답평균은 각기 4.44, 4.03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6> 회합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간 처리과정 경험에 대한 평가

구 분	응답범주	사법절차집단 (2006조사)	회합참여집단 (2007조사)	전 체	유의도
모든 면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를 가졌다	전혀 아니다	26(14.4)	-	26(12.0)	$\chi^2=66.26$ $p<.001$
	별로 아니다	50(27.8)	1(2.8)	51(23.6)	
	그저 그렇다	63(35.0)	3(8.3)	66(30.6)	
대체로 그렇다	30(16.7)	16(44.4)	46(21.3)		
매우 그렇다	11(6.1)	16(44.4)	27(12.5)		
	소 계	180(100.0)	36(100.0)	216(100.0)	
	평 균	2.72	4.30		
경찰(※조정자)은 나와 상대방을 공정하게 대우하였다	전혀 아니다	37(20.4)	-	37(17.1)	$\chi^2=86.39$ $p<.001$
	별로 아니다	51(28.2)	-	51(23.5)	
	그저 그렇다	54(29.8)	3(8.3)	57(26.3)	
대체로 그렇다	28(15.5)	11(30.6)	39(18.0)		
매우 그렇다	11(6.1)	22(61.1)	33(15.2)		
	소 계	181(100.0)	36(100.0)	217(100.0)	
	평 균	2.58	4.53		
사건처리 과정동안 나는 경찰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 (2006조사항목)	전혀 아니다	34(19.0)	-	34(15.8)	$\chi^2=76.36$ $p<.001$
	별로 아니다	40(22.3)	-	40(18.6)	
	그저 그렇다	61(34.1)	3(8.3)	64(29.8)	
대체로 그렇다	34(19.0)	14(38.9)	48(22.3)		
매우 그렇다	10(5.6)	19(52.8)	29(22.3)		
	소 계	179(100.0)	36(100.0)	215(100.0)	
	평 균	2.70	4.44		
경찰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애썼다 (2006조사항목)	전혀 아니다	25(13.9)	-	25(11.6)	$\chi^2=35.02$ $p<.001$
	별로 아니다	46(25.6)	2(5.6)	48(22.2)	
	그저 그렇다	55(30.6)	5(13.9)	60(27.8)	
대체로 그렇다	41(22.8)	19(52.8)	60(27.8)		
매우 그렇다	13(7.2)	10(27.8)	23(10.6)		
	소 계	180(100.0)	36(100.0)	216(100.0)	
	평 균	2.84	4.03		
내 입장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기회를 가졌다	전혀 아니다	23(13.0)	-	23(10.8)	$\chi^2=51.57$ $p<.001$
	별로 아니다	37(20.9)	-	37(17.4)	
	그저 그렇다	65(36.7)	7(19.4)	72(33.8)	
대체로 그렇다	45(25.4)	16(44.4)	61(28.6)		
매우 그렇다	7(4.0)	13(36.1)	20(9.4)		
	소 계	177(100.0)	36(100.0)	213(100.0)	
	평 균	2.86	4.17		

이에 비해 회합참여집단은 전체의 80.5%가 자기표현욕구를 충족하였다고 긍정적인 응답(집단평균 4.17)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회합과정’은 사건처리과정의 공정성 인식 및 자기표현욕구 경험에 있어서 기존의 공식적인 처리절차보다는 사건당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처리결과의 만족도 평가

처리결과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사법절차집단에게는 “사법절차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로, 회합참여집단에게는 “회합과정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로 질문하였다. 각각의 응답평균은 2.87과 4.06으로서, 사법절차집단은 경우에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는 25.4%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기울어있는 반면, 회합참여집단의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 76.1%가 만족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7> 회합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간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

구 분	응답범주	사법절차집단 (2006조사)	회합참여집단 (2007조사)	전체	유의도
사법절차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2006조사항목)	전혀 아니다	22(12.4)	-	22(10.3)	χ ² =55.53 p<.001
	별로 아니다	29(16.4)	-	29(13.6)	
	그저 그렇다	81(45.8)	5(13.9)	86(40.4)	
	대체로 그렇다	40(22.6)	22(61.1)	62(29.1)	
	매우 그렇다	5(2.8)	9(25.0)	14(6.6)	
	소 계	177(100.0)	36(100.0)	213(100.0)	
	평균	2.87	4.06		
사건처리과정은 폭력사건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오해, 수치심, 분노)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전혀 아니다	17(9.7)	-	17(8.1)	χ ² =43.42 p<.001
	별로 아니다	31(17.7)	-	31(14.7)	
	그저 그렇다	81(46.3)	8(22.2)	89(42.2)	
	대체로 그렇다	39(22.3)	18(50.0)	57(27.0)	
	매우 그렇다	7(4.0)	10(27.8)	17(8.1)	
	소 계	175(100.0)	36(100.0)	211(100.0)	
	평균	2.93	4.06		

“처리과정이 사건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오해, 수치심, 분노)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법절차집단의 26.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고 집단평균은 2.93으로 중립인 3보다 다소 부정적으로 기울어있는 반면, 회합참여집단의 77.8%가 그렇다고 응답(집단평균 4.06)하여, “회합”이 공식적인 사법절차보다는 감정적 회복과 치유에 훨씬 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회합참여집단에게만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공식적 소송보다는 본 회합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싶은가?”라고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가 23명(63.9%),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자는 11명(30.6%)으로서 거의 대부분(94.5%)이 회합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집단평균 4.53)를 나타내었다.

다. 사건종결후 참여자들의 감정변화

<표 8>에서는 사법절차 또는 회합과정을 통한 사건처리 경험전과 후의 정서상태가 각 집단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먼저 상대자(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줄었는지 혹은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법절차집단은 대체로 변화없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약간 또는 많이 낮아졌다 비율이 32.8%, 오히려 약간 또는 많이 증가했다는 경우는 28.8%로서, 세 유형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집단평균 2.90으로 사법절차경험이후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회합참여집단의 경우 변화없거나 약간 증가하였다는 율은 각기 5.6%에 불과한 반면, 절대 다수인 88.9%가 분노감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여, 회합경험이 화해와 용서를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경찰에 대한 신뢰감과 존경심 변화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에 다소 방

향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법절차집단의 경우 사건처리경험이후 경찰에 대한 신뢰감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경우는 43.5%, 오히려 신뢰감이 낮아졌다는 경우 35.3%, 신뢰감이 증가했다는 경우 21.2%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집단평균은 2.76으로 다소 낮아졌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반면, 회합참여집단의 경우는 변화없음(27.8%)이나 낮아졌다(5.6%)는 응답보다는 신뢰감이 증가하였다는 응답(66.6%)이 다수를 차지하여, 비공식적인 조기다이버전으로서 회합경험이 사법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 변화에 있어서도 앞서 경찰신뢰감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간에 방향성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법절차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 다수인 약 60%가 변화가 없다고 하였지만 집단평균은 2.82로서 다소 대인신뢰감이 낮아지는 쪽으로 정서변화를 나타낸 반면, 회합참여집단의 경우엔 변화없거나(32.4%) 낮아진 경우(5.7%)보다는 과반수인 62.9%가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 증진이라는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4) 그러면, 회합경험이 과연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감 향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는 이 경우에도 회합이 기존 사법절차보다는 매우 긍정적인 정서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법절차집단의 응답평균은 2.96으로 다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회합참여집단의 응답평균은 3.67로서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감이 더 향상되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5) 자존감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사법절차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 과반수인 57%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였지만,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31.3%로 자존감 회복을 경험했다는 비율 11.5%보다 많아서, 전반적으로는 다소 자존감 상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회합경험집단의 경우 응답평균이 3.34로서 자존감 증가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회합을 통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는 응답율은 45.7%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경험을 나타내어 큰 대조를 이루었다.

<표 8> 사건종결후 회합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간 감정변화 정도

사건처리과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응답범주	사법절차집단 (2006조사)	회합참여집단 (2007조사)	전 체	유의도
피해자(또가해자)에게 대한 분노감이 줄어들었습니까 오히려 증가하였습니까?	많이 낮아짐	36(19.7)	27(75.0)	63(28.8)	$\chi^2=48.78$ $p<.001$
	약간 낮아짐	24(13.1)	5(13.9)	29(13.2)	
	변화 없음	70(38.3)	2(5.6)	72(32.9)	
	약간 증가함	29(15.8)	2(5.6)	31(14.2)	
	많이 증가함	24(13.1)	-	24(11.0)	
	소 계	183(100.0)	36(100.0)	219(100.0)	
	평균	2.90	1.14		
경찰에 대한 신뢰감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많이 낮아짐	31(16.8)	1(5.6)	32(15.8)	$\chi^2=22.32$ $p<.001$
	약간 낮아짐	34(18.5)	-	34(16.8)	
	변화 없음	80(43.5)	5(27.8)	85(42.1)	
	약간 증가함	27(14.7)	6(33.3)	33(16.3)	
	많이 증가함	12(6.5)	6(33.3)	18(8.9)	
	소 계	184(100.0)	18(100.0)	202(100.0)	
	평균	2.76	3.39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많이 낮아짐	18(9.9)	-	18(8.3)	$\chi^2=44.30$ $p<.001$
	약간 낮아짐	27(14.8)	2(5.7)	29(13.4)	
	변화 없음	109(59.9)	11(31.4)	120(55.3)	
	약간 증가함	24(13.2)	14(40.0)	38(17.5)	
	많이 증가함	4(2.2)	8(22.9)	12(5.5)	
	소 계	182(100.0)	35(100.0)	217(100.0)	
	평균	2.82	3.80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감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많이 낮아짐	17(9.3)	1(5.6)	18(9.0)	$\chi^2=15.19$ $p<.01$
	약간 낮아짐	23(12.6)	1(5.6)	24(12.0)	
	변화 없음	100(54.9)	5(27.8)	105(52.5)	
	약간 증가함	34(18.7)	7(38.9)	41(20.5)	
	많이 증가함	8(4.4)	4(22.2)	12(6.0)	
	소 계	183(100.0)	18(100.0)	200(100.0)	
	평균	2.96	3.67		
자존심에 더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소 회복되었습니까?	많이 낮아짐	21(11.5)	3(8.6)	24(11.1)	$\chi^2=25.59$ $p<.001$
	약간 낮아짐	36(19.8)	2(5.7)	38(17.5)	
	변화 없음	104(57.1)	14(40.0)	118(54.4)	
	약간 증가함	17(9.3)	12(34.3)	29(13.4)	
	많이 증가함	4(2.2)	4(11.4)	8(3.7)	
	소 계	182(100.0)	35(100.0)	217(100.0)	
	평균	2.71	3.34		
당신(자녀)을 비난하는 사람들(또가해자)에게 퇴각(보복)을 하고 싶다는 감정이 누그러졌습니까 오히려 더 증가하였습니까?	많이 낮아짐	30(16.3)	21(60.0)	51(23.3)	$\chi^2=32.65$ $p<.001$
	약간 낮아짐	26(14.1)	3(8.6)	29(13.2)	
	변화 없음	92(50.0)	10(28.6)	102(46.6)	
	약간 증가함	24(13.0)	1(2.9)	25(11.4)	
	많이 증가함	12(6.5)	-	12(5.5)	
	소 계	184(100.0)	35(100.0)	219(100.0)	
	평균	2.79	1.74		

(6) 마지막으로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대한 되갚음(보복)감정에 있어서, 사법절차참여집단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경우는 50%로 가장 많고, 낮아졌다는 경우가 30.4%, 그리고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경우는 18.5%로서 응답평균은 2.79로 다소 보복감정이 누그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합참여집단의 경우 응답평균은 1.74로서 그 하락폭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회합”이 피해자-가해자간 감정적 해소와 정서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회합참여집단에게, 사건종결이후 회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자들은 변화없다(25.0%)거나 약간 낮아졌다(8.3%)는 응답보다는 대다수인 약 67%가 회합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어서, 당사자들의 사법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서구의 경우 회복적 사법실천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주요 연구들은 사법과정에 대한 만족도, 공정성, 피해배상, 재범율, 그리고 사법비용 등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실천이 공식적 사법절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록 매우 제한된 표본과 방법론에 의거한 것이지만 본 분석결과 역시, 인본주의적 조정원칙에 따른 “회합”은 피해자관여 및 회복경험을 증대시키고, 가해자에게 책임수용을 보다 강화시키고, 범위반에 대한 공정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잠정 평가된다.

IV. 회합 실험연구를 통해서 본 쟁점과 과제

1.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을 위한 법적 토대의 마련

가. 소년법의 입법목표 및 원칙의 명확화

사실상 현행 법 하에서도 ‘전환처우(diversion)’이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개입이 가능하다. 가령,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이전단계에서는 경찰 또는 검찰이 적절한 대상사건을 회복적 프로그램에 위탁할 수 있고, 사건이 법원이나 소년부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판사가 직권 또는 검사청구에 의해 회복적 조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 입법 하에서의 조치들은 분명한 회복적 관심과 원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형사법적 목표에 따라 그 가치가 왜곡되거나 잠식될 개연성이 있다(Umbreit, 1998; Tenczek, 2003).²¹⁾ 회복적 소년사법의 유효한 실행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로, 소년법에 “균형적·회복적 사법”의 관점과 원칙을 결합한 입법목적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범규정하에서 “재량적 다이버전”의 형태로 시행되는 회복적 실천은 내재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높다(Umbreit, 1998; Tenczek, 2003; 이호중, 2004)²²⁾. 왜냐하면, ‘화해’나 ‘중재’의 해결책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형사실무적 필요나 처벌의 기능에 종속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소년입법의 원칙과 가치 우선

21) Umbreit, M. ,1998, "Avoiding the marginalization and 'McDonaldization' of victim-offender mediation : A Case study in moving toward the mainstream". In G. Basemore & L. Walgrave (eds.),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Tenczek, 2003, "Within or Outside the System? Restorative Justice Attempts and the penal System", in : Weiterkamp/Kerner (eds.), *Restorative Justice in Context*, pp.272-281.

22) 이호중(2004),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형사체계체계의 재편", 형사법연구9(한국형사법학회), 제23호.

23)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사법체계와는 다른 '제3의 길'로 제시된다. 이론적으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조정, 회합)은 전통적 처벌목적 및 제재의 수직적 체계와는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은 관련 당사

성을 분명히 하고, 회복적 사법실행을 위한 이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본격적인 소년법의 패러다임 전환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그 방향은 형사사법기관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회복적 사법에 사건을 넘기도록 하는 “의무적 다이버전”의 형태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호중, 2004). 즉, 사법절차로 진행되기에 앞서, 가해소년이 자신의 위법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회복적 사법절차 참여에 자발적 동의할 경우에는 공식절차에 우선하여 회복적 절차를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다이버전이 가능한 소년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사법전문가의 의견조사결과(김은경 외, 2007)에서도, 대부분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다이버전의 하나로써 소년사법제도에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고, 도입단계와 관련해서도 법원단계, 검찰단계, 경찰단계, 교정단계의 순으로 각 단계별로 도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²⁴⁾ 다이버전 개시요건으로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율이 가장 높은 반면, “처분결정이전 담당자의 재량권으로” 또는 “처분결정 또는 명령 등 중극처분의 하나로”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개정 소년법상 “화해권고”라는 형태로만 개시하도록 한 것은 재고를 요한다.

나. 경찰단계 다이버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회합 프로그램과의 결합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의 효과성이 가장 큰 단계는 공식

자들에 의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갈등해결을 모색할 여지를 남겨두고, 피해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배상이나 처벌을 넘어선다. '갈등의 조정'과 '처벌(처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조정이나 회합은 단순한 처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법률 원칙 즉 법률하에서 평화의 회복을 이룬다는 자체특성을 지닌다.

24) 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김성연, 원혜옥, 이호중,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제Ⅲ부 대안의 모색, 제6장의 조사결과를 참조하기 바람.

사법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경찰단계로 밝혀지고 있다. 각국의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도 경찰단계 다이버전과 결합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학교폭력의 갈등구조가 심화된 검찰 단계보다는 초기 경찰단계에서 소년범의 사회재통합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재범율의 감소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회합 시범운영을 통해서 볼 때도,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 문제해결 및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다이버전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서 이송되기 이전에 지구대에서 흔히 중용되는 비공식적인 당사자간 합의방식이 아니라, 훈련 받은 조정자에 의해 진행되는 회합프로그램이 경찰단계 개입형 다이버전 제도로서 제공됨으로써, 당사자간의 감정의 증폭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경찰의 다이버전과 결합하여 실시한다면 범행 초기단계에 부정적 낙인을 최소화하면서 소년범죄자의 재통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다이버전은 사건발생 직후 효과적인 개입을 통하여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건처리의 지연과 부정적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실시 기간동안, 회합 시범운영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법 제도상의 한계 때문이었다. (1) 현행법상 경찰에게 조건부 훈방권(다이버전 권한)이 없고 '전권송치주의'라는 법제도상의 한계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시범운영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시간적·실무적 문제가 있었고, (2) 경찰단계 사건종결권이 없는 한계로 인해서 합의가 되더라도 송치되기 때문에, 특히 가해자가 회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동기가 매우 미약하다. 그 결과 회합에 적극적으로 참여, 진지한 사과를 통하여 화해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들에 대해서 회합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 초기개입과 종결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준거와 사건위탁 범위와 기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⁵⁾ 일단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청 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회합프로그램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년법과 피해학생, 부모의 만남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소년법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록, 비행예측에 대한 판단자료,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회합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경찰은 단지 사실관계와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만을 확인할 뿐 회합여부에 대한 결정은 협의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합의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법률적 사항에 대한 조언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만을 할 뿐이다. 회합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되면 지역사회의 조정전문센터를 활용하여 회합에 들어가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 재발방지약속, 외부전문가와 연계한 상담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경찰은 훈방처분을 하게 된다.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을 다음 단계인 검사에게로 송치한다(촉범소년의 경우에는 법원으로 직접 이송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 회복적 사법 실행을 위한 관련 법률들의 개정방향

무엇보다도 다이버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법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관료제적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사회위원을 활용 즉각적으로 개입, 소년 범죄자에게 내재하는 문제들을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25) 대검찰청의 '자진신고 학생 등 가해학생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검·경간 학교폭력에 대한 협력적 대응경험은 향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활용과 연계하여 경찰단계에서 독자적인 다이버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좋은 계기로 볼 수 있다. 위 지침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불입건 훈방의 기준으로 "①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진신고 청소년으로(부모, 교사, 친구 신고도 포함) ② 전회처분(전과, 보호처분)이 없으며 ③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인적 피해진단 3주 이하이고 ④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이 독자적으로 다이버전 권한을 갖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법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함께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회복적 사법실행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간의 연결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들이 새롭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와 2007년 개정 입법 예고된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규정을 내실있게 구성·제도화함으로써, 사법기관에 의한 “위탁(referral)”신청²⁶⁾을 통하여 사법외적 제재(Extra-judicial Sanctions) 및 화해권고 등의 실질적 시행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사회중심 개입전략 및 민간참여 인프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법]은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사법기관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 관련복지기관 “위탁” 규정을 통해, 회복적 사법실천의 법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2. 유효한 실천 원칙 : 인본주의적 조정원칙 및 기술의 중요성

우리사회에는 회복적 사법실천을 둘러싸고 몇 가지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① 가장 큰 우려와 비판은 회복적 사법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D. Loche(2004)는 “변호인도 없이, 결과에 대한 어떤 예상도 없이 비공식절차에 의존하는 회복적 사법에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는 회복적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 경고하면서, 회복적 프로

26) “위탁(referral)”이란 사법기관이 소년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캐나다 소년사법(YCJA) 제6조 제1항 사법경찰은 청소년을 사법처리하는 대신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사회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된다. 위탁은 오락프로그램, 상담기관, 아동복지기관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찰조사단계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강제된 위탁동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을 이용하기 전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그 과정에 변호인 선임권 및 변호인과 접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램에 절차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⁷⁾ ② 회복적 사법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합의”라는 비공식적 문제해결방법이 그다지 정의로운 것으로 경험되지 않았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상 법조실무에서 법률상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체계적으로 재생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③ 회복적 사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가 주인공인 사이코드라마의 소품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²⁸⁾ 이처럼, 회복적 사법이 처한 큰 도전은 피해자 욕구와 가해자 욕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어느 프로그램이 단지 피해자의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가해자의 욕구는 무시되고 그의 제범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 때문에, 조정이 즉각적인 문제 해결중심(settlement-driven)으로 시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적 경험과 영향력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며, 앞서의 우려와 비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실무방법 및 실행체계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한다. 현재 2006년부터 형사사법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는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형사조정위원들로 하여금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일견 본 실험연구 모델과 유사한 실행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표 2>의 기준으로 볼 때, 현행 형사조정실무는 다분히 해결중심적 접근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목표에 있어서도 주로 민사분쟁형 개인법익침해

27) Delan Loche, 2004, *Accountability in Restorative Justice*, London: Oxford Univ.

28) Michael Smith, 2001, *What Future for “Public Safety” and “Restorative Justice” in Community Corrections*(Washington DC.: NJ). 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운동은 오랫동안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인식되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형사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권리와 합리적 의심을 능가하는 증거에 대한 권리, 증언하지 않을 권리, 자백하는 경우 관대한 처벌 등을 누려왔다. 회복적 사법의 절차는 범죄자에게 또 다른 법적 선물이 되지 않을까? 피해자의 권리는 회복적 사법의 요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얘기를 잘 들어주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 합의해야 한다. 이것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모욕이다.”

고소사건의 감축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²⁹⁾, 무엇보다도 형사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률가나 피해지원상담자들과 같이 조정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주로 피해배상 합의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조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실제 형사조정제도에서 다루는 대상사건들이 주로 재산범죄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사적 갈등조정”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사회적 갈등”으로 전환, 문제해결방법을 공적 차원으로 연결지워 다루지 않음으로써, 관행상의 “합의”와 차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개정 소년법의 “화해권고”가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방식으로 시행되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인본주의적 조정 원칙과 핵심 기술에 입각한 프로그램이 절차적인 안전장치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본 회합모델의 실험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본주의적 조정원칙”에 입각한 회합모델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사건을 다루는데 보다 유용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인본주의적 조정회합”이라는 새로운 실천모형³⁰⁾은 특별히 피해자-가해자간에 “history”가 있는 사건(폭력)을 다루는 데 실제적 유용성과 적용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회합모델은 「감정 드러내기 → 상호 이해의 과정(이때 사과) →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계획(Action)의 합의도출」을 통해 책임인정 및 사과,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물론 회합이 실제로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에게 어느 정도 회복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지수이지만, 기존의 절차나 제도보다는 관련자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산출한다는 점에서는 가치우월적이다.

회합모델을 지배하는 인본주의적 조정과정(humanistic mediation)에 필요

29) 이진국 (2008),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19쪽.

30) 앞서 회합모델 개관에서 소개된 절차와 구성내용들을 참조하기 바람.

한 요소와 핵심기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Umbreit et al, 2000).

- ① 지속적인 조정자 중심(Continual centering of the mediator)
- ② 이야기의 중요성과 공감적 청취(importance of story telling/ deep compassionate listening)
- ③ 분리된 개별적 예비-조정인터뷰(separate, in-person pre-mediation meetings)
- ④ 중립적으로 당사자간의 연결(Connectiong with parties, but impartial)
- ⑤ 안전한 공간의 창조(creation of safe, if not sacred, space)
- ⑥ 당사자간 대화촉진(dialogue-driven, between parties)
- ⑦ 비-지시적 스타일의 조정(Non-directive styles of mediation)
- ⑧ 조정자의 불간섭(mediator gets out of the ways)

조정자를 위한 Tips
<p>■ 해야 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가 자발적이었음을 주지시킨다. 2. 불확실할 때에는 사례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3. 교착되었을 때는 요약한다. 4. 참여자들이 제안을 하고 싶은지를 묻는다. 5.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직접 이야기하도록 독려 한다 6. 말을 두서없이 하는 것 같을 때는 명료하게 표현토록 이끌어준다(바꾸어 말하기 기법). 7. 열띤 토론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틀을 짜기도 한다. 8. 기본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을 끝낸다. 9. 교착이 되었을 경우, 스텝과 의논한다.
<p>■ 하지 말아야 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자들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2. 사실(진실)발견을 하려하지 않는다. 3. 참여자들에게 논쟁(argue)을 허용하지 않는다. 4. 관변화하거나, 후견하거나 훈계(설교)하려 하지 말라. 5. 비-참여자들이 선취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6. 전문적인 용어(jargon)나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7.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하는 합의서는 문서화하지 않는다. 8. 침묵을 매우려하지 않는다. 9. 너무 자주 개입하지 않는다.

3. 회합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개선·보완되어야 할 과제

가. 범죄문제의 공적 해결을 위한 책임이행의 구체성 확보

본 회합 시범운영을 보면, 전체적으로 입장나누기단계에서 당사자들의 감정 드러내기와 쟁점과약단계에서 사건의 숨은 배경 드러내기는 잘 진행되었지만, 회합프로그램의 의미를 살려서 구체적인 대안찾기(전환단계)로 가지 이어지는 데는 다소 혼란과 미흡함이 발견되었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혼란상은 전환단계에서까지 “공식적으로 사건화 되어 있는 사건내용”과 “배후에서 작용한 갈등요인”이 뒤섞여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갈등의 양측은 규범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회적 갈등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공식적인 규범위반으로서의 사건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있었던 반면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 및 유대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사건을 “사회적 갈등”으로 취급하여 배후의 갈등요인까지 주목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회합조정에서는 공식화된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작용한 갈등요소들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상호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범죄사건”이라는 공적인 축을 왜소하게 만들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환단계에서 대안 찾기와 합의내용은 개인간의 사적 갈등이나 친밀성 회복차원이 아니라 좀더 공적인 형태로 구체적인 실천내용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하지만, 본 회합시범운영에서는 “폭력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한 계획”과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계획”이 따로 또 같이 논의되는 구도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일부 사례에서는 관계회복을 위한 계획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도 하였으며, 공적 갈등의 해결책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로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의 친화력 증대 등 사적 갈등해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전체적으로 합의내용 이행의 구체성 확보가 미흡하였다. 합의사항 이행을 효율적으로 담보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둘러싼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행사항 및 이행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의 유형, 총 이행시간(50시간, 30시간 등), 시간의 배분, 봉사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총 기간, 봉사활동의 확인방법 등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배상의 경우, 배상액, 분납여부, 배상의 구체적인 방법, 이행 기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피해배상의 경우, 부모가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민사상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이는 민법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에서 배상은 가해학생 내지 범죄자에게 스스로 “책임을 자발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저축을 털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노력(희생)으로 피해배상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 예비조정 중요성

본 실험연구에서 예비조정단계 등 준비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준비단계의 정도에 따라 회합이 성공하느냐, 아닌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조정과정의 목적과 임무는 i) 회합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인; ii) 쟁점의 정리 및 정보의 수집; iii) 회합에서 자기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피해자 감정지원, 분노 가라앉히기, 자기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감정적 준비시키기, 가해자 자기행동 책임의식 갖도록 하기, 피해자의 고통과 영향에 대한 공감과 신뢰(rapport)형성을 통하여 제3단계 “회합”에서 직접 대화를 통한 정서적 및 관계적인 회복과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합전

준비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이다. 참석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정자는 사건의 배경이나 배후의 갈등요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충격 등 사건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조정자와 참석자 간에 사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준비단계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정자와 참석자들 간의 래포(rapport)와 신뢰의 형성이다. 회합 전 준비단계에서 조정자는 피해자 및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분노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 및 그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가해자가 처한 환경적 요인과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가해소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등을 이해하고, 그러한 사건접촉과정을 통해 실제 회합에서 사건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형성은 회합이 원만히 진행되어 당사자의 감정이 해소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다. 조정자의 역할과 자세

조정자의 중립성과 불개입 원칙은 중요한 대 원칙이기는 하지만, 폭력범죄와 같은 이미 권력관계가 불균형적인 경우에는 산술적인 평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의 맥락에서 균형 “추”로서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로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불개입의 원칙이지만, 피해자-가해자의 감정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감정왜곡이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들의 감정을 잘 읽어내고, 감정을 이완시키는 조정 담화기술의 발전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만일 조정자가 특별히 피해자 감정맥락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할 경우, 분노와 두려움, 억울한 감정이 있지만 합의로 빨리 종결,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회피전략”을 오히려 가중시킴으로써 “2차피해자화”를 경험하게 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 감응적 담화기술(victim-sensitive dialogue skill)이 요구된다.

조정자 훈련과정에서는 i) paraphrasing 과정의 중요성(공감->감정이완)과 담화기술; ii) 피해자의 특성과 Trauma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iii) 권력불균형 문제 및 숨겨진 욕구를 상황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context의 민감성 훈련; iv) 사실관계의 규명과 관점차이 및 욕구차이(사실과 감정)간의 분리, 원인과 결과의 분리, 사람과 문제의 분리, 원하는 것과 염려되는 것의 구분전략; v) 대안찾기에서 공공성과 사적 관계, 그리고 합의될 수 있는 내용과 합의될 필요가 없는 내용간의 구분, 학교징계나 법정에서의 형량과 형평성의 문제 등 과잉금지 원칙하에 합의문 가이드라인과 “기준”에 대한 훈련이 요구된다.

라. 합의이행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합의 내용의 이행보장을 위한 사후절차와 모니터링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미리 가능한 대안적 치우선택지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본 실험연구에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치유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리스트와 연계망 확보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위탁기관의 명확한 방침에 대해 미리 사전준비 단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회합의 후속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가장 모호한 상황은 후속조치를 이행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회합과정에서 누가 앞으로의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인지 명시할 수 없는 것은 당사자들의 장시간에 걸친 고민에 의해 만들어진 신뢰와 합의의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회합의 결과를 수사기관이자 의뢰

기관인 경찰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렵다. 회합을 진행하는 조정기관에서 후속조치를 책임질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학교 등 관련 기관의 역할 또한 후속조치를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더욱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 토의하고 마련하여야 할 것은 회합의 결과물인 합의에 대해 어떠한 법적 보장이 필요한가와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기관이 누구인가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절차를 가질 것인가 등이다.

마. 회합 참여의 주도권 문제-보호자의 역할

본 회합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체로 중학교 2-3학년 남학생들로, 대부분 자기표현력이 부족하였다. 피해자의 경우도 비슷했는데,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자기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그 결과, 보호자들이 회합을 좀더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험연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보호자와 학생 사이의 관심의 차이가 극명히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처리문제는 회합(조정)의 준비단계에서 걸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부모와 학생들 조정과정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부모와 아이들이 논의하는 쟁점 및 욕구하는 해결방법과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부모들은 “치료비 등 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서로간의 감정적인 화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즉, 회합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자기욕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 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구성적 및 절차적 대안이 요구된다.

바. “회합” 용어의 개선 ->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회합”이라는 개념은 외국모델을 차용하면서 선택된 번역어로서, 일상적으

로 쉽게 그 의미가 전달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용어였다. 아직 “회복적 사법”이란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나 공감에 부족한 상태에서 “회합”이라는 용어는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사법실무자들에게도 매우 낯선 개념이며,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보다 일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의미전달이 보다 쉬운 용례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가령, 일본의 경우 이미 2004-06년까지, 우리와 비슷하게 경찰단계 소년다이버전으로서 “수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시험실시를 한 바³¹⁾ 있는데, 이 때 “소년대화회”라는 용어를 선택·사용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해자 만남” 또는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등으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이를 소개하는 안내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의사를 독려하고, 대중적 이해를 넓히는 노력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회복적 사법 실행 인프라의 구축

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수행기관

회복적 사법실천을 위해서는 조정이나 회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사회회의 전달기구가 필요하고 조정전문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31) 일본 경찰청은 비행소년이 비행행위를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그 행위가 야기한 피해결과를 회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재비행이 없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수복적 Conference(소년대화회)”을 Model Pilot 사업으로서 실시하였다. 일본의 “수복적 모델·파일럿 사업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년과에 설치되었고, 소년대화회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소년대화회의 실시결과 및 소년대화회의 참가자 등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등의 검토 등을 하였다.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먼저 Model 사업은 2005년 8월 22일-12월 9일에, 그리고 Pilot 사업은 다음해인 2006년 10월 2일-12월 28일에 전국 47개 도도부현 경찰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각 도도부현 경찰본부는 미리 소년대화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소년지원센터(Support Center) 및 경찰서를 지정하였다. Model 사업에는 105개 소년지원센터와 327개 경찰서가 참여하였고, Pilot 사업에는 181개 소년지원센터와 290개 경찰서가 참여하였다.

기존 복지영역의 청소년관련 기구들과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회합프로그램의 운영에 맞도록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필요한 인력들을 새롭게 선발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할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의 청소년상담원과 각 지방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센터내의 사례관리자, 상담자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상담원에서는 회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들을 마련하고 그 운영성과들을 평가하며, 회합프로그램에서 화해·조정·중재 혹은 회합을 담당할 전문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회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합프로그램을 담당할 인력들을 관리한다. 두 번째 방식을 택할 경우 회합 프로그램을 전달할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소년 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절차가 활용될 수 있으려면 그 전달기구는 소년사법기관들로부터 독립된 민간 기구(가칭 ‘청소년회합센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제 회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의 선발·훈련·배치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소년법상의 구체적 조항을 통해 담보될 필요가 있다.

나. 실무지침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유효한 회복적 실천을 위하여, 형사사법기관과 프로그램 실행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간에 공유된 인식기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상 법률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실무담당자들의 사법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을 이끄는 실무담당자들에게 회복적 사법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관료제화되고, 처벌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의 불완전한 법률적 토대를 보완하고, 유효한 회복적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적절한 사건기준 및 개입을 위한 기관간

실무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회합”모델의 제도적 및 절차적 차원과 관련하여, i) 위탁기관(학교, 경찰 및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과 조정센터, 그리고 조정자간의 관계와 위임사항; ii) 회합에 있어서 각 참여자(당사자 및 해당 부모, 참석교사, 사법담당자 등)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iii) 회합내에서 주조정자와 보조조정자 간의 기능과 역할분담 및 소통방식에 대한 세부지침; iv) 합의사항에 대한 승인의 책임과 의무주체(위탁기관); v) 이행시점과 완결시점의 구성; vi) 이행담보를 위한 모니터링의 주체 및 사후절차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2008년 춘계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법

발행인 / 박 상 기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 (02) 575-5282~9
팩스 (02) 571-7488

발행일 / 2008년 5월 20일

등 록 / 1990.3.20. 제21-143호

인 쇄 / (주)화신문화 (02) 2277-0624

※ 본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